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0000-000025-10

2006

부패영향평가사례집

CLEAN
WAVE



국가청렴위원회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발 간 사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지난 2005년 7월 21일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것으로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 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사전 차단” 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4월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1년이 채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그 성과는 비록 미미하다고 하겠지만, 2006년 말까지 545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3개 법령안에 대하여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된 358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제·개정 법령안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등 3개 현행 법령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심도 있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 시행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고, 당초 연내에 완료하기로 계획하였던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마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2006년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앞으로 우리 위원회 내부의 활발한 연구와 토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효율적인 평가기법 개발 등을 통하여 적절한 대상과제 발굴·선정 및 심도 있는 평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9개월간 추진된 부패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개선의견을 기관별·법령별로 정리하고 우리 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등을 이 사례집에 수록하여 향후 부패영향평가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법령안 제·개정 과정에서의 번거로운 절차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부패발생가능성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 협조 하여주신 관계부처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자문위원님 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2006년 12월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정 성 진

2006년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제1장

2006년도 부패영향평가 개관

- 제1절 부패영향평가제도의 도입 9
- 제2절 2006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업무 추진 내용 17
- 제3절 제 · 개정 법령안 평가실적 분석 27

제2장

제 · 개정 법령안 평가현황

- 제1절 일반 행정 분야 법령안 평가
 - 1. 행정자치부(방재청, 경찰청 포함)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49
 - 2. 법무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66
- 제2절 교육 · 문화 분야 법령안 평가
 - 1. 교육인적자원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71
 - 2. 문화관광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98
- 제3절 노동 · 환경 분야 법령안 평가
 - 1. 노동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109
 - 2. 환경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116
- 제4절 보건 · 여성 분야 법령안 평가
 - 1. 보건복지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127
 - 2. 여성가족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135
- 제5절 국방 · 보훈 분야 법령안 평가
 - 1. 국방부(방위사업청 포함)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141
 - 2. 국가보훈처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161
- 제6절 건설 · 산업 분야 법령안 평가
 - 1. 건설교통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167
 - 2. 산업자원부(특허청, 중기청 포함)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247
- 제7절 재정 · 경제 분야 법령안 평가
 - 재정경제부 법령안 평가 307
- 제8절 정보 · 과학 분야 법령안 평가
 - 1. 정보통신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329
 - 2. 과학기술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332

Contents

>>>

• 제9절 농림·해양 분야 법령안 평가	
1. 농림부 제·개정 법령안 평가	341
2. 해양수산부 제·개정 법령안 평가	362

제3장

현행법령 평가현황

• 제1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평가	373
• 제2절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현행 법령 평가	419
• 제3절 도로 점용·연결 허가 관련 법령 평가	487

제4장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 제1절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외부 시각	
1. 부패영향평가와 향후 과제	569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578
3.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가청렴위원회의 역할	590
4. 외부에서 본 부패영향평가	599
5. 게임산업법령 및 교육분야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외부시각	602
• 제2절 2007년도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611

부 록

1. 보도자료	619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 평가결과	619
▪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법령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결과	627
▪ 도로점용 허가관련법령 부패영향 평가결과	633
2. 부패방지법	639
3. 부패방지법시행령	653



제1장 2006년도 부패영향평가 개관

- 제1절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 제2절 2006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업무 추진 내용
- 제3절 제 · 개정 법령안 평가실적 분석

1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참여정부에서는 부패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청렴위원회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수립·조정 기관으로서 각 기관과 함께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신고 처리 등의 다각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국가부패지수(4.3점('03년)→4.5점('04년)→5.0점('05년)→5.1점('06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청렴수준(7.71점('03년)→8.38점('04년)→8.68점('05년)→8.77점('06년)) 역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반부패 노력으로 인한 국내외 지수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수준과 지향하는 목표 청렴수준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청렴도는 아직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패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부패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부패문제가 아직도 심각하게 인식되는 것은 기존 부패방지시스템의 효율성 저하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지금까지의 반부패 정책은 적발·처벌에 치중하는 사후통제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부패발생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이 미비했다. 또한, 개별 부패사안에 한정된 개선모색에

집중함으로써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부패방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부패발생의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우선과제로 국민의 27%가 법령·제도의 정비를 지목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또한 법과 제도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 소지가 있는지 전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04. 2. 18,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2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특징

우선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보면 그 동안 발생한 부패사례 중에서 개인적인 비위 또는 문화적인 요인에 의한 것을 제외한 법·제도상의 취약요인만을 추출해서 중요도와 빈도가 높은 변수들로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즉, 기존 법령심사기준이 주로 법이론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동안의 부패사례와 그에 대한 대처경험을 토대로 부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체크포인트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재량의 적정성(부패공급요인)·준수의 용이성(부패수요요인)·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요인) 등 3개 영역, 9개 항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부패영향평가 모형

평가유형	세부 평가항목
준수의 용이성 (부패유발요인의 수요적 측면)	•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의 적정성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의 적정성 •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 등 일부 국민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
재량의 적정성 (부패유발요인의 공급적 측면)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법령 등에 의한 재량범위가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당하지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의 투명성 (부패유발요인의 절차적 측면)	•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법령 등에 의한 재량범위가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당하지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령 ·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 · 개선한다는 부패예방적 성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패문제에 대해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개인적 차원의 적발 · 처벌이 아닌 법 · 제도 차원의 시스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그 동안의 반부패 활동과는 구별되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직원과 금융브로커, 감정평가사 등이 결탁하여 부동산 담보물의 감정가를 허위로 과대 조작하는 부패사례를 보면, 개개인의 윤리성의 문제뿐 아니라 감정평가업자 선정권한이 은행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가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관련자 몇 사람을 사법처리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여

은행 본점에서 공정하게 추첨에 의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은행지점을 매개로 하는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정기준 이상의 허위·과다 감정의 전력이 있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에도 통보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갖춘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감정이 허위 조작 부패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유발요인의 유형과 부패방지대책

유 형	부패유발요인(예시)	부패방지시스템
법령 · 제도	비현실적인 기준,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처리절차 등	부패영향평가 및 제도개선 시스템
문화 · 행태	접대 · 촌지 · 청탁 관행, 윤리의식 부재, 이기주의적 태도 등	교육 · 혁신 시스템
감시 · 통제	부패통제수단 미비, 처벌의 확실성 · 엄격성 · 신속성 부족 등	적발 · 처벌 시스템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유류저장 탱크의 설치와 관련한 부패사례에서도 법령 · 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부패방지에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소규모 인쇄업자 A씨는 사무실 난방을 위해 기름보일러 시설공사를 하고 4톤 규모의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였는데, 관계법(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자는 2톤 이상의 유류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있었다. 관할 지역 소방공무원은 소방시설 점검차 방문하여 유류저장탱크가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된 사실을 발견하고 철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계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 이를 무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약간의 금품을 건네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A씨에게는 시설물 철거가 좀 가혹한 부담이기도 하고 고의성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건넨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주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자의 경우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관련 법규정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했고, 다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관계 공무원은 관련 규정의 적용·집행에 있어 사업자의 추가비용 부담에 따른 호소에 이끌려 엄격하게 집행을 하지 못하고 금전수수의 부패행위로 이어지게 되었다.

만약, 관련규정에 유류저장탱크 제조·판매업자가 탱크를 판매할 때에 관련규정에 대해 안내·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면 사업자가 무모하게 설치행위를 감행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런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은 사업주에 대해 법령이 정한대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부패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행정절차가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행정처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 시설 등에 대한 규제 및 인허가 기준이 현실성이 없어서 준수하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감독하거나 인허가·검사 등의 기준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여 불편을 주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하는 경우 등은 법령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령안의 불명확한 규정을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명백하게 하고 행정절차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관련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화하여 부패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패영향평가이다.

일부 선진국가에서도 우리의 부패영향평가와 같은 사전적 분석·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청렴도가 두 번째로 높은 홍콩은 염정공서에서 각 기관 법령·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 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축소토록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조직을 신설할 때에도 부패예방 차원에서 사전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사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 등 민간분야 부패유발요인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이외에 행정규칙과 자치법규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지도·단속, 보조·지원, 계약 등의 수행과 관련된 법규사항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는 그 규모의 방대함을 고려해서 자치단체가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권장하고 있다.

특히, 법령 등의 경우 기존 법령뿐만 아니라 제정·개정되는 법령안에 대해서도 기존 법제절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로 제정·개정안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평가·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나, 수시로 제기되는 부패 현안사항 및 해결이 시급한 부패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신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직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운영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편의증대 효과는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제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구조적인 부패유발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신형성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부패사각지대를 점차 축소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예방에 중점을 두고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부패문제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성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그러므로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예방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스스로 투명한 업무처리체계를 확립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자발적으로 제거·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패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반복적·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분야라도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해지고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부패영향평가 대상

2006년도는 부패영향평가 도입 첫해에 해당하고, 효율적인 평가시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고려해서 평가대상에 따라 평가방법과 평가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중앙행정기관의 제정 또는 개정 법령안에 대해서는 법령안이 확정되기 전에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때 법령속의 정책·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부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분석·예측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이해관계자·국민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부패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안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령 등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각 기관의 입법계획이나 부패사건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다만, 수시로 제기되는 부패 현안사항 및 해결이 시급한 부패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신해소를 위해 현안 과제로 선정,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도 지금까지 별다른 외부통제를 받지 않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침·규정·훈령·고시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각종 행정규칙에도 행정 편의적 재량, 과도한 준수부담, 특혜가능성 있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부패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에도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수많은 조례와 규칙 역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규이므로 이에 대한 통제 역시 필요한데 위원회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방대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가 스스로 부패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난 8개월간 총 561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요청을 접수하여 545개 법령안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해당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다음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본절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가. 제·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현황

전반적인 처리현황을 살펴보면「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립초등학교 회계규칙 제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등 545개 법령안에 대해 평가를 완료하고, 이중 21%에 해당하는 113개 법령안에서 358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기관에 개선·보완토록 권고하였다.



접수 · 처리 현황('06.4.1 ~ 11.30)

접수	평가결과 통보			비고 (진행중)
	처리	원안동의	개선권고	
561개 법령	545개 법령	432개 법령	113개 법령	16개 법령

나. 분야별 개선의견 현황

평가결과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에 대한 제거 · 정비를 위해 개선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개선의견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 · 개발 분야(45개 법령, 175건)에서 다소 많이 나타났으며, 교육 · 문화 분야(21개 법령, 67건), 재정 · 경제 분야(6개 법령, 33건), 국방 · 보훈 분야(14개 법령, 28건)에 대한 개선의견도 다수 있었다.



분야별 개선의견 권고 현황('06.4.1 ~ 11.30)

구분	계	과학/ 정보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산업/ 개발	일반 행정	재정/ 경제	형사/ 사법	환경/ 보건
개선의견 법령개수	113	11	21	14	45	3	6	·	13
개선의견 건수	358	26	67	28	175	8	33	·	21

다.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현황

평가결과 도출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항목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재량규정의 명확성 · 재량기준의 구체성 · 재량범위의 적정성 등 재량의 적정성 항목에서 182건(51%)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되었고 접근성과

공개성·예측가능성·부패통제장치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 항목에서는 101건(28%)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준수부담의 적정성·제재규정의 적정성·특혜발생가능성 등 준수의 용이성 항목에서도 75건(21%)의 부패유발요인이 도출되었다.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현황 (113개 법령 358건)

평가 항목		개선의견 (건수)	
준수의 용이성	준수부담의 적정성	19건	75건
	제재규정의 적정성	14건	
	특혜발생 가능성	42건	
재량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74건	182건
	재량범위의 적정성	28건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80건	
행정절차의 투명성	접근성과 공개성	15건	101건
	예측가능성	19건	
	부패통제장치	67건	
합 계		358건	

라. 개선의견 유형 현황

개선의견의 내용을 보면 불명확한 법령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한 것이 가장 높은 비중(107건, 30%)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당해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마련(51건, 14%)토록 한 경우와 향후 하위법령 제·개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49건, 14%)한 경우가 많았다.

그 밖에 과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량범위를 축소·제한(33건, 9%)토록 하고, 특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축소(26건, 7%)토록 하였다. 또한, 행정절차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접근성 및 공개성의 확대(24건, 7%), 예측가능성의 제고(12건, 3%) 등의 개선사항이 있었다.



개선의견 유형 (113개 법령 358건)

개선의견 내용	평가 건수
당해법령 구체화	107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49건
부패통제장치 마련	51건
재량범위 축소·제한	33건
접근성·공개성 확대	24건
특혜가능성 제거·축소	26건
예측가능성 제고	12건
제재 적정화	9건
부담 완화·축소	7건
기타 삭제·폐지	14건
기타 신설·도입	20건
기타 수정·보완	6건
합 계	358건



3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2006년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법령,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등 해결이 시급한 부패현안과제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를 하였다. 또한, 12월에는 4,000개가 넘는 현행법령을 체계적으로 평가·개선해 나가기 위해 법령분석 기획·관리 2개 팀제로 운영되던 기존 조직에 "현행법령 T/F팀"을 새로이 편성하여 부패영향평가업무의 전문화를 기하였다.

현행법령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절에서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정리 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

게임산업 관련 부패가 연일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게임물 등급위원회규정」등 관련 법령 전반에 내재된 총 26개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여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개선권고하였다.(’06.10.19)

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으로는「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여 사행성을 부추기는 게임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 위원회 자체규정이 아닌 대통령령 등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게임산업관련 업무의 위임·위탁시 선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위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지도·단속 등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도록 권고하였다.

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법령 부패영향평가

서해안 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매립 행위, 매립지 부당 취득,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 등 위법행위가 빈발하는 한편 관할 관청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를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공유수면 매립법」과 「공유수면 관리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 업무처리규정 및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평가한 결과 30개의 세부개선안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하였다. ('06.11.14)

주요 권고내용으로는 공유수면 총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공유수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법령에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매립지를 부당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 공사비 산정기준에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도록 개선권고하였고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다.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도로점용허가 업무는 불명확한 허가기준, 복잡한 허가절차 등으로 민원인의 불만과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 되어오던 분야로 설문조사결과 허가대행업소 중 지난 3년간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업소가 8.8%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훈령)」 등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총 25개 세부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권고하였다. (06.12.21)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도로연결허가에 대한 절차·서식 등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허가신청에 대한 보완 및 반려시 법령근거 규정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점용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축소하고 허가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료 산정대상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요율 등 점용료 산정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의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의 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4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의 규모가 방대함을 고려하여 법령 평가시 그에 부속된 행정규칙까지 일괄평가하면서 아울러 각 기관에서 발령한 행정규칙을 매 반기별로 제출받아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집중 평가하고 있다.

현재 2006년 상반기에 발령한 50개 중앙행정기관의 1,300여개의 행정규칙을 제출받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청렴도·부패공직자 DB 등을 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28개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 규모만 해도 6만 여개가 넘고 연간 1만 여개 이상이 제·개정되고 있으나 아직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전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그에 따라 위원회는 일단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자치법규의 규모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평가모형을 보완하여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평가매뉴얼을 2007년 상반기에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모형의 기본 틀은 기존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1

총 괄

부패영향평가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법무관리관실 소속 「법령분석기획팀」과 「법령분석관리팀」 2개 팀에서는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및 《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약 2개월간(2006. 2. 10~3. 31)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부패영향평가업무를 정식으로 시작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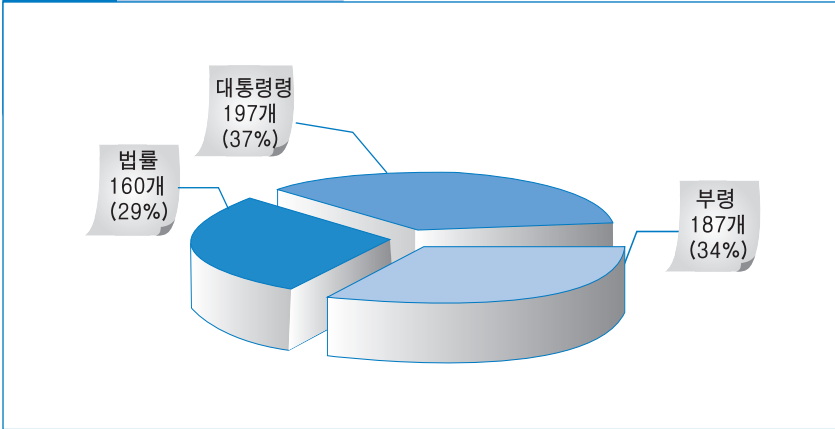
경찰청 소관 「경비업시행규칙(제정령안)」에 대한 평가 의뢰 접수가 2006년 4월 4일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후, 11월말까지 8개월간 접수된 법령안 가운데 총 545개의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이중 제정 법령안은 51건(9%), 개정 법령안은 494건(91%) 이었다.

<표 1>



법령별 제 · 개정 평가현황 <2006. 4. 1~11. 30>				(단위 : 개)	
제·개	법령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 · 부령
계		545	160	197	188
제정법령		51	15	17	18
개정법령		494	145	180	169

그림 1 법령구분 분포도



법령분포는 <그림 1>과 같이 법률이 160개로 29%를 차지하고, 대통령령이 197개로 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령이 187개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정·개정 법령 구분에서 제정 법령이 51개로 9%를 차지하고, 주로 개정법령의 평가가 91%인 49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패영향 평가결과에 따라 <표 2>와 같이 79%에 해당하는 432개의 법령에 대해 원안동의 의견이 통보되었다. 개선권고의견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4. 18.자 최초 개선권고의견) 등 113개 법령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358건의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

< 표 2 >

법령별 평가결과 (단위 : 개)				
제 · 개 법령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 · 부령
계	545(100%)	160	197	188
개선 의견	113(21%)	50	32	31
원안동의	432(79%)	110	165	157

특히, 평가법령중 113개인 21%만이 개선권고 의견으로 평가되고, 79%가 원안동의로 이루어진 것은 조직 · 인사법규, 민형사법 및 절차법 등과 같이 부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령까지 평가대상에 포함되는데 기인한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시간 · 절차에 따른 부담 때문에 법령 전체를 놓고 분석하기 보다는 개정부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던 원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분야 · 기관별 및 월별 평가현황

● 분야별 평가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의 분야별 분포도를 보면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등의 소관법령으로 구성된 산업 · 개발 분야가 127개 법령으로 23%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 문화 분야가 113개 법령으로 21%이고, 국방 · 보훈 분야가 13%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법령이 가장 적었던 분야는 형사 · 사법 분야로 25개 법령인 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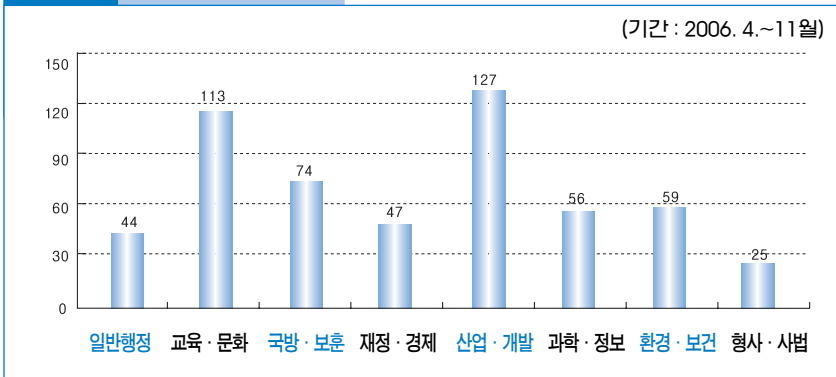
< 표 3 >

분야별 현황

(단위 : 개)

분야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존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법령	545	44	113	74	47	127	56	59	25
비율(100%)	100%	8%	21%	13%	9%	23%	10%	11%	5%

그림 2 분야별 분포도



분야별 분포도를 보면 주로 경제 및 사회분야에 대한 평가가 많은 반면 비경제적 분야, 일반행정 및 민사·형사법, 절차법 등의 분야에서는 처리실적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 기관별 평가

기관별 평가법령수는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60개로 가장 많이 평가되었고, 둘째로는 행정자치부(경찰청 7개 포함) 44개 이고, 재정경제부가 40개 법령으로 세 번째이다. 그리고 보훈처가

22개이고, 방재청의「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 등 24개, 특허청이 22개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 표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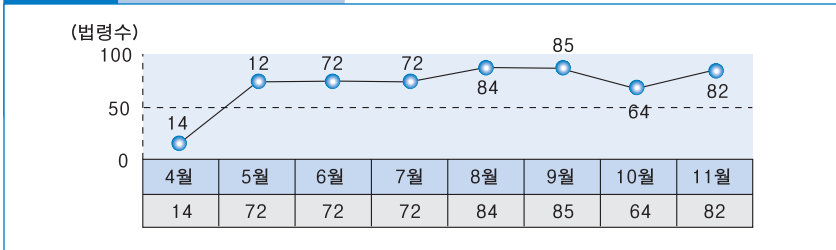
기관별 분포 (단위 : 개)							
기관명	법령수	제정	개정	기관명	법령수	제정	개정
재경부	40	2	38	환경부	33	3	30
교육부	38	6	32	노동부	39		39
국방부	26	7	19	건교부	60	8	52
행자부	44	5	39	해수부	24	3	21
문광부	20	6	14	보훈처	22		22
농림부	17	2	15	방재청	24		24
산자부	37	1	36	특허청	22		22
정통부	21		21	대·총소속	22	1	21
복지부	20	2	18	기타 부처	36	2	34
합 계					545	48	497

(주: 법령평가가 15개 이하 부처는 기타부처에 포함하거나 청의 경우는 상급기관에 포함하여 계상)

● 월별 평가

월별 부패영향평가의 접수·처리 추이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를 시작한 4월에는 14개의 법령으로 실적이 적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처리실적이 증가하였다. 특히 정기국회를 앞둔 8~9월에는 평균 80개 이상이었으나 10월에는 명절로 인해 다소 줄어들었고 11월에는 다시 회복되는 평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월별 평가 추이



3 원안동의 평가법령

● 원안동의 사유

평가의뢰받은 총 545개의 법령중 원안동의는 432개로 그 비중이 79%이며, 주요 사유는 대부분 '부패관련 사항없음'이 432개 법령중 249개 법령으로 5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판단사항'이 75개로 17%에 해당하고, '단순개정'이 42개로 10%이며, 기타 '소송절차사항' '헌법기관 관련사항' 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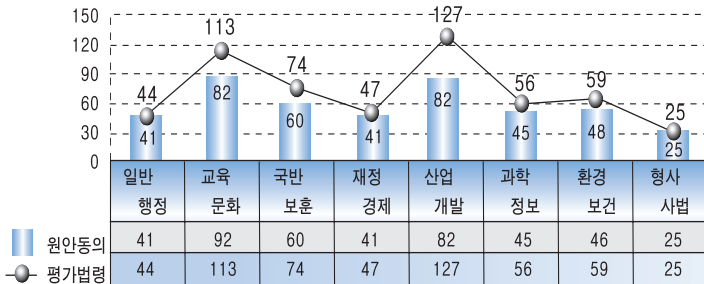
< 표 5 >

원안동의 사유별 현황		(단위 : 개)		
사유 \ 법령	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합 계	432	110	165	146
단순개정	42	2	18	22
기관운영사항	20	6	9	5
국가안보사항	1		1	
유지관리사항	11	6	2	3
정책판단사항	75	25	28	22
입법상 한계	2	1	1	
사적자치사항	4	4		
규제개혁사항	9	2		7
재량정비사항	10	2	5	3
부패사항없음	249	62	96	91
기 타	9		5	4

● 분야별 원안동의 사유

원안동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당기관에 원안동의로 통보한 것으로서 평균적으로 원안동의 비율이 약 79%이다. 형사·사법 분야는 25개 법령 모두를 원안동의하였고, 그 밖에 일반행정 분야는 44개 중 41개인 94%, 재정경제 분야는 47개 중 41개인 87%로 비교적 높은 원안동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산업·개발 분야는 127개의 법령중 82개인 64%로 원안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문화 및 과학·정보 분야가 약 80%로 평균치의 원안동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분야별 원안동의



원안동의 사유를 분야별로 보면, 대부분 '부패관련사항없음'의 사유로 원안에 동의한 경우가 많고, 국방·보훈 분야의 경우는 '단순개정'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건 분야의 경우 전체 46개 법령중 25개가 '정책판단사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분야별 원인동의 사유현황		(단위 : 개)							
분야 법령	계	일반 행정	국방 보훈	교육 문화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합 계	432	41	60	92	41	82	45	46	25
단순개정	42		23	4	5	5	1	4	
기관운영사항	20	1	4	7		3	3	2	
국가안보사항	1						1		
유지관리사항	11		8		2				
정책판단사항	75		4	18	12	12		25	4
입법상 한계	2				1			1	
사적자치사항	4			4					
규제개혁사항	9			1		3	3	2	
재량정비사항	10			3		5	2		
부패사항없음	249	37	21	51	21	51	35	12	21
기 타	9	3		4		3			

4 개선의견 평가법령

● 법령별 개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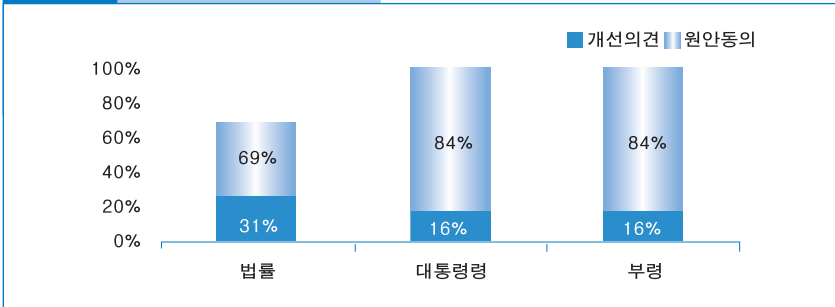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법령 평가에서 개선의견이 전체 545개 법령중 21%인 113개 법령에 이른다. 개선의견으로 평가된 법령 중에서는 법률이 가장 많은 50개로 44%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대통령령과 부령이 각각 32개와 31개이다.

개선대상에서 법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법률의 특성상 국민의 권리·의무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해 규율하는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이 많아 부패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재량의 구체화, 범위의 적정화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 결과로 보아진다.

< 표 7 >

법령별 개선의견비율		(단위 : 개)			
제 · 개	법령	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 · 부령
계		545(100%)	160(100%)	197(100%)	188(100%)
개선의견		113(21%)	50(31%)	32(16%)	31(16%)
원안동의		432(79%)	110(69%)	165(84%)	157(84%)

그림 5 법령별 개선의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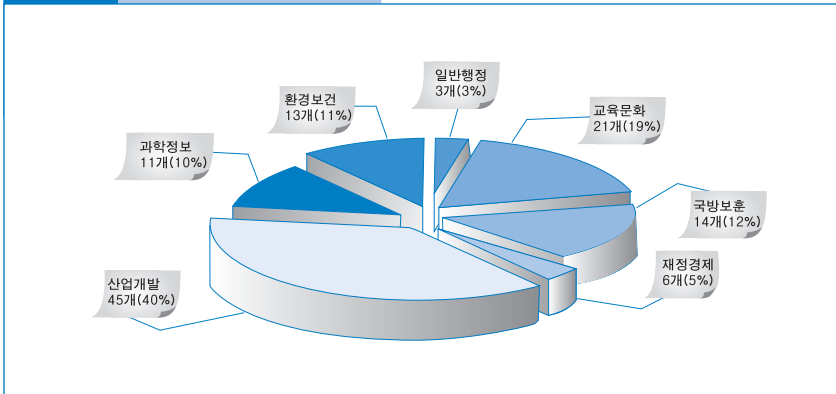


● 분야별 개선의견

전체 113개의 개선법령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개발 분야가 45개로 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이 교육·문화 분야 21개로 19%를 차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국방·보훈 분야 14개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적은 분야는 3개 법령에 개선의견이 있는 일반행정 분야이다.

건설·건축 및 산업개발 분야가 정부예산의 지원이나, 국민생활에 직결된 규제가 많아 개선의견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법령별 개선의견비율



개선의견 법령수와 개선항목수에 있어서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개발 분야가 175건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교육·문화 분야로 67건, 재정·경제 분야가 세 번째로 33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 개의 법령에서 여러 개의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표 8>을 자세히 분석하면, 개선의견 있는 법령 수 대비 개선사항수(개선사항수/개선의견 법령수)는 대략 1개 법령당 3건에 이르고 있다. 법령당 가장 많은 개선항목이 나타난 것은 재정·경제 분야로 한 개 법령에서 5.5건의 개선항목이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재정경제부에서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이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5개 법령을 통합·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나에서만 모두 24건의 평가항목을 개선한 데서 기인한다. 이는 개선법령당 평균 개선사항수인 3건보다 8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 표 8 >

분야별 개선의견 (단위 : 개)								
분야 법령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개선의견 (법령)수	113	3	21	14	6	45	11	13
개선 항목수(건)	358	8	67	28	33	175	26	21

● 기관별 개선의견

기관별 평가결과, 부처별 개선의견 법령수는 건설교통부가 20개, 산업자원부가 15개, 교육부가 10개 순이며, 행정자치부, 특허청, 등은 2개의 법령 개선의견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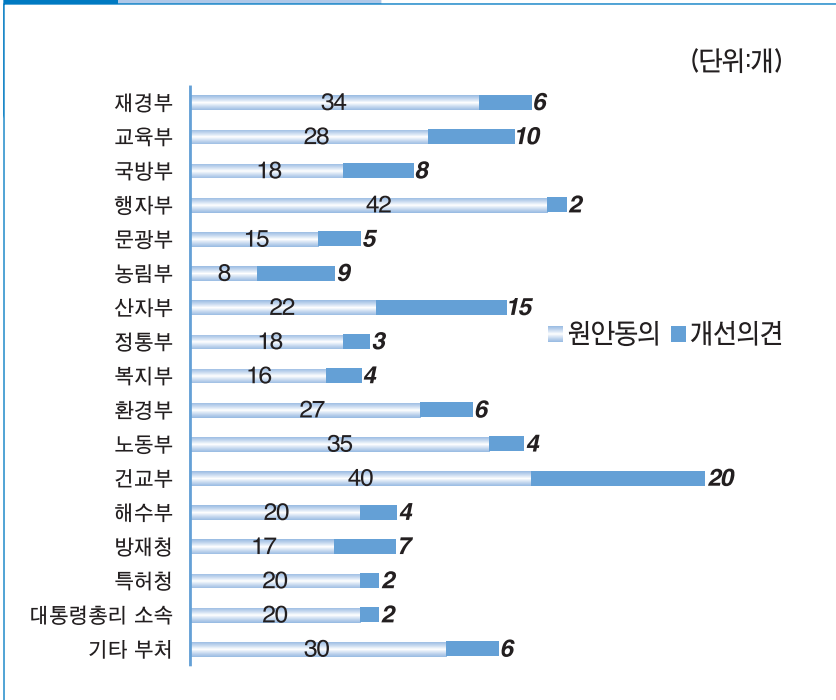
< 표 9 >

기관별 평가결과

(단위 : 개)

기관명	법령수			개선 항목수	기관명	법령수			개선 항목수
	소계	원안 동의	개선 의견			소계	원안 동의	개선 의견	
재경부	40	34	6	33	환경부	33	27	6	7
교육부	38	28	10	36	노동부	39	35	4	5
국방부	26	18	8	24	건교부	60	40	20	85
행자부	44	42	2	6	해수부	24	20	4	39
문광부	20	15	5	20	보훈처	22	22	-	-
농림부	17	8	9	20	방재청	24	17	7	8
산자부	37	22	15	37	특허청	22	20	2	9
정통부	21	18	3	6	대·총소속	22	20	2	4
복지부	20	16	4	8	기타 부처	36	30	6	11
합 계						545	432	113	358

그림 7 기관별 개선법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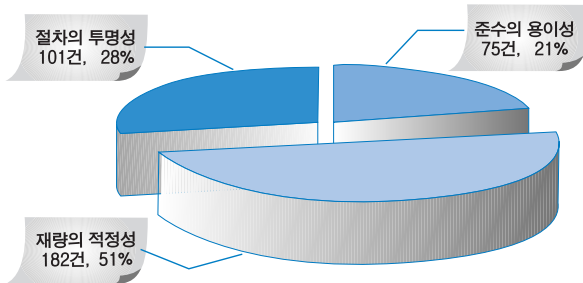


평가 법령수 대비 개선의견 법령수(개선의견 법령수/평가 법령수)는 평균 21%의 개선의견(법령)비율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중 농림부(산림청 포함)가 평가의뢰한 17개 법령에서 9개가 개선의견이 나와 53%, 산업자원부는 37개 법령중 15개로 41%, 건설교통부가 총 60개의 법령중 20개로 33%의 개선의견비율을 보이고 있다.

● 평가항목 총괄

평가항목은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기준으로써 「부패방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 규정한 사항으로 평가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이고, 이번 113개 개선법령에서 358개의 항목이 평가기준에 저촉되어 개선권고되었다.

그림 8 평가기준 분포도



평가기준에 따른 분포는 <그림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량의 적정성'의 기준에 저촉되어 개선의견으로 평가된 항목은 전체 358건중182건으로 절반이 넘는 51%를차지하고 있으며,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된 경우는 101건으로 28%, '준수의 용이성'에서 지적된 것은 75건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개선의견으로 평가한 분포는 <표 10>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 표 10 >

분야별 평가항목 분포		(단위 : 건)							
분야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평가기준									
준수의 용이성	합 계	358	8	67	28	33	175	26	21
	소 계	75	4	24	8	3	29	3	4
	준수적정성	19		2	4	1	9	1	2
	제재적정성	14	1	4		1	5	2	1
	특혜가능성	42	3	18	4	1	15		1
재량의 적정성	소 계	182	3	27		24	86	15	7
	재량명확성	74	1	3	9	10	43	7	1
	재량범위 적정성	28	1	2	3	2	14	4	2
	재량기준 구체성	80	1	22	8	12	29	4	4
절차의 투명성	소 계	101	1	16		6	60	8	10
	접근·공개성	15		3		2	7	2	1
	예측가능성	19		1			11	2	5
	부패통제	67	1	12		4	42	4	4

● 업무유형별 평가항목

개선의견을 낸 법령의 업무내용을 분석하면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가·허가 업무에서 123건(전체의 34% 비중)으로 가장 많은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평가되었고, 그것을 다시 평가기준으로 분류하면 '재량의 적정성'에서 63건, '행정절차의 투명성'에서 45건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건설·개발 업무가 84건(23%)으로 이중 '재량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저촉되는 것이 44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 및 건설·개발 등 국민의 재산상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업무분야에서 아직도 부패유발요인이 많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 표 11 >



업무유형별 평가항목 분포

(단위 : 건)

분야 평가기준	계	일반 행정	인가 허가	지도 단속	건설 개발	계약 관리	보조 지원	위탁 대행	대기관 업무	인사 예산	
합 계		358	56	123	22	84	14	42	5	2	10
준수의 용이성	소 계	75	14	15	5	18	1	19	1	1	1
	준수적정성	19	3	4	3	7	1	-	-	1	-
	제재적정성	14	3	5	2	1	-	3	-	-	-
	특혜가능성	42	8	6	-	10	-	16	1	-	1
재량의 적정성	소 계	182	29	63	10	44	8	16	4	1	7
	재량명확성	74	8	29	2	21	6	5	-	-	3
	재량범위 적정성	28	5	8	1	6	-	4	1	1	2
	재량기준 구체성	80	16	26	7	17	2	7	3	-	2
절차의 투명성	소 계	101	13	45	7	22	5	7	-	-	2
	접근·공개성	15	1	4	3	3	3	1	-	-	-
	예측가능성	19	3	11	2	3	-	-	-	-	-
	부패통제	67	9	30	2	16	2	6	-	-	2



6

평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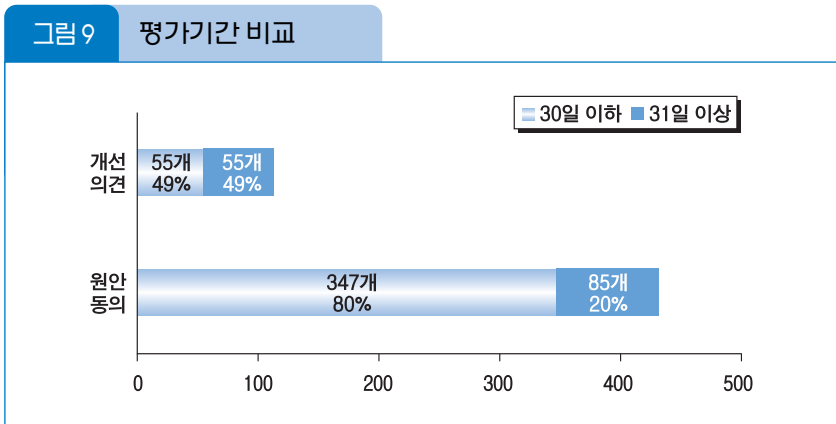
● 평가기간 총괄

평가기간은 부처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서 접수받아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말한 것으로 현행 「부패영향평가지」에서 통상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처리 기간내와 기간외를 구분한 결과 402개인 74%가 기간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2 >

평가기간 분포 (단위 : 개)			
구 분	계	원안동의	개선의견
합계	545	432	113
30일 이하	402	347	55
31일 이상	143	85	58

특히,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안동의의 경우는 432개 법령중 347개의 법령인 80%가 처리기간내에 처리되었고, 개선의견의 경우 113개 법령중 50%인 55개 법령이 기간내에 처리되었으나 절반은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사항이 도출된 법령일수록 청렴도, 감사지적, 언론보도 등 부패실태자료의 수집과 전문가 자문, 기관협의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분야별 평가기간

분야별 평가기간을 <표 13>에서 살펴보면, 과학·정보 분야에서 57개 법령중 34개(59%)가 기간내 처리되었고 23개(41%)가 처리기한을 초과하였고, 산업·개발 분야는 총 126개 법령에서 79개(62%)가 기간내 처리되었고 47개(38%)가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 이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소관업무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IT업무의 특성상 평가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상당한 처리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된다.

< 표 13 >

분야별 평가기간 (단위 : 개)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계	545	44	113	74	47	126	57	59	25
30일 이하	402	43	86	47	40	79	34	48	25
31일 이상	143	1	27	27	7	47	23	11	

7 평가활동 총평

부패영향평가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도이었으나, 업무량에 비해 조직·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신규 업무에 대한 운영 및 처리절차를 개척함에 있어 많은 열정과 신념으로 추진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 『부패영향평가 종합DB』 마련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제·개정 및 현행법령 545개의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인 자문위원 상담, 청렴도·감사·수사 등 사례 분석을 통해 11월 말까지 113개 법령에서 358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부패통제수단으로써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정·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하겠다. 특히 제·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대상기준 마련, 평가방법 및 절차 간소화 등 절차의 보완 등은 명년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행정규칙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 평가방안, 자치법규 평가체계 구축 등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에 해당한다.

제2장 제 · 개정 법령안 평가현황

- 제1절 일반 행정 분야 법령안 평가
- 제2절 교육 · 문화 분야 법령안 평가
- 제3절 노동 · 환경 분야 법령안 평가
- 제4절 보건 · 여성 분야 법령안 평가
- 제5절 국방 · 보훈 분야 법령안 평가
- 제6절 건설 · 산업 분야 법령안 평가
- 제7절 재정 · 경제 분야 법령안 평가
- 제8절 정보 · 과학 분야 법령안 평가
- 제9절 농림 · 해양 분야 법령안 평가

제1절

일반 행정 분야 법령안 평가

1. 행정자치부(방재청, 경찰청 포함)제 · 개정 법령안 평가
2. 법무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은「정부조직법」,「지방세법」,「공직자윤리법」등 109개의 법률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시행령) 141개 및 부령(시행규칙) 57개 등 총 307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의뢰·접수한 건수는 40건으로 주요 제·개정 내용은

-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제정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등 6개의 법률·대통령령·부령 제정 및 전부 개정
-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할 때에는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대통령령)」의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의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키려는 「지방자치단체회계 기준안(행정자치부령)」 제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지방자치법」일부개정,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동일가격 동일세 부담원칙"에 적합하도록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시 주택 승계취득자와 기존주택소유자간 세부담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려는「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 등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2건의 법령안에 대하여는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입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법령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 원안동의를 하였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개정안

[신설조문]

제19조의2(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 ① 모집자는 모집금액에 대해 사용종료 후 30일 이내에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를 받은 회계감사기관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모집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익년도 2월 말일(연도중 모집을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0일)까지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의한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자로부터 제출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회계감사제도의 시행에서 1억원 이하의 모집금액의 사용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법제도의 틈새를 악용한 모집금액의 횡령, 착복, 유용 등 기부금품의 사용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임.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소액 모집금액에 대한 간소한 회계통제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개정안

[현행 【별표】를 【별표2】로 개정]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단서 생략)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1조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기부금품모집시에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의2제2항	500만원 이하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기타 공개된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법 제6조제1항	500만원 이하
3. 관계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	법 제10조제1항	500만원 이하
4.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		500만원 이하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개정안 별표2는 일정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위반행위의 종별을 고려하여 500만원을 최고상한기준금액으로 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을 정하여야 함에도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 라고 정함으로써 법률상의 규정내용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과기준금액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부과기준내용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함.

※ 기본적으로 이 영 별표2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구체적이고 특정한 과태료금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과태료금액란에서 “이하”라는 표현은 삭제되어야 할 것임.

● 최초책정 부분

- 개정안【별표2】의 위반행위 1.(기부금품모집시에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조의2제2항 위반)은 법 제5조의2제2항(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신설됨에 따라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부과가 신설된 것임.

- "모집종사자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하고 투명한 모집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집자체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정청의 노력을 현저히 저하시킬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움.

※ 일시적인 실수, 착오로 또는 표시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모집행위에 대하여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설령 어느 정도 악의로 표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의하여 표시행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처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로 채택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자의 준수적응기간을 고려하여 500만원 미만의 현행 부과금액(200만원, 300만원) 및 새로운 대안금액 400만원 중에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상향조정 부분

- 개정안 별표2의 위반행위 2.(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 법 제6조제1항) 및 3.(관계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 부분은 현행 별표상의 위반행위 내용과 동일하나 화폐가치의 하락에 따라 과태료부과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임.

※ 현행 별표 규정 위반행위 1.(기부금품모집시에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 법 제6조제1항)과 앞부분 일부 표현만 다를 뿐 위반행위의 취지는 같음.

- 원칙적으로 부과금액의 상향조정은 제재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인 판단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이 사안의 경우 당초 300만원에 해당하였던 부과기준금액을 과태료 최고상한금액인 500만원까지 급상향한 것은 정책환경의 변화(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 등)를 일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의 강화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합리성을 가져야 수범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고, 현행 과태료부과금액 단계상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선택가능한 부과금액(예, 400만원)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생략되고 있는 점 등은 환경변화에 따른 제재수단의 수위조절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개정안【별표2】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은 최초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1. 및 현행 300만원의 과태료부과

수준에서 500만원으로 급상향 조정한 위반행위 2. 및 3.에 대한 각각의 과태료부과금액을 법규준수자의 준수적응기간, 예측가능한 합리적인 제재강화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부과 최고상한금액인 500만원 미만으로 새로 책정하여야 할 것임.

[개선안 예시]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1조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기부금품모집시에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의2제2항	300만원 (또는 400만원)
2.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언론기관 · 금융기관 기타 공개된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법 제6조제1항	400만원
3. 관계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	법 제10조제1항	400만원
4.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거부 · 기피 또는 방해한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		500만원

- ※ 1) 제1호의 300만원 : 신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으므로 법규준수자의 준수적응기간을 고려하여 300만원으로 제시하였음.
- 2) 제1호의 400만원 : 위반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한다면 300만원 보다는 상향된 4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정하는 것도 합당할 수 있을 것임.
- 3) 제2호의 400만원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존 부과금액(300만원)과 최고금액(500만원)의 중간금액인 400만원을 제시해 보았음(위반행위 3.도 같은 맥락임).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 ①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을 보여 주는 재정상태보고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취득원가 또는 경우에 따라 그 대체개념으로 사용되는 공정가액의 정확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임.
-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파악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회계원리나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면 자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은 동 회계기준안의 중요한 기초개념이 된다 할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평가를 위하여 공정가액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교환 · 기부채납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음.
- 행정재산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로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탈법 또는 편법운영이 초래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

(3)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교환·기부채납·관리전환·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계상하기 위한 공정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자산의 성질, 용도, 기능, 내용연수, 일반적인 거래유형·가격수준 등을 고려한 통일적이고 객관적인 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신설조문]

제47조의2(소방기술연구·개발사업)

-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연구소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7.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신설되는 안 제47조의2(소방기술연구·개발사업)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기술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①기술연구과제의 선정 및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의 업무대행, ②예산범위 내에서 대행업무 수행경비의 지원, ③행정·재정적인 지원 등 소방기술관련 중요업무의 대행 및 그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소방기술연구·개발전문 지정대상기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관련되는 소방기술연구·개발 관련 중요업무의 대행과 국가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관·단체의 선정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특정 단체 등에 대한 특혜를 발생하게 할 소지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관·협회가 객관적으로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협회가 될 수 있도록 지정대상 기관·단체의 공공성, 전문능력, 물적 설비시설 등에 대한 일정한 선정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 시 〉 ① 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

② 일반적인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방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는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다.〈단서신설〉
- ②～④(현행과 같음)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개정 원안은 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내용(등록취소,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년간 등록신청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를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입각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평가적용 기준상의 문제점
 - 「준수부담의 적정성」측면 : 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자와는 달리 6월이내에 처분의 효력이 종료될 수 있음에도 2년이라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본인이 받는 희생이 과도하여 법령준수의식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함.
 - 「제재수준의 적정성」측면 : 등록제한 기간인 2년은 가장 중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주로 염두에 두고 책정한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6월이내 제재기간이 정해지는 영업정지 등에 대하여는 당초 제재수준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을 별도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

- 소방시설업 재등록 후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문제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9조【별표 1】에 의하면, 시정명령(경고)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사항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1차에서 2차 또는 3차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등록취소로 종결되는바, 폐업신고 전에 1차 또는 2차 행정처분으로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재등록 후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최초 1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지 아니면 종전 받은 처분 단계의 다음 처분을 하여야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는 첫째, 본 재등록제한제도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피하려는 자에 대하여 종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재등록후 위반시 최초 1차 처분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점, 둘째, 재등록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으로 관계공무원의 자의적인 처분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검토결과

-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성격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정하도록 수정·보완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당한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2년간
 - 시정명령을 받은 자 : 폐업신고 후 시정명령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 폐업신고일로부터 6개월간
-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한 뒤 동일한 사유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처분의 다음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을 수정·보완

【별표 5】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1)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다만, 반복적·고질적 의무위반자는 제외한다.
- (2) 위반행위자의 재산정도가 과태료 납부에 곤란할 정도로 극히 열악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인 경우
- (3) 그 밖에 경감사유에 해당된다고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의 재량기준은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현실 상황에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어야 하는바, 법령이 이러한 규정태도를 견지할 때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은 다같이 자의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따른 일시적인 민·관 유착 형태의 부패발생의 유혹과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위 개정내용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경감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2)항목(위반행위자의 재산정도가 과태료 납부에 곤란할 정도로 극히 열악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인

경우)은 소유재산의 정도나 생계비 수준을 표준으로 하여 과태료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려는 것인바, 동 경감기준은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할 정도로 극히 열악한 재산정도"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고, 이 또한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과태료의 현실적인 부과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권한행사로 부패발생의 소지가 우려된다고 할 것임.

- 또한 위 개정내용 중 (3)항목(그 밖에 경감사유에 해당된다고 부과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은 (1)항목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2)항목의 경우만을 제외한 모든 구체적인 경감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포괄 일임함으로써 ①과태료부과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여 객관화하려고 한 당초 취지가 희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과태료 부과권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편승해 금품 등을 제공하고 부과금액의 일부를 경감 받으려는 민·관유착 형태의 부패가 발생하게 될 개연성이 상존하며, ③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저하됨으로써 법제도의 권위와 실효성에 타격을 가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됨.

(3) 검토결과

- (2)항목에 대한 개선안
 - 과태료납부가 곤란할 정도로 극히 열악한 재산정도를 객관화시키고, "최저생계비"를 적용할 만한 기존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경감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사 례〉

- 재산정도(또는 재산규모) : 위반행위자의 재산이 과태료 부과금액(또는 과태료부과기준액의 최고금액)에 미달하는 정도 또는 규모
-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
(2006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 월 40만1,466원)

• (3) 항목에 대한 개선안

- (제1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경감기준이 될 만한 보다 낮은 정도의 위반행위, 위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경감사유의 유형 및 양태를 정함.
- (제2안) 제1안의 내용과 같은 규정형식이 법령운영 현황 및 입법기술상 어려울 경우 과태료부과권자가 과태료금액을 경감하고자 할 때 어떤 내용, 사항 등을 참작할 것인지 부과처분금액 경감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형태 등을 일반국민이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감기준의 대강을 제시함.

가. 제·개정 법령안 평가 개요

법무부소관 법령은 법무사무 분야에서 법률 76개, 대통령령 26개, 부령 15개이고, 검찰행정 분야에서 법률 9개, 대통령령 8개, 부령 11개이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법률 24개, 대통령령 15개, 부령 7개이고, 교정·보호 및 국적·출입국 분야에서는 법률 12개, 대통령령 24개, 부령 23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법, 상법, 형법 및 소송절차법적 성격의 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법무부에서는 법률 122개, 대통령령 73개, 부령 56개 등 총 251개의 법령을 소관·관리하고 있다.

2006년도에 법무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의뢰·접수한 건수는 16건으로 이중 15건이 원안동의 되었고 1개 법령(2개 항목)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으며, 평가 의뢰한 주요법령으로는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안이 있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등의 제정안이 있었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정안

제3조 (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는 포상금의 원칙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급사유나 요건이 결여되어 있음
 - 다만, 제5조 별지 제1호에 '선거사범신고사건중국처분통지서'에 "중국처분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일 때에 한하여" 포상금을 신청서식에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상 포상금 지급사유 요건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위의 규정내용은 추상적이고 재량이 광범위하여 부패유발요인 및 해석에서의 논란 예상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3조의 '포상금의 지급원칙'과 함께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명시하여, 재량규정의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변경이 필요하며, 그 사유내용은 제정안 제5조의 별지 1호 서식 내용인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경우가 있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정안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지급기준)

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포상금 지급 기준"과 관련,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 － 동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지침」은 포상금의 지급요건 절차 및 포상금 산정 방법 등을 정한 내부예규적인 성격임에도 이를 위원장(검찰국장)이 단독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재량의 범위가 크다고 할 것임
- 포상금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제9조) 등을 거쳐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 문구내용은 위원장이 단독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5조의 운영세칙의 제정권 및 제16조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의 집행권을 위원장에서 장관 또는 위원회로 상향조정하여 개선함이 타당함

제2절

교육 · 문화 분야 법령안 평가

1. 교육인적자원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2. 문화관광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법령은「교육기본법」등 47개의 법률과, 하위시행령 75개 및 시행규칙 60개 등 총 182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의뢰·접수한 건수는 38개 법령안이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10개 법령안에 대해 36건이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요개선 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부령)」제정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의 추천 및 위촉 업무처리 절차, 위원들의 결격사유와 제척·회피·기피제도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의 협력사업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예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하위규정으로 범주화하여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의 범위 규정,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 예시, 산학겸임교사의 임용과정 및 수당 규정, 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규모 등 구체적 범위 지정 등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개정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

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모호한 기준인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등으로 규정하여 재량규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예측가능성이 낮아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구체화 범위를 지정할 것을 개선권고

-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제정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경비의 결산기한 규정, 예·결산 내역의 공개 항목·방법 및 기간에 대한 규정마련, 수의계약 대상 및 직접구매 물품의 공개기준을 개별 물품 단가와 총액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공개의 실효성 확보할 것을 개선권고
- 「특수교육진흥법」개정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허위작성 및 조작에 대한 벌칙조항 규정과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관한 정보제공 제한규정의 예외조항(감사, 수사, 공소의 제기, 재판,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및 안전성 확보장치를 규정, 당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두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등의 개선권고
- 「학교급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학교급식공급 및 식자재공급업자가 법령위반시 위반업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마련과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직계가족이 식자재 공급업자 또는 위탁운영자로 있는 경우 당해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척·회피할 수 있는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각종 교육정책 권한이 교육자치단체의 장에게 폭넓게 이양되는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11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촉 위원 :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위촉위원 선임을 위하여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 동 규정만으로는 그 대상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여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 위촉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성을 요하는 임시이사 선임과정이 불명확하고
 -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으며, 제척·회피·기피제도가 없어 임시이사를 선임할 당해 사학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할 수 있는 등 부패소지가 있음
- ※ 「사립학교법」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위촉위원 추천 및 위촉과정(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추천하였고, 피추천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누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위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정보의 접근성과 공개성이 결여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아래 예시 사항을 참조, 심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토록 개선의견

〈 예시 〉

-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별 세부단체의 종류 등
- 추천기간 및 방법(추천서 및 이력서,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및 관보를 이용한 홍보와 접수방법
- 후보자 심사기준 등

제4조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 등)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의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4.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와 단체

제10조 (구성)

② 위원(위원장·당연직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인 위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전형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위원회의 전형 및 위원회의 추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신임대표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 전문가 20인 이내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과 공개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유네스코 활동에 관계있는 국제기구와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지 범위가 불명확함
 - 어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것 인지 추천단체 범위가 불명확함
 - 위촉위원 추천 및 위촉과정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과 절차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음
- 위촉위원 추천 및 위촉과정(어느 단체에서 누구를 추천하였고, 피추천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누구를 어떠한 기준으로 위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정보의 접근성과 공개성이 결여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예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하위규정으로 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

〈 예시 〉

- 교육 · 법조 · 언론 · 시민단체별 세부단체의 종류 등
- 위원의 자격요건
- 추천기간 및 방법(추천서 및 이력서, 접수방법)
- 홈페이지 및 관보를 이용한 홍보와 접수방법
- 후보자 심사기준 등

제44조의2(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 ②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위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정지하고 2년간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2(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고시)

- ②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위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정지하고 2년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위한 검정고시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위조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재량권의 투명성을 위하여 상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으나
- 국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대학입시제도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절차 등과 비교할 때 재량기준과 제재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검정고시 부정행위자의 경우

- 부정행위자는 2년간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부정행위 행태별로 제재수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세부규정이 없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음

- 또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경중에 따른 제재수준 등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 대학입시 부정행위자의 경우

- 고등교육법 제34조제4항에서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하여 재량기준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경중에 따른 처리절차, 제재수준을 교육인적자원부의 훈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음
- 부정행위시 제재수준의 상이점(검정고시 2년, 대학입시1년)에 대하여는 교육정책 차원에서 판단하고 시행된다 할지라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별과 유형에 따른 제재수준을 구체화한 규정이 없어 재량의 객관성을 기대할 수가 없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정행위자의 행태별 제재수준은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법(「고등교육법」제3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준용하되, 부정행위자의 처리절차, 유형, 제재정도 등에 관하여 하위법령 또는 교육자치단체의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마련

【별표 2】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제42조제1항 관련)

제1호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시민단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용권자(학교장, 학교법인)의 재량이 과다하며, 법령 적용시 혼란이 예상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과 관련하여「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 아래 사항을 반영
 - 산업체는「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82호)」등을 참고하여 범위를 지정
 -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등을 참고하여 범위를 지정
 - 비영리기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등을 참고하여 범위를 지정
 - 사회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 제4조(등록) 등을 참고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 단체로 범위를 지정

【별표 2】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제42조제1항 관련)

제3호 :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규모 등 구체적인 범위가 지정되지 않아 임용권자(학교장, 학교법인)의 재량이 과다하며, 법령 적용시 혼란이 예상됨
- 미등록 예술단체까지도 정부·지자체의 포상이 무분별하게 지원되어 정부기관 등의 공신력 저하

〈사례〉

* 대학 무용대회에 참가한 학부모로부터 '딸의 입상을 도와달라' 는 청탁과 함께 다른 경연대회에 참가한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수수('03.6.23. 동아)

* 학부모 학원장 등 70여명이 웅변대회 입상에 대한 대가로 모교육회 본부장, 모협회 회장, 모화술회장, 예능 관련단체 간부 9명에게 3억5천여만원 수수('03.11.10. 중앙)

- 심사위원과 대회참가자가 대회 전에 입상자를 선정하는 등 입상자 선정 관련 비리 발생

〈사례〉

- * 00대전과 00전람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대필해 주고 상을 타게 하는 등 출품자가 협회 이사장 등 심사위원에게 9천여만원 금품수수료 24명 적발('03.7.4. 프레시안)
- * 허모씨가 00대전 운영위원 선정 관련 00대학장에게 2천만원 금품 제공혐의로 구속, 이모씨가 00대전 심사위원 관련 운영위원에게 5천여만원 전달 혐의('00.9.29. 국민)
- * 20여개 국악대회 심사위원의 담합과 뇌물로 신모씨 등 심사위원 20여명이 연루, 대전에서 조모씨는 참가자 2명으로부터 3천여만원의 입상사례금을 받고 대통령상을 준 혐의('03.10.31. 한국)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개정,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
 -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 예시
 - 임용과정 규정(공고, 서류전형, 면접, 학운위 심의 등)
 - 수당기준 마련(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참조)
 -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규모 등 구체적 범위 지정
 - 비리발생 경연대회 수상실적이나 미등록 단체의 수상실적 등은 산학검임교사 임용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규정

제9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심사기준 등)

-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심사기준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자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호한 기준인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등으로 규정하여 재량규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예측가능성이 낮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규정된 조항을 명확하게 구체화 범위를 지정

〈 예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등 사회적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

제34조 (영재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4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은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당해 영재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영재학교의 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반 초·중등학교에 비하여 특혜유발가능성이 있으며 재량권 과다
 - ※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고)의 학운위 구성 절차는 영재교육법시행령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선출절차를 준용하고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영재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선출방법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준용
 - ※ 다만 현재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전국단위 학교임에 따라 지역위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됨

제42조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 ① 법 제15조제3항에 의한 연수기관은 영재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정하여, 1년간 시범운영 후에 연수원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인 · 허가는 그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영재교육연수원 인가 가지정 제도"는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미흡
 - 법적 절차에 의하기보다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특정기관에게 가지정을 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특혜발생가능성이 있고
 - 연수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하고, 또한, 1년간 시범운영 후에 연수원으로 지정여부 결정시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
 - 1년간 시범운영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지정을 취소할지, 아니면 계속하여 가지정할지 명확하지 못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영재교육연수원 인가 신청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을 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제42조제5항을 철회하거나
- 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1년간 시범운영 후 지정여부 판단기준을 마련



제5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의 내용·조건 및 기간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에 의한다.
- ② 관리청은 재단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관리청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무상대부, 허가 또는 취소요건에 관한 요건 및 행위규정을 근거법인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 규정에서 일부조항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된 때"만 규정하여 오해소지가 있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재량기준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무상으로 대부된 국·공유재산의 투명한 활용을 위하여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불필요

※ 제6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에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제22조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국립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6조 (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국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과 공개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의 독점 및 공개 미흡
 -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이 학교장이나 일부 담당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에 관한 정보가 일반교사나 학부모에게 잘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공개가 되더라도 총괄적인 내역만 공개하고 있음
- 수익자부담사업의 수익계약 관행
 -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학교 단체여행에서 버젓이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업체와 수익계약을 통해서 위탁하기 때문임
- 수익자부담경비의 결산기한 부재
 - 수익자부담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되 당해 사업 종료 후 며칠 이내로 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부재

- 수익자부담사업 예·결산 내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의 공개 항목·방법 및 기간에
대한 규정 부재

〈사례〉

※ 수학여행 리베이트 사례(한겨레 신문, '06.5.7)

- 수학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제주도나 설악산 지역의 숙소들은 대부분 퇴직한
교장선생님을 “영업사원”으로 두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오는 학교를
유치하면 계약 건수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사례가 있음
- 또한 교장과 교감 등 대표단이 수학여행 계약을 앞두고 사전답사를 오는 경우
숙소측에서 이들의 경비 일체를 책임지고 관광안내까지 해주고 있음
- 관광버스 계약때 리베이트 대신 버스비를 깎아 주겠다고 하면 반기지 않는
학교가 많아서 처음부터 계약금액의 10%(약 100 ~ 150만원)를
리베이트로 포함해서 계약하는 실정

※ '04 ~ '06년 경기·인천지역 수학여행 계약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파악된 계약건수 300여건 가운데 공개입찰로 계약한 학교는 단 6건에 불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수익자부담경비를 당해 사업 종료 후 며칠 이내로 결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마련

〈 예시 〉 국립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당해 사업
종료 후 지체 없이(또는 ○○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누적 공개하여야 한다.

- 수익자부담사업 예·결산 내역,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의 공개 항목·방법 및 기간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
 - 국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사립학교는「학교회계세출 예산집행 지침」에서 공개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
 - 수익자부담사업별 예·결산 내역,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항목별 비용 등 세부 내역까지 학교홈페이지에 누적공개
 -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내역 총괄현황은 학교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상세내역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제42조 (구매내역 게재)

국립학교의 장은 제40조3항의 단서 규정 및 제41조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중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4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지정정보처리장치인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및 직접구매 물품의 공개기준 불합리
 - 구매금액 총액을 배제하고 물품의 단가로만 규정하여 공개 실효성 미흡
- 구매내역의 범위의 구체성 결여
 - 단순히 물품의 구매내역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형식적인 공개에 그칠 수 있음
 - 구매 세부내역(물품의 종류, 구매처, 계약방법, 규격, 단가, 구매총액, 구매사유 등)을 알 수가 없음
- 구매 후 게재시한 및 구매내역 게재기간 미규정
- 교육기자재 등의 구매시 이를 직접 사용할 교사들의 참여 부족
 - 교사들이 청구하지도 않은 물품이 구매되거나, 저질기자재가 납품되는 사례 빈번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수의계약 대상 및 직접구매 물품의 공개기준을 개별 물품 단가와 총액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공개의 실효성 확보

〈 예시 〉 국립학교의 장은 제40조3항의 단서 규정 및 제41조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구매 세부내역, 게재시한 및 구매내역 게재기간을 규정하여 물품구매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반영)

〈 예시 〉 물품 등을 구매 후 지체 없이 그 상세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적관리 하여야 한다.

- 교육기자재 구매과정에 담당교사 및 학부모의 참여 · 협력체계를 제도화(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반영)

- 행정실의 구매담당자는 구매계약 공고 이전에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품질과 가격수준을 정하고, 검수시 참여하는 제도 시행
- 교복, 체육복, 앨범 등 수익자부담사업의 경우 학부모 참여에 의한 공동구매

제43조 (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국립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립학교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4조 (출납원)

- ① 출납원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 (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중 최상급자로 하되, 당해 국립학교에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국립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② 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 ③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학교의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직원 중 최상급자가 학교회계출납원 (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으로서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회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회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
 - 지정금융기관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인출하는 경우 행정실장 및 학교장에게 입·출·송금 내역을 자동통보 하는 부패통제장치 마련

제52조 (장부 등의 보존기간)

국립학교의 장은 제41조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문서보존 대상의 불합리
 - 제41조의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한 내역에 관한 장부뿐만 아니라 제51조 규정에 의한 징수부, 출납부, 지출부를 보존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사 등 부패통제에 어려움
- 장부 등의 보존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문서보존대상을 확대
 - 제41조의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를 생략하고 직접구매한 내역에 관한 장부뿐만 아니라 제51조 규정에 의한 징수부, 출납부, 지출부 등 회계관련서류(증빙서 포함)에 대한 보존 필요
- 문서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거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 추가

제15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진단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병·의원을 거점으로 한 선별검사를 연 4회 이상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진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병·의원에 의뢰시 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 재량기준이 구체적·객관적이지 못하고, 병·의원 선정에 따른 부패 통제장치 부재

※ 「학교보건법」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에서 건강검사의 대강을 규정한 뒤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인「건강검사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동「건강검사규칙」에서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검사항목 및 방법, 건강검진의 절차, 건강검사 결과의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장애 선별검사 의뢰절차를 하위법령에 마련, 재량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
- 장애 선별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 항목 및 절차, 검진기관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제38조(보호자의 기록열람)

- ③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관한 모든 개인 정보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기타 허위로 작성 또는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제38조 제3항 위반에 대한 관련 규정 부재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관한 모든 개인 정보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기타 허위로 작성 또는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규정하지 않아 부패통제장치 미흡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하거나, 별도의 벌칙조항을 신설

〈 예 시 〉

- 국토기본법 제32조 (「측량법」의 벌칙 준용)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7조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벌칙 준용)
-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관한 정보제공 제한규정의 예외조항(감사, 수사, 공소의 제기, 재판,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및 안전성 확보장치를 규정

제43조(벌칙)

- ②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감의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특수학교 및 교육기관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의무교육대상의 특수교육지원대상자를 학교교육 시간동안 보육 또는 교육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장이나 개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벌칙을 부과하기 이전 절차인 시정명령, 청문 등의 규정 부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당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두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제2조(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 ①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회수, 급식시간 및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품질 및 원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심의기능의 공정성 저해와 연고·온정주의 부패유발 우려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의 직계가족이 식자재 공급업자 또는 학교급식 위탁운영자인 경우 제척·회피제도가 없어 심의기능의 공정성을 저해와 연고·온정주의에 기인한 부패유발요인이 우려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직계가족이 식자재 공급업자 또는 위탁운영업자로 있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회피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문화관광부소관 법령은「문화예술진흥법」,「영상진흥기본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36개의 법률과, 하위 시행령 41개 및 시행규칙 32개 등 총 109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의뢰·접수한 건수는 24건으로 주요 제·개정내용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2006년 10월 28일)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행성 성인오락실, 및 PC방을 제재하기 위한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판단기준을 강화하고 우수게임상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제정
- 「경륜·경정법」시행(2006년 10월 28일)과 관련하여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한도액 설정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강화시키고, 장외매장 시설기준 중 관람자 편의시설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에 신설하는 등 「경륜·경정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일부 개정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2006. 10. 28일)과 관련하여 창업·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와 절차를 마련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강화 등을 위한 시행령 제정 및

신고·등록신청서 관련사항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제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2006. 10. 28일)과
관련하여 공동제작영화에 대한 한국영화인정 기준 마련,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및 디지털 소형영화의
개념 정의 및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제정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4개
법령에 대해 개선의견을 통보하였고, 특별한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20개 법령에 대해 원안동의를 하였으며,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의견 5건을 송부하여 차후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권고하였다.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

- ①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외매장 설치·운영계획(재원조달계획, 수지분석표, 안전관리대책, 민원발생 예방대책,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지역주민·단체 등 의견서
 3. 동일 시·군·구내 경마 장외발매소 설치·운영 현황
- ②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매장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 「경륜·경정법 시행령」개정안 제15조제4호(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람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

(1) 평가항목 : 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공개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장외매장 허가 신청시 "장외매장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기준 및 절차 부재로 검토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고 자의적 판단 가능
- 장외매장 허가신청시 "지역주민·단체 등 의견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및 단체"의 개념 불명확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아 접근성·공개성 부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내용 전면 수정)

- 장외매장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검토기준 및 절차 마련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식·절차·규모, 연령, 거주요건 등 명확화

- 단체의 성격, 분야, 규모, 법인격, 소재 등 명확화
- 세부규정 미비시 대표성, 객관성이 낮은 요식행위로 변질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 및 단체와 금품수수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부패통제장치 마련



제14조의2(관람자 편의시설)

영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람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냉·난방 및 환기시설
2. 휴게실, 흡연실, 매점, 화장실 등
3. 가족단위 관람자를 위한 시설
4. 고객 상담 및 안내를 위한 공간

(1) 평가항목 :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장외매장의 관람자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 면적, 수량 등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부재로 재량의 가능성
 - 장외사업장 개설의 최적지는 대도시의 변화가로서 임차료가 고액이므로 사업신청자(특히 대형자)는 수입증대를 위하여 편의시설은 전체 사업장 규모에 비해 협소하게 설치할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기준 부재로 자의적 판단 가능

(3) 검토결과 : 개선의견(내용 전면 수정)

- 관람자 편의시설 중 휴게실, 흡연실, 가족단위 관람자를 위한시설, 고객 상담 및 안내를 위한 공간 등은 유사 사업장의 최대 수용인원 중 해당인원 비율 등 관련 통계자료를 참조, 구체적·객관적으로 정할 필요
 - 제1항의 1호 내지 4호의 시설의 개념 및 시설별 면적, 부대시설 등의 적절한 규모는 별표 또는 고시로 구체적으로 규정

제4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절차)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 등의 지원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의 음악 산업과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기관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과 관련한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필수화하여 공정성 확보하고 하였으나
 - 업무위탁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포괄적 위임하여 재량의 과다 소지
- "그 밖의 음악산업에 관한 기관 및 단체"에 판단에 대한 재량 과다하여 특혜발생 가능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4조 제2항의 업무 위탁시에는 지원·관리 절차를 문화관광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하고

• 제4조 제2항 2호의 그 밖의 음악산업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기관"으로 구체화

※ 공공기관은「부패방지법」제2조(정의)를,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의 경우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정의), 제4조(등록)을 참조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 단체로 범위를 지정



【별표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3.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마이크 소독방법, 청결여부 판단기준 부재로 준수의 용이성 저하
- 부적정한 소독시 감전 및 전기적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청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 및 기준 부재로 실효성 의문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의 1호 및 7호를 준용하여 마이크 소독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향후 청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기준도 마련토록 개선의견 권고

〈 예 시 〉 3.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소독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나. 덮개 :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 마다 각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 참고법령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별표 3】

제21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2항(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서면통지의 예외

(1) 평가항목 :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영업의 폐쇄, 음반 등을 수거·폐기시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서면통지의 예외를 규정
- 공공의 안전 또는 및 복리 등 불확정 개념의 열거, 급박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로 자의적 해석 가능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을 참조하여 안 제17조의 각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도록 개선의견 송부

〈 예 시 〉 제17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범죄목적으로 사용·이용 또는 증거인멸 등으로 긴급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명백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절

노동 · 환경 분야 법령안 평가

1. 노동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2. 환경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평가 개요

노동부소관 법령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 직업훈련·자격과 관련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기준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37개의 법률, 시행령 40개 및 시행규칙 36개 등 총 103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006년도에 노동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의뢰·접수 건수는 39건으로 주요 제·개정 내용은

-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 인력의 직업관련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고용보험사업을 사전 검증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 위험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에 대하여 제품의 성능만을 검사·검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안전인증'제도를 도입과 사업주가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사용중 검사로 일원화하여 검사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규칙」, 「산업보건기준규칙」 등 5개 법령 개정

-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의 다양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차등설정,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제도 도입 등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일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고, 또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요구사실 및 기간을 공고하고, 노조 교섭단은 합의에 의해 원활히 구성하도록 하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토록 규정(신설)하고, 노조의 교섭위원 및 그 대표자에게 교섭권한을 부여하며, 교섭단의 의사결정 기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자율적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교섭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신설)함
- 이외에 「공인노무사법」관련 법령,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정책에 따라 보험료징수 관련법령이 통합정비차원에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평가하였고, 이 중 35개의 법령은 원안동의하였고, 4개 법령(5개 항목)에 대하여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제4조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을 갖춘 법인 중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 ③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관할지역의 일부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당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당해 관할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지정받은 지역에 한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및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동규칙 제7조에서는 지방관서장이 작업환경측정을 대행하고자 할 때 측정기관에 대행지시서를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관서장이 측정대행자 중에서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대행 지시를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정측정기관이 난립함에 따라 일부 영세 측정기관은 덤핑으로 계약을 수주하며,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조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실한 작업환경측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정대행자를 지도·감독하는 규정 필요

(3) 검토결과 : 개선의견(2개 항목)

-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측정기관의 선정 기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는 규정 신설
- 부실한 작업환경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측정대행자를 지도·감독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환경측정대행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되, 지도·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4(남북간 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진출한 기업의 인력양성 및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함에 있어서 대상업체의 범위 및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여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 동 조문의 시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시행절차 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지원금 집행함에 있어서 부패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8조의4(남북간 교류·협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지원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원대상 업체의 범위 및 선정기준, 지원규모 및 방법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규정이 요구됨
- 동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범위를 규정하고, 기타 선정기준 및 지원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하위 법령(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개선함이 타당함

제34조의2제4항(안전인증표시 등)

- ④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거나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안전인증대상품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표시를 한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현행 의무적 조치행위에서 임의적 조치행위로 완화시킴
- '안전인증'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행위를 재량행위로 확대할 경우 안전인증제도 본래 도입 취지가 약화될 수 있고, 나아가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른 부패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안전인증'제도의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의무적 이행조치 규정에서 완화하여 임의적 이행조치로 개정한 점은 법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또한 이를 임의적인 이행조치로 할 경우 불법에 대한 재량행위를 허용하여 부패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동법 제34조의2제4항 안전인증표시 제거에 대한 개정안은 현행 동법 제34조의6 (안전인증표의 제거 등)와 같이 지속적 재량행위로 개선함이 바람직함

제50(벌칙)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개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자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법령 개정(안)은 금융거래 위반자 보다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낮아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중요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아 제재수준이 미약할 경우 이를 악용할 우려가 많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개인금융거래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벌칙이 가벼울 경우 범죄 또는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금융거래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수준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 또한 동법 동조제2항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가 가능토록 벌칙 강화 개정이 요구됨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환경부소관 법령은「환경정책기본법」,「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 41개의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의뢰·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주요 제·개정 내용은

- 현행「폐기물관리법」의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절차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원칙,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자원순환사회의 형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재정적·기술적 지원, 전처리 시설 등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 물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량행위 투명화 등 법령 정비사항, 규제개혁전략과제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수질환경보전법」일부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관련 통합 평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평가서 작성

간소화와 신속한 협의 요구 및 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후관리 요구 등을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등이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20건에 대해 원안동의를
하였으며, 부패유발요인 있다고 판단되는 6건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차후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권고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제48조의5(재정적·기술적 지원)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방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 신설되는 안 제48조의5 제2항에는 재정지원 근거만이 명시되어 있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원대상·단체 및 규모 등이 결정될 경우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고 부적격 단체 및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활동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여 재정지원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개선 권고

〈 예시 〉 ③ 제2항의 재정지원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통계조사 등)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원순환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의한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등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신설되는 안 제7조의3 제2항 「전문성이 있는 기관」지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대행기관이 지정될 경우, 조사능력이 없는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부실조사와 예산낭비 및 담당자와 대행기관과의 유착에 따른 특정기관 지정 등의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당해법령 또는 하위법령 구체화)

- 자원순환시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대행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기준 및 지정방법 등」을 예시와 같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시〉

- 안 제7조의3 제2항에 대행기관의 기준 및 지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
- 일반적인 기준 및 지정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 및 지정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제35조 (과징금처분)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34조제3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폐기물 처리 중단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폐기물 처리 중단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증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한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안 제35조제1항제3호「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밖의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음.
- 악덕 폐기물처리업자의 고의성 있는 과징금 체납을 막기 위한 안 제35조제3항의 취지는 인정되나, 단 1회의 납입기한내 미납시 예외 없이 원 행정처분 명령을 하는 것은 과징금처분의 정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재가 과중하여 처분을 면하기 위한 청탁, 금품제공 등 부패유발요인을 제공할 수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안 제35조제1항제3호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량 사항을 예시와 같이 구체화·객관화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음.

〈 예시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에서 인정하는 경우"

- 징수율 및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현행 규정(제29조 제3항)을 유지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정책입안부서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행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원칙적으로 과징금 미납시 원행정처분을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선의의피해자 예방과 제재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2와 같이 납부기간 유예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사법령 :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39조의2

제2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그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교체한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 가. 소각시설(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 나. 다. 라.(생략)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단서 말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둬으로써 어느 경우에 첨부하고 어느 경우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첨부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용개시신고서 제출시 서류 첨부 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않아 이에 따른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의 증설교체시 서류첨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량기준을 객관화·구체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거나,
- 단서 신설 취지가 업체의 준수부담 경감 및 제도개선의 차원인 점을 감안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교체시 서류첨부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현재 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대행자 등록 업무 및 이 법 개정후 시행예정인 자연환경분야 조사전문기관 등록 업무 등을 위탁할 경우 등록기준 미달 및 허위 등록 등 수탁업무수행에 따른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부패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평가결과 : 개선의견 (부패통제장치 규정화)

- 민간인 신분인 수탁기관 임·직원의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어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 예시〉 (신설) ③ 제2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절

보건 · 여성 분야 법령안 평가

1. 보건복지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2. 여성가족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보건복지부소관 법령은「국민건강보험법」,「식품위생법」,「의료법」,「약사법」등의 67개의 법률과 84개의 하위 시행령 및 123개의 하위 시행규칙을 포함 총 274개의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가 의뢰되어 평가가 완료된 건수는 20건으로 주요 제·개정 내용은

-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 노인수발보험 도입을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개편과 요양보호사 자격 인정제를 도입하기위한 「노인복지법」의 개정
-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의 범위를 정하고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를 조정하며 식품이력 추적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등이었으며

위원회에서는 평가 의뢰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16건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를 하였으며, 부패유발요인 있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하여는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안

제11조(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병원·법인 또는 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받은 병원·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지정기준 이외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치매거점센터 지정에 있어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음
- 치매거점센터에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치매거점센터의 비용 부담집행 등을 비롯한 예산의 부적절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치매거점센터의 구체적인 수행업무,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 절차, 심사방법,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포함한 지정절차를 고시에 규정하여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견 권고
- 치매거점센터의 업무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 규정하도록 개선의견 권고

제62조 (이행강제금)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공시금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최근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으로 위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을 일괄감면하는 사례가 행자부 감찰에 적발되는 등 이행강제금 관련 부패사례를 감안할 때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동조항은 이행강제금의 상한만을 정한 채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도 위임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위임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우려가 있음
- 위반행위의 유형이 다양하여 이행강제금의 상한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또한 아니라고 판단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이행강제금을 위반면적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의 10/100의 금액 또는 공시 주택가격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개선의견 권고

【별표1】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9. 식품 등을 진열·보관·유통·판매·조리·운반하는 자는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13】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2조 관련)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당해 영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 부터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식품이력 추적관리를 위해 식품의 거래내역을 일정기간 보관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거래”의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법령 소관 부처의 입법의도 역시 영업자간의 거래내역을 의미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거래내역서 또는 거래기록을 구체화할 것을 개선의견 권고
〈예시〉 9. 식품 등을 진열·보관·유통·판매·조리·운반하는 자는 거래내역서 (영업자간의 거래를 말한다) 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당해 영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영업자간의 거래를 말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 부터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제6조제2항 관련)

4. 기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식품위생분야에서의 행정부패는 인·허가업무와 지도·점검업무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지도·점검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감시의 경우 위반건수 중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이 27%를 차지
-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내용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시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발생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
 - 또한 기존에 고시하도록 한 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개선의견 권고

제2조(사업자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년 3억원 이상의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이하 “당연신고 사업자”라 한다)

(1)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년 3억원 이상의”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당연신고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 가액산정의 기준이 시중거래가격인지 장부가액인지, 모집식품 가액인지 제공식품 가액인지 불명확함
 - 당연신고 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어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우려
- 가액산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식품기부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할 필요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시행령 제정안 제2조제2항의 식품 가액 산정을 명확히 수정할 것을 개선의견 권고
- 〈예시〉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년 3억원 이상(제공된 식품의 장부가액 기준)의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이하 “당연신고 사업자”라 한다)

제4조(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 등)

③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 · 품목 · 수량, 가액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이용자 수(개인 및 단체로 구분)
4.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1)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식품 등이 있을 수 있으나
 -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4호는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
- 식품 기부는 비교적 단순한 수행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열거하여도 향후 잦은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예시하여 열거하거나 동호를 삭제할 것을 개선의견 권고

제5조(직접경비의 범위 등)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부식품 차량적재 및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식품의 기부조건 이행을 위한 포장비용
3. 기타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1)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직접 경비를 규정함에 있어 적재·운반 비용, 포장비용 이외에 “기타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 식품기부 사업자가 어떠한 경비가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
- 식품 기부는 비교적 단순한 수행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경비를 시행령에 열거하여도 향후 잦은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타 모집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열거하거나 동호를 삭제할 것을 개선의견 권고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여성가족부소관 법령은「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6개의 법률과 6개의 하위 시행령 및 8개의 하위 시행규칙을 포함 총 20개의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00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가 의뢰되어 평가가 완료된 건수는 3건으로 제·개정 내용은

- 각급학교의 장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정폭력 상담소의 신고절차·설치기준·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
- 표준보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위원회에서는 평가 의뢰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2건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를 하였으며, 부패유발요인 있다고 판단되는 1건에 대하여는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상담·입소자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
2.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서류를 조작하거나 보호 인원수를 과다 계상하여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부패사례를 감안하여 상담기록 및 교육훈련기록을 장기간 보존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동 의무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향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상담소·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기록 보존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규정을 신설할 것을 개선의견 권고
- 제재조치가 신설될 경우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기록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법률에 모두 열거하고 시행규칙안 제13조제3호(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와 같은 규정은 삭제할 것을 개선의견 권고

【별표 5】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1)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은 각 처분을 명시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라 목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별표5의 1.일반기준의 라 목을 삭제할 것을 개선의견 권고

제5절

국방 · 보존 분야 법령안 평가

1. 국방부(방위사업청 포함)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2. 국가보훈처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국방부소관 법령은 50개의 법률과, 하위 시행령 135개 및 시행규칙 61개 등 총 246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도 국방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 · 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의뢰 · 접수한 건수는 26건이었다.

위원회에서는 국방부의 법령 제 ·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18건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를 하였으며, 8건의 법령안에 대하여 24개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방부 법령안 주요 제 · 개정 사항은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일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북(在北)시 사망한 탈북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지원, 국군포로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른 보수 및 연금의 차등지급,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무상 의료지원 혜택 부여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
- 국민들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각종사업의 허용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보호구역 단순화 및 행위규제를 정비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

- 군인사법 제57조제3항(국방부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징계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폐지에 따른 통일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군인·군무원 징계령」및「군인 군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제정
-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방부 현행 법령서식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제 등 개선이 필요한 서식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국방부령 일괄 개정령」개정.
-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제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등과 관련 전방지역 미확인 지뢰지대의 지뢰제거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민간업체가 지뢰제거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뢰 제거공사업법」을 제정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사항을 보완
-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대학을 창설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연합·합동 작전의 개념, 교리, 실험·분석 등에 관한 연구 및 교육 기능을 분장케 하며, 육·해·공군의 합동성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는 업무의 효율성 및 군사작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참의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합동참모대학령」 제정

- 국방부분부·해군본부 개편 및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라 상급부대 및 기관과 업무 연계성을 유지하고, 국방개혁 추진 등 대내·외적인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처·실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해병대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을 효율적인 구조로 통합·조정 하기위해「해병대사령부직제」전부 개정
- 군 조직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투·작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지원분야에 대해 인사·조직·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부대 운영과 성과중심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군 책임운영기관법」제정
- 기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개정,「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정,「국방대학교 설치법」개정,「군인사법」개정,「수의사관후보생선발등에 관한 규칙」제정등이 있었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규칙」제정안

제5조(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 ① 수의사관후보생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등급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② 징병신체검사 등급이 같은 경우에 항목별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50%
 2. 수의예과 1·2학년시험 성적 : 50%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및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수능성적을 선발 기준으로 할 경우 특정대학교 재학생에게 유리, 특혜발생시비의 소지
 - 수능성적은 지원대상자들이 2년전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성적으로 동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동 수능성적을 선발기준으로 선택한 이유가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현행 ‘군종사관’ 선발과 같이 “공개경쟁 시험” 제도 등이 오히려 타당
- 교육인적자원부의「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하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성적을 등급(9등급)으로만 제공하며 기존에 지공하던 표준점수 및 백분위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2006. 8. 31)하였는 바, 2008년도 이후에는 ‘수능성적’에 의한 선발기준은 수정이 불가피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50%, 2. 수의예과 1·2학년시험 성적 : 50%” 선발기준을 수정
 - 군종사관 선발과 같이 공개경쟁시험 또는 군의관 선발과 같이 전산에 의한 무작위 추첨제 등으로 수정

제6조 (징계사건의 개시)

- ① 징계간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징계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징계권자가 사건조사를 지시한 경우
 2. 징계간사가 직접 비행을 인지한 경우
 3. 감사원법 제32조에 의한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징계를 의뢰한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1항 제2호의 관련 근거 법령을 찾기 어렵고, 징계간사가 징계사건에 대한 조사권한(동 징계령안 제10조)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자의 지시에 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동 징계령안 제7조 제2항)으로, 이를 징계간사가 인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기 어려움
- 위 규정과 같이 “징계간사가 직접 비행을 인지한 경우”에 징계사건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 징계간사의 조사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없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사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발생뿐만 아니라, 징계혐의자가 이를 면하기 위한 각종 부정행위를 배제할 수 없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 제6조 제1항 제2호 “징계간사가 직접 비행을 인지한 경우”는 법령의 근거도 없이 징계간사에게 지나치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 만약, 징계간사가 비행을 인지한 경우에는 동 제정안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징계권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삭제하여도 무리가 없음



제12조(징계권자의 조치)

- ① 제11조의 상신을 받은 징계권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혐의사실의 유무, 징계벌목 및 그 정도를 심의·의결하게 함이 타당한 때에는 회부할 수 있다.
 2. 징계혐의가 없거나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각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회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회부와 동시에 경고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구체성 및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1항 제1호 후단의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당연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여부를 징계권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그 목적이 군의 특성상 징계권자인 부대의장이 지휘권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
- 또한, 위 제1항 제2호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회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군의 징계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징계권자가 이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 내용수정(당연규정으로)
 - “회부할 수 있다.”를 “회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 내용수정
 - “정상을 참작하여”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을 “사안이 경미한 경우”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경우를 적시하여 징계권자의 불회부에 대한 재량권을 제한

제3조 (열람·등사의 제한 및 절차)

- ① 징계혐의자 또는 변호인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열람·등사신청서에 의하여 징계간사에게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징계간사는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열람·등사 신청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령 제20조 제2항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3조제2항의 “열람등사 허가권자”인 징계간사는 징계혐의자를 조사하고 그 사실결과보고서를 징계권자에게 보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자로서, 허가권자 자신이 징계혐의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한 내용에 대하여 비록 그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
- 제3조제3항제4호의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 부분과 관련,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두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허가권자의 과도한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존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3조제2항에 의한 열람·등사 허가권자를 당사자인 징계간사를 배척, 징계권자로 수정하여 재량권의 남용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재량규정의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 제3조제3항제4호의 후단부에 있는 불확정개념을 개선하여 재량 범위의 명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제15조(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세대 대표자 1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의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제5호 월지급액의 67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 각 세대별 대표자는 가족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 ③ 지원금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이 결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총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나머지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반기마다 지급한다.

(1)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특혜발생 가능성

(2)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초 지급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급 완료
- 동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고 또한 기타 법령[주민등록법 제7조]에 의한 세대를 준용하는 경우 한 가족임에도 여러 세대가 발생하고 이 경우 새로이 각 세대간에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상되며,
- 대표자 선정 기한에 대하여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족간 협의 및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국방부장관이 지정 할 경우에 직권 대표자 선정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 및 선정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음.

- 최초 지원금 결정 및 지급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지급 완료됨에 따라 대표자가 결정되었다가 해당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타인과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없거나 부정 부당 지급될 경우가 발생 가능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5조제1항의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세대”를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은 가족”으로 수정
- 제15제2항의 “각 세대별 대표자는 가족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에 대하여 각 세대별은 불필요것으로 가족으로 하고 협의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예시와 같이 순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예 시 〉 “가족 대표자는 협의를 통하여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다음의 순위에 의한다.”

1. 배우자
2. 자녀(다수인 경우 연장자 순)

- 제15조제3항에 예시와 같이 후단부 또는 별도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부당 지급을 개선

〈 예시 〉 다만 제2항의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타인과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항에 의거 새로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 (허가기준)

- ① 지뢰제거용역업의 허가기준은 지뢰제거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기초로 설계도와 공사내역서 등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기술 인력과 장비,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지뢰제거시공업의 허가기준은 지뢰탐지 및 제거 기술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뢰제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기술 인력과 장비,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1) 평가 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확정되지 않은 지뢰제거지역에 대한 설계도와 공사내역서 등의 작성을 허가 선결조건으로 요구함은 구체성·객관성이 결여되고, 이와 같은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 장비, 인력에 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규정
- 적격업체를 심사함에 있어 심사하는 주체 및 통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6조(허가 기준) 제1항 및 제2항의 선행 조건 삭제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재량이 과다한 사항을 해소하고, 통제 수단을 확보토록 개선

〈예시〉

- 제6조③〈신설〉(지뢰제거용역업 및 지뢰제거공사업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하에 지뢰제거용역업 및 지뢰제거공사업자에 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제3항의1(지뢰제거용역업 및 지뢰제거공사업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등록의 유지 및 허가·등록의 말소 등)

- ② 국방부장관은 제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리제거공사업의 허가·등록을 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제거공사업의 허가·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1. ~ 6. (생략)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지리제거공사업의 허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록할 수 없음에도 등록 말소를 임의사항으로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참조

- 단순 지시명령이나 부실시공 등을 제제함에 있어 영업정지 등의 절차가 없음
 - 경과조치 없이 말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권자에게 과도한 제재수단을 부여하고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2항 및 제3항의 후단부를 예시와 같이 개선하여 허가권 말소를 명확히 하고 결정권자의 선택적 재량을 제한

〈 예시 〉

- 제12조제2항 : 국방부장관은 제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뢰제거공사업의 허가·등록을 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 제12조제3항 :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뢰제거공사업의 허가·등록을 말소하거나 ()년 이내의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6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12조제4항(신설)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제18조 (계약절차)

- ③ 현장조사서의 원가 타당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지뢰제거공사업자를 선정할 후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1항에서 발주자가 입찰참여자의 공사 수행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입찰참여자가 분석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현장조사서의 원가 타당성 심사는 주관적이고 이러한 내용은 입찰예정가격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이를 분리하여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구체성·객관성이 결여된 과도한 재량사항이며,
 - 특수한 공사(지뢰제거)를 발주하는 경우 일지라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명(제한)경쟁입찰을 선택하는 것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줄 요소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18조제3항을 삭제하여 지뢰제거공사업자에게 공정한 입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

제22조(수주자의 하자담보 책임)

- ① 수주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지뢰제거 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간 당해 지뢰제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 ② 지뢰제거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하여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공중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동 법률안에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준수부담
 - 지뢰제거 공사와 일반 공사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과다
- 제2항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계약시 기간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과정에 부패 발생 가능성이 존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22조제1항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준수부담을 완화하고 제2항을 삭제하여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준수내용을 명확히 하고 부담의 적정성 유지

제10조(제조·판매장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판매 품목의 단가
2. 제조·판매 품목의 적요 및 증감내역
3. 제조·판매 품목의 재고량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동 법령안 제6조에 의거 제조·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의 일부로써 품목의 단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취소대상으로 제10조에 의거 해당 장부를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어 품목의 단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가격통제(시장원리 위배)를 배제할 수 없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여 제조·판매업자가 법을 준수부담을 완화시켜 제조·판매업자의 비밀을 보호.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국가보훈처소관 법령은「국가보훈기본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15개의 법률과, 하위 시행령 14개 및 시행규칙 12개 등 총 41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도 국가보훈처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 평가 의뢰·접수한 건수는 22건이었으며

사안별 주요 개정사항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06년 7월 1일)과 관련, 그 소관 업무를 제주특별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해,「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8개 시행령의 일부사항 개정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 시행규칙 일괄 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소급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규칙 개정
- 보훈대부채권센터 설립·운영계획에 따라 “대부채권관리업무”를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수행하기 위해, 25개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였던 당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5개 시행령 개정
- 전상·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체검사 실시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헌법재판소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2006. 2. 23)에 따라 국가기관·자치단체·군부대·국공립학교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해 만점의 10%의 가점을 부여하여 오던 것을 가족을 별도 분리하여 가점을 만점의 5%로 축소 조정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 일부 개정

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처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22건에 대해 원안동의를 하였으며,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의견 1건을 송부하여 차후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권고하였다.

나. 위원회의 참고의견 송부내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19조(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설치)

- ③ 위원장은 관할 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의·치과의사와 상이등급 구분 또는 보철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의 관리과장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전문의·치과의사는 재임하는 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검토결과 : 참고의견(차후 시행세칙 개정에 반영)

- 관련 하위규정인「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시행세칙」(보훈처 훈령 제686호)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호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단순히 “위원회의 간사는 실시기관의 소속공무원 1인” 라고만 정하고 있어 차후 동 시행세칙 개정시 동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장치를 마련토록 참고의견 송부

제6절

건설 · 산업 분야 법령안 평가

1. 건설교통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2. 산업자원부(특허청, 중기청 포함)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은 국토균형발전분야, 주거복지분야, 생활교통분야, 수송물류, 건설선진화분야에 88개의 법률과, 시행령 98개 및 시행규칙 103개 등 총 289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의뢰·접수한 건수는 59건으로 주요 제·개정 내용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06.7.1.)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부담금 산정방식, 부과절차 등에 대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종래 부과중지 되어 있던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05.12.7.)으로 '06. 1.1.부터 다시 부과됨에 따라 부담금액 결정을 위한 지가 산정방식, 부과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
-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건설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 급인, 기계대여업자·자재납품업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생산현장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률」이 제정('06.5.24.)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친화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에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전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이 있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총 19개 법령에 대하여 79건의 개선의견, 총 40개 법령에 대해 원안 동의를 하였으며,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의견 10건을 송부하여 차후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제5조(부과대상 건축행위가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등)

- ③ 법 제6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행위로 본다.
1.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동일대지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2 이상 건축하는 경우
 2. 동일인이 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시행령 제5조제3항2호의 “기반시설설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는 판단기준이 모호한 주관적 요건으로 판단·적용에 따른 부패소지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판단기준이 모호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거나 삭제

〈예시〉 2. 동일인이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조합의 범위 등)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및 주택재건축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은 그 구성원이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토지소유자)과 서로 상이하여 부담주체 불명확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 (시장 재건축·재개발조합)은 포함되지 않아 특혜소지가 있음
 - 시장재건축·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면제사업이 아님
-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시장정비사업의 동의 등에 관한 특례)

②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2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삭제
〈예시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조합
- 제4호 신설
〈예시〉 4.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

제7조(부과제외 등)

- ① 법 제8조제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3. “생 략”
 4.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내 건축물
 - 5.~ 9. “생 략”
 10. 「농어촌 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2. 「오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3.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4호에서 규정한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 가져올 경우
 -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하는 일회성 제도로 별도의 해제절차가 없으므로 포괄적으로 면제대상에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 제10호~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마을정비구역”,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오지개발사업지역”, “개발대상도서” 등은 각 개별법에 따라 지구지정을 하고 있으나

-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번 지구지정이 되면 계속하여 해당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므로 특혜발생 소지가 있음
 - ※ 특히 위 대상지구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화하였을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또한 위 지구내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향후 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로비하는 등 새로운 부패발생이 예상됨
 - ※ 읍면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해당 읍면을 농촌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면 향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사업자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게 됨
-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구외 예도 “농어촌정주기반확충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접경지지원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낙후지역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있으나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4호 “특별재난지역내 건축물”을 현실여건에 맞추어 개선
 - 〈예시〉 4.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내 당해 재난으로 인한 복구 건축물로 개선
- 위 제10호~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면제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
 - 〈예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예시〉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등

제7조(부과제외 등)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 등을 말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 라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4.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지구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20년 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구역·지구 등은 같은 사업구역 안에서도 준공일이 서로 상이하므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에 대한 기산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도 운영상 혼란 초래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구·구역·지역별 준공일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추후 법률개정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를 위한 기산일은 “준공일” 대신 “고시일”을 적용토록 개선

제7조(부과제외 등)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에 당해 시설별 조성비용을 합산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가액은 당해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날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2. 시설별 조성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성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인데 반하여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대한 공제금액의 산정 기준일은
 - 토지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부채납 일을 지연시키는 방법 등으로 공제금액을 부풀릴 우려가 있으며
 - 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기준일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설치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간일 경우 자의적 판단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시점을 늦추어 공제금액을 부풀리는 등
특혜발생 소지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제금액(토지의 가격 및 시설별 조성비용)의 산정 기준일을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기준시점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제8조(부담금 산정기준)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②~⑤ “생략”
-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의 각 항목들은 모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월1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규정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시행령 별표3에 규정
 - 부담률은 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고시하도록 규정
 -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사용할 경우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금액보다 높은 지역은 특혜를 받게 되나, 평균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 반발 및 입법적 문제점 내포

- 제6항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해석·적용 등 특혜제공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6항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각호로 구체화 하거나 또는 삭제

제11조(부담금의 납입 등)

- ⑤ 물납에 총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납부종료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정상지가상승분”에 대한 정의와 산정방법 등이 불명확
 -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125조 및 「지가변동율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건교부 훈령)」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매월 시·군·구별 “지가변동율”을 공표하고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을 토지 등 물납으로 납부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일 또는 심사결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물납신청을 하여야 하고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종료일 전에 물납여부가 결정되는데도
 - 제5항에서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납부종료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앞뒤 문구가 불일치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정상지가상승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 제5항의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물납에 총당할 토지 가액의 산정은 서면으로 통지한 날의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개별공시지가 발표일과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담금 부과액이 이천만원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로서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및 분할납부사유가 추상적이고 기준이 불명확함
 - “심한 손실”, “현저한 손실”, “중대한 위기”, “장기치료” 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거나, 추후 법률개정시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선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3항에 대한 구체적인 경감기준 마련 또는 해당조항 삭제

제2조(공제금액의 산정)

- ① 영 제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영 제7조제5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당해 조성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 ③ 영 제7조제5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한 설치비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재산정한 후 결정부와 또는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순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는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정부표준품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여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표준품셈만을 가지고 산정금액을 검토하는 것은 특혜 발생소지 내포

※ 2006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실적공사비 대상 품목 : 651개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와 국가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등록 한 원가계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 또다시 별도의 요건을 정하여 상기 기관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비용산정기관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이중적 규제로 특혜발생 소지 내포

※ 건설교통부 훈령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된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의 요건은 공무원가 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고용을 의무화 하는 등 과도한 규제임

-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산정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추는 등으로 특혜발생 예상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별표1】순공사비 산정기준에서 실적공사비 항목 추가
 〈예시〉 “실적공사비 및 정부표준품셈과 단가”
- 개발비용 산정기관 지정요건을 현실여건에 맞추어 완화
 〈예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및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
-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시점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기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
 2. 골재부존량 조사자료의 신뢰성
 3. 부존골재의 품질의 적정성
 4.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
 5. 신청자의 골재채취능력
 6. 골재수급상황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19조에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계율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와 같이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허가시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고발생시 피허가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판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 제23조 제6항 골재채취허가시 검토항목에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 추가
- 〈예시〉 법 제28조에 의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

제29조(골재채취 구역의 복구)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복구비등을 예치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③ “생략”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를 위하여 복구공사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우월적 지위를 가진 허가권자의 과도한 복구금액 예치요구 등 권한남용 소지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방법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

제31조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등)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 3.~ 5. “삭제”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취소처분과 중지처분의 효과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항목별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결정과정에 업체의 로비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 내포
- 법 제31조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중지처분을 지키지 않고 계속하여 골재채취를 할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등 부패통제장치 미흡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각호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허가중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제4조 (대상사업)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개발이익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사실확인 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문제가 대두될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원안동의
- 시행령 <별표1>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이 ‘03년 주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되었음

- 시행령 <별표1>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의 근거법률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제시하면서
 - 대상사업명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부과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시행령 【별표1】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내용을 삭제하거나, 재개발사업의 포함여부를 명확히 규정
- 시행령 【별표1】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은 삭제하고, 근거법령의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으로 수정

※ 입법적 오류사항으로 기타의견으로 통보

제4조의2 (조합의 범위 등)

-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합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성하는 조합”은 그 구성원이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토지소유자)과 서로 상이하여 부담주체 불명확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삭제
〈예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조합

제5조 (부과제외 및 감면)

- ④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사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체육시설 설치사업
 4. 별표 1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제14호의 창고시설 설치사업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창고시설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부담금을 50%감면하도록 한 것은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 삭제 또는 감면 대상사업의 시행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한정토록 개선

〈예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제14호의 창고시설 설치사업

제6조의2 (부과개시시점의 예외)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일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토지취득 후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한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을 경우 인가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면 개발이익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나
 -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인가일로부터 어떤 시점까지로 한정되지 않아 부과개시시점이 이론상 무한정 소급되어 개발이익이 증가되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시행령 제6조의 제1항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 단 이 법 시행이후 토지 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 함 등

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순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정부표준품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여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표준품셈만을 가지고 개발비용을 검토하게 될 경우 시장의 실거래가격(실적공사비)을 적용하는 것보다 개발비용이 부풀려져 개발이익이 적게 산출되는 등 특혜 발생소지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별표1】순공사비 산정기준에서 실적공사비 항목 추가
〈예시〉“실적공사비 및 정부표준품셈과 단가” 단, 적용기준이 두수일 경우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개발비용의 산정)

④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액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2.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 회사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령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와 국가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등록한 원가계산기관인데도 불구하고
 - 상기 기관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비용산정기관”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이중적 규제임
- 또한 건설교통부 훈령인「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된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의 요건은 공사원가 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고용을 의무화 하는 등 준수 부담이 과다하며

- 개발비용산정업무 종사경력 3년이상, 개발비용산정업무 관련 분야 자격 등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경력관리 및 자격기준 등이 없어 운영상 혼란 초래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2호의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① 건설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 ② 건설업자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여 시설물을 시공을 하여야 하는 공사(이하 ‘복합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건설업자가 복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삭제〉
 3.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계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취지는 기존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종류를 하나의 건설업으로 통합하여 업역을 철폐하는 것이고

- 제2조(정의)에서 ‘전문공사’ 및 ‘복합공사’에 대한 용어의 개념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 법 제16조에서는 건설업의 영업범위를 ‘전문공사’와 ‘복합공사’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이는 종전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개정된 법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건설업체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제2항에서는 이를 ‘복합공사’로 따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혼란이 예상됨
- 제2항 및 제3항은 종전의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조항으로 하나의 건설업으로 통합된 개정 법률하에서는 무의미한 조항으로 오히려 법 운영상 혼란 초래
 - ※ 건설업관련 건설업등록 등 사업자관리 업무는 금품·향응 제공률(2.6%)이 다른 업무에 비해 높고, 이의제기성의 용이성(4.98점)도 낮은 수준임
(’05년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측정결과)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6조(건설업의 영업범위)를 통합된 건설업체계에 맞추어 개선
 - 건설업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므로 각 업종별 업무범위만을 규정하고, 시공은 건설공사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제2항 및 제3항 삭제 또는 법 제2조에 복합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정의 추가

제31조의2(하도급계획서의 제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32조의2 “하도급계획서”의 제출대상, 제출시기 및 제출내용,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나
 - 입찰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과거 수많은 부작용으로 폐지된 부대입찰제도와 유사한 내용임
 -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업체로비에 따른 발주자의 임의적인 제도운영이 예상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 제32조의2 “하도급계획서”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작성방법, 제출시기, 제출대상공사 등에 대하여 법령 또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부대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계약내용변경에 따른 보증서 변경을 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증서 부분을 회수하여 보증기관에 제출하고 변경후 이를 다시 발주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 지자체 공무원 등 발주자의 대민접촉기회가 찾아지게 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비협조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등 불이익을 예상한 시공사가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로비하는 등 부조리의 원인을 제공할 소지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 제34조 관련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분 제출에 따른 대민접촉기회 증가 등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 부분제출에 따른 절차 및 대민접촉기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제7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재량행위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 중 “건설공사·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한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운영이 우려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분쟁조정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관련 제척·회피·기피제도가 없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분쟁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등 부패 발생 소지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70조 제2항 제3호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
- 제70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부적절 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 신설 등 부패통제장치 마련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관련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제도 신설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82조 제2항 각호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의 비율에 대하여는 시행령【별표 6】나목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건설업 관리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처벌의 형량을 결정하는 사항을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대상자는 이를 잘 알 수 없게 되는 등 행정절차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가 있음
-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는 “조잡하게”이라는 용어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판단기준이 모호한 표현으로 처벌권자의 자의적인 운영이 예상됨

-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 등을 통한 보완이 가능함에도 곧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건설업체에 과도한 부담 초래
- 제2항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82조에서 열거한 각종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처분 사유와 과징금 처분사유를 유형화·구체화하여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기

〈예시〉 「건설업 관리지침」에 있는 영업정지사유 및 과징금 처분사유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법제화

-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하위규정에 반영

〈예시〉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초래하게 된 때 등

제2조(부과대상 주택)

- ① 법 제2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택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 ②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재건축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택
 2. 공공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재건축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인 “공공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란 초래
 - 제1항 제2호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2항 제2호 “공공기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
〈예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제3조(징수금의 배분기준 및 절차)

- ②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개량자금 활용실적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서비스 수준
 2.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3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개량자금 활용실적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서비스 수준”과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 제4조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 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주거수준의 평가요소인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및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및 주거복지 증진 노력”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기금의 배분기준이 없어 자금배분 과정에서 부패발생 요소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주거수준의 평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배분기준에 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선

제6조(종합 기본계획의 수립)

- ② 국가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개최 후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용산공원 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 두 절차 중 하나의 절차만을 거칠 수 있도록 허용한 선택적 재량사항으로 임의적인 행사 가능성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개선

〈예시〉 ② 국가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기초조사 실시)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지정될 지역일원에 대한 인문·자연환경, 토지이용상황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기초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조사기관 선정방법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조사기관 선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 등에 규정토록 근거 마련

〈예시〉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복합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 두 절차 중 하나의 절차만을 거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임의적인 재량권 행사 가능성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개선

제37조(임원)

- ① 관리센터에는 이사장 1인, 상근이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칙 제2조(용산공원관리센터의 설립준비)

- ⑤ 설립 당시 관리센터의 이사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관리센터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하는 것은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미비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관장의 선임 절차와 상이
- 용산공원 관리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를 건교부장관이 임명함으로써 건교부장관이 임명한 이사장과의 통제장치 미흡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이사장 추천절차 투명화
 - 공모제 도입 및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관리센터이사회’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기준을 명확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참조〉

- 설립 당시 관리센터의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용산공원건립 추진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구성
-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
 -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및 이사회에서 청렴성 검증

제10조(건축물대장 초·등본의 교부 및 열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열람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범칙에 이용될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은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교부·열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공매중 이거나 이를 위한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교부·열람할 수 있는 평면도의 조건 중 범칙에 이용될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은 평면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함
 - 동 규정만으로는 범칙에 이용여부 또는 사생활 침해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여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범죄에 이용될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은”이란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평면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교부·열람토록 함

〈예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열람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교부·열람할 수 있다.

제11조(건축물대장의 생성)

-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신청서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통보받은 때에는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단,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 이외의 건축물(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에 대한 포함여부가 불명확하나
- 제1항 이외의 건축물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량권의 자의적인 행사 및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4항에서 시장이 사용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생성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예시〉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제6조(최저자본금)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하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을 10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경과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자본금을 100억원 이상 납입하였는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등이 없어 임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 법 제37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을 뿐 영업인가를 받은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100억원 이상)에 대한 확인 규정이 없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납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

〈예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시설부담금의 감액)

- ① 영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의 공관, 동표 제2호의 공동주택, 동표 제3호 바목 내지 아목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동표 제4호 마목중 종교집회장, 동표 제5호 가목의 종교집회장, 동표 제8호 가목의 학교, 동표 제10호 가목의 업무시설 및 동표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감면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동호 라목을 제외한다) · 제5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 · 제8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 · 제9호 · 제13호 내지 제15호 · 제17호 · 제18호 · 제20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 : 100분의 5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동호 바목 내지 아목을 제외한다) · 제4호(동호 마목중 종교집회장을 제외한다) · 제6호 · 제7호 · 제10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 내지 제12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100분의 25
- ② 제1항(동항제1호를 제외한다)각 호에 불구하고 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등의 목적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유통단지안의 존치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할 때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하나
 -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등의 목적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하여 임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 또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재량행위를 부여함으로써
 - 존치시설물의 소유자가 감액을 최대한 받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로비하는 등 부패발생이 예상되며
 -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감액의 기준보다 재량행위의 감액범위가 크므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존치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재량행위”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량범위를 축소토록 개선

〈예시〉② 시행자는 영 제30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견 청취한 후 해당 시설물 등의 목적 및 용도 등을 참작하여 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감액의 범위에 각 100분의 ○○를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인증운영위원회 구성)

- ①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담당하며, 위원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업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한다.

제6조(인증운영위원회 운영)

- ② 위원회의 회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친환경건축물 업무와 관련 없는 자라도 “위원장”과 “간사”가 될 소지가 있음
- 외부위원은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업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외부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위촉권자를 명시하지 않아 관련정보의 공개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자격 기준, 외부위원의 자격 및 위촉권자를 구체적으로 규정

제10조(인증기관 지정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은
 -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선택적 재량행위를 부여함으로써 임의적인 행사 가능성이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향후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마련
- 인증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에 따라 판단기준을 구체화

제18조(인증서 교부)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한 후 해당 건축물이 인증 기준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 또는 전제가 되는 주요한 심사근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 제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인증을 득한 신청인이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5. 예비인증 범위에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접근성과 공개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교부한 후 해당 건축물이 인증기준대로 유지 관리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및 인증의 취소는
 -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 또한, 인증받은 건축물이 제대로 유지 · 관리되는지에 대한 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관련정보의 공개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됨

※ '05년 청렴도 측정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조사업무에 대해 국민들이 기준·절차가 비현실적(6.83점)이거나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4.81점)으로 인식

- 제19조에서 규정한 인증의 취소 사유 중 제2호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 제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는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황적 요건으로 판단·적용에 따른 부패소지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여부 조사, 시정조치 및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향후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마련
- 인증받은 건축물이 제대로 유지·관리되는지에 대한 조사기준,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판단기준이 모호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 제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거나 삭제

〈예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5조의3(권한의 위임·위탁)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 법 그 자체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 “업무의 일부”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그 내용을 예측하기가 어려움
-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부패통제장치가 미흡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법에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건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건설교통부장관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예시〉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차량·시설의 표준사양
2.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
3.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차량·시설의 성능시험

- 위탁업무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예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의4(정비지구 지정의 효과)

- ①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지구안에서는 정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된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1. 제7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대지에 대한 조치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6.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행위제한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된 범위안에서 법 제12조 및 지방세법 제112조·제138조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밀억제권역안의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0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해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토지가격의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⑤ “생략”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20조의4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된 범위 안에서 법 제12조 및

「지방세법」 제112조·제138조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밀억제권역안의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 명확한 기준이 없이 포괄적인 선택재량을 규정함으로써 재량기준이 불명확하고 재량범위가 과도

- 법 제20조의4 제3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규제종류, 규제기준, 규제절차 등이 불명확하여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임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관련정보의 공개성과 예측가능성이 결여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 제20조의4 제2항의 과밀부담금, 취득세, 등기세 및 재산세의 부과·징수 적용에 있어 과밀억제권역안의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동법 또는 하위법령 등에서 구체화
- 법 제20조의4 제3항의 “토지가격의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규제종류, 규제기준, 규제절차 등을 동법 또는 하위법령 등에서 구체화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심사,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공무원이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금품 · 향응제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의하면「검사점검」분야의 금품 · 향응제공률(1.4%)이 다른 업무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확인점검의 실시요건으로 “등록기준 심사,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다소 추상적 · 포괄적이어서,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출입 등 부패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조사 · 검사를 하는 경우 불필요한 접촉의 최소화, 무분별한 방문의 차단을 위해 방문일자, 구체적인 방문사유, 출입장소, 방문 공무원 성명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
 - “사전통지를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 시 공문을 증표와 함께 제시하도록 규정

※ 입법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확인점검의 실체적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대신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부패통제 효과
 기대



제27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4.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된 때
 5.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6.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7.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제21조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27조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재량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를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 제2항제3호의 경우는 “제21조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제21조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로 위반행위가 명확함에도 제재형량 결정을 재량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 또한 제2항제1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경우”는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등록취소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로비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이 법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자 및 공여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부패통제장치가 미비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에도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부동산개발업은 이 법에 의한 부동산개발업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그 대상이 다양하나 로비, 뇌물 등 부정한 방법에 대한 제재가 없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 제27조제2항제3호는 위반행위가 명확하므로 제1항에 포함시키거나 위반에 비하여 행정처분이 크다고 판단되면 삭제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부패통제 장치 신설
 - 다만, 관계기관협의·입법예고의 행정절차반복 부담 및 정책추진 지연 우려 등으로 이번에 반영이 어려우면, 향후 개정 시 반영
- ※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대하여는 향후 현행법령과제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개선 예정임

제28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개발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를 등록사업자로 본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영업정지는 처분기간이 1개월에서부터 1년까지로 다양하며 영업정지기간동안 새로운 부동산개발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처분인 반면, 등록취소는 부동산개발업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른 데도
 -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 및 착수한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계속공사 수행여부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및 준수부담의 적정성 문제 제기
- 또한,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개발을 계속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고

- 부동산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개발의 계속 수행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음성적 로비시도 등 부패소지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에 따라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 및 착수한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계속 수행여부의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에 규정
 - 이 법은 제정법으로써 행정처분에 따른 계속공사 수행여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동의
- 영업정지처분 시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 및 착수한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계속 수행을 못할 정도라면 이는 등록취소 처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

제110조(감독)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공항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항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자 및 공항시설관리자에 대하여 법 제110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대하여 명령이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포괄적인 선택재량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고
 - “공항개발사업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고 음성적 로비시도 등 부패소지 내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하위법령 등에 규정

제43조(자동차검사)

- ①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후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43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다만,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후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정기검사 시 촬영한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보관책임이 경우에 따라 무한하게 확대되거나 유명무실하게 축소될 수 있는 등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정기검사 시 촬영한 자동차 전·후면의 영상 보관기간에 대하여 하위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제72조(보고·검사)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조사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통합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공무원이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금품·향응제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의하면「검사점검」분야의
금품·향응제공률(1.4%)이 다른 업무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법 제72조 제2항에서 검사의 실시요건으로 규정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소 추상적·포괄적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임의적 출입 등 부패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 제72조 제2항 검사의 실시요건인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모호한 판단기준을 동법 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조사·검사를 하는 경우 불필요한 접촉의 최소화, 무분별한 방문의 차단을 위해 방문일자, 구체적인 방문목적, 출입장소, 방문 공무원 성명 등을 기재한 문서를 방문 시 증표와 함께 제시하도록 조항 신설
 - 다만, “문서를 지참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후 소속부서의 장에게 서면보고



제77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제44조의2·제45조·제45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 및 택시미터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77조제4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합시정·점검·정비
·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으로 위탁대상 업무범위가 넓고 다양하나
– 위탁업무 수행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 수탁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청탁 및 뇌물공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일부 위탁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부패통제장치가 필요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위탁업무의 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 및 뇌물공여에 관한 처벌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토록 검토·개선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면적의 축소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7조에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지정 절차를 두는 이유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도
 - 영 제5조의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의 범위” 중 제1호는 단순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면적의 축소”만을 규정하고 있어 면적이 대폭 축소되어도 지정절차를 생략되는 등 지정절차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불법로비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변경 시 법 제7조의 지정절차가 생략되는 영 제5조 제1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면적의 축소”란 모호한 기준에 대하여
 - 지정절차를 두는 취지를 살려 지정절차 생략범위를 축소 확정하는 방안 마련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영 제6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반영·처리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이 떨어짐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토록 보완

제33조의2(실태점검)

건설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점검의 실시요건으로 규정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다소 추상적·포괄적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임의적 출입 등 부패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공무원이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금품·향응제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의하면「검사점검」분야의 금품·향응제공률(1.4%)이 다른 업무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점검의 실시요건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모호한 판단기준을 동법 또는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조사·점검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접촉의 최소화, 무분별한 방문의 차단을 위해 방문일자, 구체적인 방문목적, 출입장소, 방문 공무원 성명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
 - “사전통지를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 시 공문을 증표와 함께 제시하도록 규정

2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산업자원부 소관법령(특허청, 중소기업청 포함)은 상업·공업·무역, 공업소유권, 에너지·광업 등 해당분야가 광범위한 편이다. 따라서 소관 법률은 100여 개이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합쳐 350여 개에 이른다.

2006년 4월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산업자원부 제·개정 법령 65건을 평가의뢰·접수하여 이 중「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산업 표준화법」,「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표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 18개의 법령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제21조(수·위탁기업간 거래실태의 조사 등)

-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의 교부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량증 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품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기준 설정 및 준수 여부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수·위탁기업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및 접근성과 공개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반사실 적발시 위탁기업의 거래행위가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될 경우 각 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 추가로 이 법에 의해 개선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시 의무적으로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위반사실 공표는 기업의 명예·신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소명기회 부여 등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수·위탁기업간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청장이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소명기회부여 등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

제34조(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등)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대기업 등이 법 제35조에 규정된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2. 이양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대기업 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하거나 당해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에 이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세제지원의 근거가 없음
 - 실제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근거가 필요
- 금융지원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전혀 없어 임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 지원의 조건이 되는 “생산설비의 일부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대한 판단기준 불명확
 - 생산설비의 극히 일부를 중소기업에 양도 또는 대여하고도 과도한 금융·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 있음

-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시행령 제34조제3호 단서) 규정은
 - 이 법에 의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3년이내에 지원의 근거가 된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당해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실효성 없는 세제지원규정 삭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에 세제지원 근거 및 구체적 지원기준을 명시
 - 단,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은 재정경제부(국세청) 소관법령이므로 향후 정책협의를 통해 근거규정 반영 추진
- 금융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는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고시·공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청렴위에 제출

〈예시〉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사업 지원안내 (중소기업청 공고)

-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규정된 “생산설비의 일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

〈예시〉 생산설비를 양도·대여하는 경우 양도하는 생산설비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함

- 사업의 축소와 3년 이내 동사업의 중단을 조건으로 금융·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이 동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향후 법률 개정시 제재규정을 신설

〈예시〉 지원금 회수, 사업중단 명령, 과태료의 부과 등

제10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유상·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임대의 기준, 매각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유상·무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및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경우 대부·매각할 수 없고, 잡종재산의 경우 대부·매각시 공개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내용임
-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경우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현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사립대학 및 영리법인인 기업체 또한 참여하고 있고, 이 법은 영리법인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 산업기술단지 부지가 용도폐지되면 국·공유재산을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자에게 수의매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법 제10조제3항에서 무상임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무상임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상임대와 무상임대간의 선택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의 소지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무상임대의 기준을 시행령 개정시 구체화하여 유상임대와 무상임대간 선택기준을 명확히 명시

제19조 (자금지원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2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 및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및 접근성 · 공개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금지원등 우대조치의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불명확
 - 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에 대해서만 고시하도록 규정하여 지원기준, 지원대상등 지원의 내용이 불투명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금지원등 우대조치를 할 경우 지원절차 · 지원방법뿐만이 아니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

〈예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⑥ 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산업
2.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공급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4. 창고·수송·하역사업
- 4의2. 컨설팅·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
- 4의3.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 4의4.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시행령 제6조제6항은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입주자격을 규정한 사항임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 산업단지내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정부로부터 자금, 용지, 기반시설, 조세 등에 대하여 많은 지원 및 혜택을 받고 있어 입주자격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하나

- 시행령 제6조제6항제4의4호에서 규정한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은 제외한다)”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지원기관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중 경기장 운영업, 경기 전문 종사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의 업종 입주시 특혜발생 우려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883)

8831 경기장 운영업 : 관람시설이 있는 각종 경기장

8832 경기 전문 종사업 : 자영 체육인의 산업활동

883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리프트를 운영

8839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체력단력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거나
- 입주기업체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중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제한하도록 개선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제도시설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도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해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도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4호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므로 행정처분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9조의4제4호의 실무종합심의회는 심의기관이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명시

〈예시〉 행정기관의 장이 실무종합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의3(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을 말한다.
- ② 법 제2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혁신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및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2항에서 “출연금을 혁신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제3항에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혁신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혁신사업외의 목적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음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출연금을 혁신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법률에 별도 근거가 필요
- 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전부를 회수거나 일부를 회수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출연금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혁신사업에 수반되는 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개선

〈예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전부 회수한다.

제18조(인증심사원의 자격·직무 등)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심사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피심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3. 인증심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및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품·가공기술 또는 서비스가 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정지 및 취소 등 제재를 규정한 사항
- 법 제18조제3항은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심사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량권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으며
 -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재대상자인 인증심사원의 예측가능성이 낮고 재량의 남용가능성이 있음
 - 현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에서는 자격취소·정지시 인증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정지는 국민(인증심사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침해적 처분임을 감안할 때 그 기준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기준 및 절차를 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별표4】와 같이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제18조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자격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 등이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21조에서는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 인증표시 제거·정지 및 판매정지등 다수의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재량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재량의 남용가능성이 있음
 - 현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기술표준원고시) 【별표4】에서 인증받은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판매정지는 국민(인증받은 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침해적 처분임을 감안할 때 그 기준을 적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등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정지등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 등이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판매정지 기타 조치명령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제19조(형식승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위반시	2차위반시	3차위반시	4차위반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때	법 제15조 제1항제3호	시험업무 일부정지 1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3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15조 제1항제4호	시험업무 일부정지 1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3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 제1항제5호	시험업무 일부정지 1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3개월	시험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형식승인기관이 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위유형, 불법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관련 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등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명령 가능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 앞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나열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의적인 판단 개연성을 축소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등)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 허가
3. 탐사권 존속기간 분할 설정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로 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탐사권·채취권 설정허가 등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미흡

※ 서해 2-2 해저광구에 대한 탐사권 허가('01.1.21)와 관련하여 허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허가권자가 당초 탐사기간을 2년으로 허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 발생

- 해저광구 탐사권·채취권 설정 허가 등은 그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유망광구 지정의 경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탐사권·채취권의 취소는 그 설정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유망광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의 채취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망광구에 해저조광권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자금지원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심의 필요
- 해저광물개발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이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탐사권·채취권 설정 허가 자체보다 허가권자 등의 권리침해가 크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요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운영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유망광구의 지정을 추가

〈예시〉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 광물자원개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 허가 및 그 취소
3. 탐사권 존속기간 분할 설정
4. 유망광구의 지정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탐사권 및 채취권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광료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5. 삭제
6.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 평가항목 : 제재수준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지질조사자료나 대륙붕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정부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보고의무 등의 이행확보수단 필요
- 그러나 보고의무 위반이나 현장조사 거부 등에 대하여 탐사권이나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석유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

※ 광업법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16조 제3항 제1호)하고 있을 뿐 이를 광업권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조광권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탐사권·채취권을 취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제1안〉

- 보고의무 위반이나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취소권 규정 삭제
 - ※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취소권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규정 신설 필요
 - ※ 유사법령
 - 광업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물생산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제99조 제1항)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116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9조)

〈제2안〉

- 보고의무위반이나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제재로 일정기간 탐사사업 또는 채취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업의 일시정지제도 도입

제17조(공급규정)

-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을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영업소 및 사무소 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그 공급규정을 일정기간에 한해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주지하기에는 부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급규정을 신고(변경신고 포함)한 경우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고,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 등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설명을 하도록 규정

〈예시〉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통지하고, 사용자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은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확인점검)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열 또는 열과 전기의 공급과 관련한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공무원이 사업장등을 직접 방문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금품 · 향응제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20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의하면 「검사점검」분야의 금품 · 향응제공률(1.4%)이 다른 업무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확인점검의 실시요건으로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소 추상적 · 포괄적 이어서, 담당공무원의 임의적 출입 등 부패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 방문일자, 구체적인 방문사유, 출입장소, 방문공무원 성명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사전통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방문 시 이 공문을 증표와 함께 제시하도록 규정)

- 입법 기술상의 이유 등으로 확인점검의 실체적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대신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부패통제 효과 기대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등의 허가신청 등)

- ① (생략) ← 허가신청시 기재할 내용
-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 2.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허가가 이익형량상 타당할 것
 -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공급능력이 부족할 것
- ③ (생략)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허가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처리결과(허가여부 등)에 대한 통지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하
-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국민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법이 아닌 고시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고시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 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절차를 명시

- 고시로 정하도록 한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을 이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되,
 - 입법 일정상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혹은 “고시한다”로 수정하여 고시를 의무화
- ※ 금번 개정시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개정시에 반영 요

제11조의 2 (융자기준)

- ① 자금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자금융자의 규모 및 융자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동 공고 내용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2항의 융자금의 융자받은 목적외의 목적 사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목적외 사용융자금에 대하여 회수하는 규정 필요
-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으나 발생 가능성은 상존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후감독에 의해 융자금 중 부정하게 융자를 받거나 융자 목적외에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융자금 전액 또는 그 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필요
- 현재까지 목적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한국석유공사)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은 마련될 필요
-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형식이 보다 바람직

※ 참고규정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3조 (용자금의 회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는 용자를 받은 자가 그 용자금을 용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3(대출심의회의 설치·운영)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소관분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출심의회의의 구성, 심의내용, 운영방식, 전문회사에 위탁할 경우 대상기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석유개발과 관련해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용자대상기관으로서 실제로 대출에 관한 심의 및 대출절차를 운영
 - 한국석유공사가 기술적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
 - 한국석유공사는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기준(산자부 고시)에 따라 내부에 석유개발사업자금대출및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이와 동시에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자원 특히 석유개발과 관련한 사업자로서 석유개발사업자금 용자실수요자의 지위에서 에특자금 용자를 받음(2004년 63,664,000달러, 2005년 58,553,000달러)
- 한국석유공사가 용자금실수요자로서 용자를 신청한 경우 공사 내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대출심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공사 스스로 심의하는 것이 되어 대출심의의 공정성에 큰 문제

- 다만, 용자대상기관이 직접 용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석유 공사의 용자 심의 후 산업자원부의 승인이라는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 관련규정 : 석유개발사업자금대출및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①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출(이하 "석유개발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용자고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가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용자금실수요자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이와 같은 문제는 석유 외 다른 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도 동일한 문제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용자대상기관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대출심의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용자금실수요자가 되어 심의를 받는 것은 대출심의 절차상 공정성·신뢰성 유지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가 직접 대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거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직접참여를 제한(제척·기피제도 등)하고 공정하게 외부위원들로만 심의를 하게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
- 이와 같은 보완책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개선의견으로 제시

제17조의3(소규모합병의 특례)

- ①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구조조정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존속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상법」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위해 발행하는 新株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일 경우(소규모합병) 존속회사는 주주승인 대신 이사회승인으로 가능하다고 규정(제527조의3)

- 당 개정안은 ‘소규모합병’의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조항 신설

➔ ‘구조조정 확인’을 받은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해서 ‘소규모합병’의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

- ① 소규모합병 발행신주의 범위확대 : 전체발행주식의 5% 이내 → 10% 이내
- ② 합병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교부금의 비율을 확대 :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2%이내 → 5%이내
- ③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확대 : 20%이상 → 25%이상

- ‘06.6월 현재 부품소재전문기업(부품·소재 매출액이 50%이상인 기업)은 총 1,796개사로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있으며, 요건을 완화한 외국사례도 있음

- 종업원수 50인이하가 1,002개사(56%)이며, 300인이하는 1,405개사(78%)
 -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1,307개사(73%)이며, 200억 미만은 1,513개사(84%)

- 요건을 완화하는 외국의 입법례 (이사회승인으로 합병하는 사례)

- 美, 델라웨어주 회사법 : ‘합병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합병직전 주식지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日, 회사법 : ‘합병대가가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순자산액의 20% 이하인 경우

-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주주총회 요건을 완화하고 ,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우려가 있음

- 주주총회를 통해 당해 기업결합의 기본적 내용과 과정 등을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

- 회사법의 특례에 산업정책의 달성이라는 명분하에 다시 특례를 인정하는 법체계상의 문제점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합병의 특례조항을 인정할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특례조항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거나
-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17조의4(영업양수의 특례)

-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구조조정 확인을 거친 주식회사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가액이 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은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평가항목 : 공개성과 접근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상법」에는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제374조)

➡ '다른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경우, 그 양수가액이순자산액의 10% 이내이면, 이사회에서 양수를 승인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불인정한다는 특례조항 신설

* 벤처특별법에는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 그 가액이 양수회사 순자산액의 10% 이내이면 양수회사의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이 불인정되는 특례규정 (제15조의8)

-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주주총회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우려가 있음

- 소수주주 등의 최소한의 재산적 이익 보호수단인 주식매수 청구권을 불인정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 등을 감안하여 영업양수의 특례조항을 인정할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특례조항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거나
-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5조의2(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이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종합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 대응 방안
 2.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제시스템 구축
 3.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
 4.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5.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체계 확립
 6.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7.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확대 방안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4(지식기반산업 이행 지원)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이행을 위하여 기업 및 각 기관이 ‘지식을 공유·축적·활용하여 구성원의 지식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이하 “지식경영”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업간 지식 공유 사업
 2. 지적자산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3. 직업훈련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지역내 대학 및 기타 기관간 지식 공유를 위한 사업
 5.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6.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지식 역량 강화
 7. 정보축적·공유·관리시스템 구축
 8.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활동
 9. 산업별 지적자원 경쟁력 지수 및 연구개발사업

10. 산업별 지적자원 경쟁력 진단 및 촉진사업
11. 중장기 지적자원 개발촉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사업
12. 산업별 신지식 상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
13. 산업별 지식상품 및 서비스 수출 지원
14. 지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구축 및 교육·보급사업
15. 지식상품 및 서비스개발 국내외 컨퍼런스 개최 사업
16. 기타 지식의 창출·축적·공유·활용·학습 증진을 통한 기업의 지식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예산, 현물, 인력 등의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규모 등이 불명확
 - 업무관련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원종류·규모·절차 등이 좌우될 개연성이 높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정보수집 또는 지원 확보 차원에서 로비 등을 시도할 가능성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동 법령에서 지원분야, 선정과 관련된 단계적 절차, 지원기준, 이익제기 절차, 현금·물자·인력·정책 등 지원종류 등을 명시하여 부패유발 개연성을 배제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
 - 다만, 조항의 보완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새로운 입법절차의 진행으로 입법이 지연되어 당초 목적인대로의 정책추진이 곤란하거나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차후 개선과제로 추진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 제20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 등)

-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지정 후 1년 이상 인증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인증기관 자격유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실시한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증기관의 취소 여부가 업무관련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좌우될 개연성이 있고 인증기관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보완하거나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 부서 등의 재량범위 축소

※ 제22조의2 제5항의 인증 취소 규정도 동 개선의견을 고려하여 개선

제22조의2(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 등)

- ⑤ 인증기관은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시〉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의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지정 후 1년 이상 인증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인증기관 자격유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실시한 경우



제28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절차)

- 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제품 인증의 세부 판단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절차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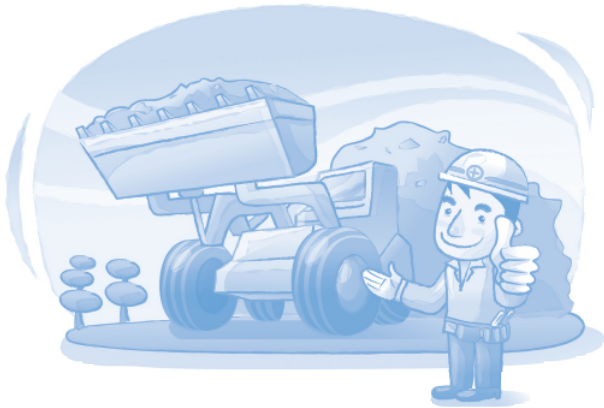
- 신제품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대상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 있음
 - 신제품 인증은 신기술 적용 여부, 타인의 산업재산권 침해 여부 등 고도의 기술적 ·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로 일정 수준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미비

- 신제품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대행기관 지정의 공정성 저해
- 신제품 인증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인증심사와 관련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책임성 확보장치는 미흡
 - 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품의 홍보·수출 및 금융지원, 인증신제품에 대한 품질보장 등 다양한 지원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인증과 관련한 비리 발생가능성 상존
 - 그러나 인증심사 대행기관이 인증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을 인증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제재규정 미비

(3) 검토결과 : 개선 의견

- 신제품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정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재량권 남용 방지
 - ※ KS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6조’는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뢰성 인증과 관련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는 인증기관·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규정
- 신제품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위법행위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대행기관의 책임성 확보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9조'는 KS 인증기관 ·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품 ·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는 신뢰성 인증기관 ·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규정



제15조(실무위원회)

- 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20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타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무역조정지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②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실무위원회는 지원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하며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수행한다.
- ④ 실무위원회는 무역조정 지원시책의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및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서는 위원의 자격기준을 “무역조정지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 판단기준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인 운영 및 이에 대한 정보의 공개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
- 실무위원회는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 위원회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음
- 또한 실무위원회 운영관련 제척·회피·기피제도가 없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무역조정 지원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등 부패발생 소지 내포
- 실무위원회 위원은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무역조정지원시책 추진실적의 평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 무역조정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책임성 확보장치 미흡
- 공무원인 위원 외의 위원이 무역조정 지원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경우 처벌 규정 미비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 〈예시〉 제15조(실무위원회) ①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20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타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〇년 이상 무역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3. 〇년 이상 무역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4. 기업에서 10년 이상 무역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5. 무역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

6. 기타 2호 내지 5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실무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부적절 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 신설
등 부패통제장치 마련

제1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타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무역 및 산업·노동·중소기업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자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속 임직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속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 ⑤ 평가위원회는 무역조정계획의 심의·평가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및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기준이 “무역 및 산업·노동·중소기업정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자”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한 추상임
- 평가위원회는 무역조정기업 지정의 기준이 되는 무역조정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 위원회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평가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운영관련 제척·회피·기피제도 및 책임성 확보장치 미흡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
-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부적절 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 신설 등 부패통제장치 마련
-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운영관련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제도 신설
-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신설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대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특허청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평가항목 : 접근성 ·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 제22조의3제2호에 의하면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법 제22조의2제4항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인력·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법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헌·인력·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 없이 특허청 고시인「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특허청고시 제2005-26호)에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어 일반국민의 접근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음

※ 특허법에서는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을 특허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특허법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해서는 고시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 ①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선행기술의 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선행기술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직원중 「변리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변리사가 없을 것
4. 선행기술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선행기술의 조사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③ (생략)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문헌·장비·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문조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재량권 범위가 넓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의적 재량 행사 가능성

- 법 제22조의3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폭넓은 범위의 재량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재대상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예측가능성이 낮고 담당자의 자의적인 재량행사 가능성이 있음

- 실질적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표전문조사기관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특허청고시 제2005-26호) 제3조 각호의 규정을 검토하더라도

- 어떤 위반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간의 업무정지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요건 하에서 지정취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음

- 운영요령 제11조에서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위임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고시)에 국민(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해적 처분규정을 두고 있으며

- 법 제22조의3제1호에 의해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그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경우 다시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 전문조사기관 지정 취소 당시 그 전문조사기관의 임원이었던 자가 신청기관의 직원일 경우에도 지정의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
- 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 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의 구성이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없이 모두 특허청 내부인사로만 이루어져 있어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전문조사기관의 조사물량 배분의 불투명성
 - 운영요령 제10조에서는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조사물량 배분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등의 절차가 없어 불투명하며 물량배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22조의2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 등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제한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규정
- 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민간위원) 확대
 - 위원 구성시 외부전문가인 민간위원을 2명 이상(30%이상) 포함
- 전문조사기관에 조사물량 배분시 당사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대상기관의 평가기준·평가점수 및 평가자를 공개하도록 함

제58조 (선행기술의 조사등)

- ①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기술의 조사,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일 2006.10.1]
- ②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기관·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국제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특허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6.10.1]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평가항목 : 제재수준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접근성·공개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재량권 범위가 넓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의적 재량 행사 가능성
 - 법 제58조의2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폭넓은 범위의 재량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재대상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예측가능성이 낮고 담당자의 자의적인 재량행사 가능성이 있음
- 실질적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고시 제2005-22호) 제3조 각호의 규정을 검토하더라도
 - 어떤 위반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간의 업무정지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요건 하에서 지정취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음
- 운영요령 제11조에서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위임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고시)에 국민(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해적 처분규정을 두고 있으며
 - 법 제58조의2제1호에 의해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그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경우 다시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 전문조사기관 지정 취소 당시 그 전문조사기관의 임원이었던 자가 신청기관의 직원일 경우에도 지정의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
- 전문조사기관의 조사물량 배분의 불투명성
 - 운영요령 제10조에서는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조사물량 배분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와 공개 등의 절차가 없어 불투명하며 물량배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제한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규정
- 전문조사기관에 조사물량 배분시 당사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대상기관의 평가기준·평가점수 및 평가자를 공개하도록 함

제20조의4(휴면조합·단체)

- ① 주무관청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중앙회·연합회·조합·사업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원인 중소기업 관련단체(이하 “단체”라고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97조에 의한 결산관계 서류의 미제출시
 2. 법 제98조에 의한 보고의무 미이행시
 3. 조합원수 또는 회원수가 법정 발기인수에 미달시
 4. 회장·이사장(단체의 경우에는 대표) 또는 상근이사가 6월이상 공석인 경우
 5. 중앙회·연합회·조합·사업조합 또는 단체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
- ②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연합회·조합·사업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원인 단체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회의 활동상황을 조사하고, 연합회·조합·사업조합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회 회장에게 그 활동상황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 회장은 활동상황 조사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이 조합·사업조합·연합회·또는 단체가 실제 활동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휴면조합·단체임을 결정한 경우 그 회장·이사장 또는 대표에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통지한다.
- ⑤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 및 관보에는 통지일 또는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당해 중앙회·연합회·조합·사업조합이 활동 재개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산명령을 내린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휴면조합·단체로 통지받은 자의 활동재개신청 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 및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20조의4제4항에서는 활동상황을 조사하여 ‘실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휴면조합·단체임을 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단체가 휴면조합·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휴면조합 판정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제20조의4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활동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 제99조의2제2항에 의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없어 조사 대상자인 중앙회·연합회·조합·사업조합 등의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 휴면조합·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업무 담당자가 이를 묵인할 수 있는 등의 부패가능성에 대한 통제장치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20조의4제4항에 휴면조합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
- 활동상황 조사시 사전통지의무 및 조사업무 담당자의 증표제시의무 등을 규정

제7절

재정 · 경제 분야 법령안 평가

재정경제부 법령안 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재정경제부 소관법령은 경제일반분야, 금융분야, 국세분야, 관세분야, 조달분야 등 해당분야가 광범위한 편이다. 따라서 소관 법률은 100여 개이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합쳐 300여 개에 이른다.

2006. 4.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경분야 제·개정법령 40건을 평가의뢰·접수하여 이 중「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국세기본법」,「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시행령」, 6개의 법령에 대하여 33건의 “개선 의견”을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34조(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구성)

- ①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법 제167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본다.
- ②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설립주체인 시·도의 의회 의원 및 부단체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외국인투자유치 또는 개발업무에 식견이 있는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선임과 정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시·도의 의회 의원과 부단체장을 제외하고는 지역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정에서 폭넓은 행정재량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 위원의 선임, 정수, 임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규약에 포괄위임 하는 것은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및 정략적인 흥정에 의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게 될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수, 임면, 보수, 신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제22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신설〉

- ①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2항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자료제출의무 범위가 너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권 남용 등의 부패요인으로 작용
 - 금융감독원의 과도하거나 임의적인 자료요구
 - 금융감독원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민간기업의 자율성 훼손 등
- 또한, 제2항은 본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업무보고서 제출”의 내용상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규정으로 보여 짐

(3) 검토결과 : 개선 의견

- 제2항에 대해 삭제할 것을 개선의견 통보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③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신고 성실도 분석기준 등 조사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빠져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과세관청의 권한(재량) 남용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은 조사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공개될 경우 세무조사 회피요령습득을 통해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외부 청탁·압력에 노출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임

- 그러나 오히려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비공개할 경우, 음성적 청탁·압력 성행 및 그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권한남용 등의 폐해가 더 심각할 수 있으며

- 설사 과세관청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하더라도 선정기준의 비공개로 말미암아 공정성 시비나 표적조사 시비 등에 휘말리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큼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국세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성실납세유도, 관련 공무원의 권한(재량) 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신고 성실도 분석 기준,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선정기준 등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법령(법 또는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법령에 근거규정 명시

제17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 ①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를 말한다.
- ② 법 제4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한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 및 조합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제2호·제3호의 유가증권에 한한다)을 말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회사채
 2. 다음 각 목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수익증권(편입되는 자산의 종류 및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7조 제1호에 의한 증권간접투자자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 나.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27조제5호에 의한 단기금융간접투자자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 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3.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상황 및 조합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유가증권의 종류·신용평가등급·발행기관 등에 따른 개별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금번 개정안 - 신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유가증권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종류를 다 정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지나친 권한 집중에 따른 폐해의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법규사항을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

- 제3항은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금감위에 지나친 재량이 부여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여야 할 것임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률에서 위임한 유가증권의 종류 및 유가증권 매입의 개별한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 ① 법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 ② 법 제79조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신용예탁금에 한한다)
 2. 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3. 법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4. 중앙회안의 다른 사업부문에의 운용
 5. 기타 중앙회의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금번 개정안 - 신설)
- ③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상환준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 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 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회사채
 -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 제1호·제5호의 간접투자기관이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편입되는 자산의 종류 및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라.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금번 개정안- 신설)
 2. 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유가증권
 - 나. 주식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제1호·제5호·제6호의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편입되는 자산의 종류 및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앙회의 신용예탁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금번 개정안 신설)

④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제1호 다목의 유가증권 : 전월말 상환준비금 운용자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2. 제3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유가증권 : 전월말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상황 및 조합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유가증권의 종류·신용평가등급·발행기관 등에 따른 개별 한도를 정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편의 또는 재량권 남용 등의 폐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제5항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상황 및 조합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신용평가등급·발행기관 등에 따른 개별 한도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포괄적 위임규정으로 금감위에 지나친 재량 부여(전술한 조합의 경우와 동일)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률에서 위임한 “그 밖의 자금운용방법”에 대한 규정 중 “5. 기타 중앙회의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은 재량범위가 부적절하므로 삭제토록 개선
- 법률에서 위임한 유가증권의 종류 및 유가증권 매입의 개별한도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토록 개선



제11조 (다른 업무의 겸영)

-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외에 관련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업무 또는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에 속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의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다른 업무의 겸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및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3항에서 “그 밖에 다른 업무의 겸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 제1항에 속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것이지 불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법령수준이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 결정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재량남용의 가능성도 존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예측가능성 및 재량범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제3항 “그 밖에 다른 업무의 겸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의 겸영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수정

제128조 (기초서류의 확인)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한 기초서류에 대하여 신고의 수리 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는 제2항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 ② 보험회사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를 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독립보험계리업자(이하 “독립계리업자”라 한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조항 등을 통해 책임장치 확보
-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고 동시에 보험사 보험요율의 적정성까지 검증하게 될 경우 산출권과 심사권이 실질적으로 동일기관에 집중되어 보험요율 산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곤란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민법상의 사단법인인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 및 책임준비금에 대한 심사권(보험요율 검증작업)을 갖게 되는 경우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므로 당 개정조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제1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

- ①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농민주 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농민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은「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2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다.
-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법률에서는 주세법에 관한 특례로 농민주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주세법을 그대로 다시 준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 요건만 추가되어 민원인의 준수부담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행위에 대한 재량규정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역특화 농민주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허가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 농민주 제조를 희망하는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및 추천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조례로서 추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의무화

〈예 시〉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산의 가격결정)

- ⑩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의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재산의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국유재산 매각·교환을 신청한 자가 측량·감정평가 실시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측량비·감정평가비용 전부를 그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과도할 수 있음
- 모법인 국유재산법에 위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철회 의견 제시

제46조 (교환)

-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다만,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청사, 관사 이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라는 기준이 본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중복되어 모호

(3) 검토결과 : 개선 의견

- 안 제46조제1항에 대해 아래 예시와 같이 개선 의견 제시

(제1안)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로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완

(제2안) 시행령은 변경하지 않고 시행규칙 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현행 본문 상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좀 더 명확하게 적시

제11조의2(융자기준)

- ① 자금용자에 따른 이자율은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융자받은 자금은 융자받은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자금용자의 규모 및 융자기준 등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하며, 동 공고 내용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2항의 융자금의 융자받은 목적외의 목적 사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목적외 사용융자금에 대하여 회수하는 규정 필요
-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으나 발생 가능성은 상존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사후감독에 의해 융자금 중 부정하게 융자를 받거나 융자 목적외에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융자금 전액 또는 그 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필요
- 현재까지 목적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한국석유공사)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은 마련될 필요
-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형식이 보다 바람직

제11조의3(대출심의회의 설치·운영)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소관분야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출심의회의 구성, 심의내용, 운영방식, 전문회사에 위탁할 경우 대상기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한국석유공사가 용자금실수요자로서 용자를 신청한 경우 공사 내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대출심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공사 스스로 심의하는 것이 되어 대출심의의 공정성에 큰 문제
- 다만, 용자대상기관이 직접 용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석유공사의 용자 심의 후 산업자원부의 승인이라는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는 석유 외 다른 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도 동일한 문제가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가 직접 대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거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직접참여를 제한(제척·기피제도 등)하고 공정하게 외부위원들로만 심의를 하게 하는 등 보완책 필요
- 이와 같은 보완책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반영

제8절

정보 · 과학 분야 법령안 평가

1. 정보통신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2. 과학기술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은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우편법」, 「전파법」 등 총 93개 법령(법 : 25개, 시행령 : 27개, 시행규칙 : 41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법령은 24개(법 : 3개, 시행령 : 10개, 시행규칙 : 11개)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사업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반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조항 신설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 및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벤치마크 테스트 및 그 결과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

-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업무내용, 공동저작자의 지분 표시,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의 표시, 시정권고 조치의 절차, 공동저작자의 지분율 등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국방의무 수행을 위하여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군 입대자의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병역법 제18조 현역병으로서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 수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전파법 시행규칙」개정
- 별정우체국 직원(국장 포함)이 직무에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직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지방의회 의원 등 의정활동에 따른 신분보장을 위하여 임기 중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 등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으로써 2006년도에 제·개정된 24개 법령(안) 중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령에서 6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개정 법령에 반영 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

제5조의2(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수행기관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청접수기간과 신청요령 등을 정하여 1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2) 문제점

- 안전진단수행기관 인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 종전 정보보호컨설팅업체의 경우는 업체지정의 유효기간(3년) 만료일 4월전까지로 공고시기를 구체화하였음
- 공고기간 내에 인정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므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인정신청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되어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재량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정례화 또는 수시신청방식으로 변경
- 업체가 충분한 신청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정공고기간 “10일”을 “20일”로 변경 또는 삭제(수시신청방식 채택시)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은「과학기술기본법」,「우주개발진흥법」,「원자력법」,「기상법」등 총 101개 법령(법 : 36개, 시행령 : 41개, 시행규칙 : 24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법령은 11개(시행령 : 8개, 시행규칙 : 3개)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 받아 과학기술진흥,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등 과학기술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개정
- 광주과학기술원에 출연된 출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 사용용도 제한, 출연금 계정 별도설정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개정
- 연구관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연구윤리 등의 검증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 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 및 개발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설립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를 보완하여 특구내 기술벤처기업 육성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등

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으로써 2006년도에 제·개정된 11개 법령(안)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4개 법령에서 7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개정 법령에 반영 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통보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제31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운영)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 민간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민간위원 위촉 등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의 공개성 및 예측가능성 결여
-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금관리·운용 심의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가 위촉될 수 있음

-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관련 제척·회피·기피제도가 없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기금관리·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등 부패발생 소지 내포
- 공무원인 위원 외의 위원이 기금관리·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경우 처벌 규정 미비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및 공개성 확보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부적절 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 신설 등 부패통제장치 마련
-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관련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제도 신설로 투명성 확보
-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신설

제9조(협약의 해약)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적정한 연구관리의 시정 및 개선요구,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조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2) 문제점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의 귀책사유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귀책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 발생 가능성 높음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구개발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미비
-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연구관리의 시정 및 개선요구, 간접경비의 계상기준의 조정, 제재조치 등의 처분 여부가 전적으로 업무관련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의 귀책사유 내용을 명시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연구개발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후속조치인 정부출연금 회수, 부적정한 연구관리의 시정 및 개선요구, 간접경비 조정, 제재조치에 대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특히,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동일한 처분을 적용하도록 세부기준 마련

※ 다만, 각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 마련이 곤란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명시

제4조(연구소기업 설립승인 절차 등)

- ③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을 받은 기관은 연구소기업을 실제 설립하거나 승인요건과 관련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문제점

- 연구소기업 실제 설립 등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지기한이 없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퇴색
-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연구소기업은 세제지원(법 제14조) 등에서 일반 입주기업과 차이가 있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연구소기업에 대한 승인취소, 제재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나
 - 연구소기업의 승인요건 미달시 승인취소, 주요 변경사항과 주요 변경사항의 사전 승인, 동 법령 위반시의 제재 등에 대하여 미 규정(법, 시행령 포함)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연구소기업 설립 등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명시
- 연구소기업의 승인요건 미달시 승인취소, 주요 변경사항과 주요 변경사항의 사전 승인, 동 법령 위반시의 제재 등에 대한 규정을 금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
 - 단, 법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법의 위임이 있어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향후 법 개정시 반영

제9절

농림 · 해양 분야 법령안 평가

1. 농림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2. 해양수산부 제 · 개정 법령안 평가



가. 제 · 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농림부소관 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농촌진흥법」 등 60개의 법률과 하위시행령 51개 및 시행규칙 55개 등 총 166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006년도에 농림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 ·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의뢰 · 접수한 건수는 17건으로 주요 제 · 개정 내용은

- 종자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종자업 등록, 생산 · 판매기준 신고기준의 합리적 조정, 영세한 농어민 등의 종자업 등록요건 완화 등 각종규제완화, 종자업자간의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종자산업법」의 일부 개정
-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 운영,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 영업자,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상 · 절차 등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유가증권의 투자손실,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부실이 심화된 산림조합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산림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 사료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률·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고 사료공장 HACCP 지정을 위한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사료관리법」개정
-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등에 관한 규칙」제정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산지 전용시 납부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 등 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 8개의 법령에 대해 원안동의를 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9개의 법령 20건에 대하여는 개선의견을 부처로 통보하여 차후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권고 하였다.

나. 위원회의 개선의견 송부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3. (생략)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매수판매 허용품목 선정에 관한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범위가 넓고 재량권 행사의 형식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관계자 일부의 의사에 좌우될 경우 공정한 품목 선정 곤란
 -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매수판매 품목 선정에 관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 매수판매 허용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방식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설자가 임의로 품목을 선정할 가능성 배제 곤란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품목” 중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규제개혁기획단, 농림부는 당초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성이 높은 “양곡류”를 예정

- 시행규칙에서 품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시장별 특성의 반영이 어렵고 유동적인 농수산물의 유통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곤란
 - 따라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개설자에게 품목 선정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라는 기준은 유지
 -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의적인 품목 선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방식·절차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다른 규정에 의한 품목선정과 같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 업무규정은 통상 조례로 정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설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업무규정으로 품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설자의 임의적 선정 방지를 위해 예시와 같이 개선권고
- 〈 예 시 〉 제26조 제1항제4호를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개선

제137조(종자업의 등록)

- ①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규모 이하인 자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서 정한 지역발전특구의 경우에는 시설규모나 종자관리사 보유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영세 농업인 등의 종자관리사 보유의무 완화는 영세 농업인 등의 등록을 유도, 불법종자의 유통을 차단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 종자관리사 보유의무를 완화하는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재량권 행사의 범위가 적정
- 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의 종자업 등록요건의 완화는 특화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역발전특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종자산업과 무관한 지역발전특구(예시 : 외국어교육특구, 건강 특구)의 경우에도 종자업 등록요건의 완화가 가능하게 되어 이를 남용하거나 특구지정의 목적과 무관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시설규모나 종자관리사 보유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선

〈 예 시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규모 이하인 자나,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지정된 종자산업 관련 지역발전 특구의 경우에는 시설규모나 종자관리사 보유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시정요구)

-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수목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해태하는 경우
 2.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시정요구 사유로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
 - 시정요구라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처분대상자의 예측가능성도 결여

(3) 검토결과 : 개선 의견

- 불명확한 개정안 제17조제1항제2호의 시정요구사유를 구체화하여 수목원 운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예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의3(검사보조원의 교육)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검사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교육실시기관은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교육실시기관 지정대상인 “위생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대상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 있음
- 교육실시기관 지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농림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만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지정의 공정성 저해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시설조건·강사자격·교육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정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재량권 남용 방지

제4조(적기시정조치)

- ① 산림청장은 부실조합 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1.호 ~ 8.호 (생략)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동 제정안에 따르면 “권고·요구 또는 명령”과 “그 이행계획의 제출 명령”이 선택적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림청장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이행계획의 제출명령”은 산림청장의 “권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에도 선택적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 ※ 적기시정조치는 감독당국의 감독적 용인(부실은행에 대한 개입지연)이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감독당국의 재량권 행사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 권고·요구 또는 명령 후 그 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토록하고 감독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운영상황과 부합하지 않음
 - ※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은 적기시정조치 통지를 받은 조합에 대하여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기간을 정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산림청장에게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진 반면 그 시행에 관련한 견제장치가 미흡

– 동 제정안 제18조는 ‘부실조합 등의 결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1항 제3호)’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산림청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고시·훈령) 마련시 적기시정조치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나 규정의 개정이 용이하여 준수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은 관리기관의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요구 및 농림부장관의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제1안)

- 적기시정조치의 강행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개선하고, 적기시정조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예시와 같이 동 제정안에 명시

〈 예 시 〉

– 제4조(적기시정조치) ①산림청장은 부실조합 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①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3. 부실조합 등의 결정·적기시정조치 및 그 유예·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안)

-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가 적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부실조합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경우 부실심화 및 기금의 과다 소요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 부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배제할 필요성 있음

〈 예 시 〉 제4조(적기시정조치)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부실조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 9. 생략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부실조합 등과 이해관계 있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 위원이 예금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조합장이 위원으로 활동 중 당해 조합장이 소속된 조합이 부실지정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이 부실조합 등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 의사결정이 왜곡
-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부실조합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 구조개선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책임성 확보장치 미흡
 - 공무원인 위원 외의 위원이 부실조합 등 결정·자금지원 등 부실조합 정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에 연루된 경우 처벌 규정 미비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실조합 등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

※ 농협의 경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운영규정”에 위원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규정에 의해 규율하는 경우 강제력에 한계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

〈 예 시 〉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 있는 사항
-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 아닌 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신설

– 기금관리위원회는 산림청장의 부실조합등의 결정, 적기시정조치 및 유예 등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 업무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조합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는 사적 기금의 성격을 가지면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부실조합 등에 대한 자금지원 용도로 사용되는 공적기금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그 운용에 관한 업무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 산림청은 부실조합(3개조합) 및 부실우려조합(22조합)에 대하여 구조개선 자금으로 222억원(경영개선자금 92억원, 구조조정자금 130억원) 지원 예정

– 기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음

〈 예 시 〉 제43조(공무원 의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사료검정기관 지정)

③ 농림부장관은 사료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기타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재량행위로 규정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취소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음
 -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지정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정요구로 사후에 흠결을 치유하거나 업무정지를 하는 것은 부적절
- 업무정지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자의에 따라 업무정지의 기한을 정할 수 있어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이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정지의 상한을 규정

제11조(국외 반출 제한 등)

- ①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유전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안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농업유전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유전자원은 인위적으로 관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으므로 동 조항에 의해 인위적으로 보존되지 않은 유전자원까지 승인대상에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석 가능

- 반출승인대상이 되는 농업유전자원이 모든 농업유전자원(미보존 포함)인지, 농업유전자원 중 보존 결정된 농업유전자원인지, 동 법안 제6조에 의하여 목록에 등재된 유전자원인지가 불분명
-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내용 또는 동 법안 제6조에 의하여 목록에 등재된 농업유전자원의 공시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불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 있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동 조항에서의 농업유전자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동 법안 제21조(별칙)를 적용함에 있어서 논란이 없도록 하고
 - 농업유전자원의 의미가 모든 농업유전자원이 아니라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인 농업유전자원의 목록을 공시하는 규정 마련



제15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 등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함에 있어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농업재해 등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나
 - 처분 발동요건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서 예방적 조치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음
 - 조치 내용을 막연히 「적절한 조치」로 규정하여 농업유전자원의 파기, 국외반출 금지, 분양금지 등 모든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있고, 예측이 불가능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대응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전 예방조치의 발동요건을 유형화·구체화하기에는 입법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다만, 농업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사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조치의 종류(국외반출 금지, 분양금지 등) 및 절차 등을 동 법안 또는 하위 법령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

제23조(과태료)

-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분양한 일반인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미흡
- ※ 공무원이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 가능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농업유전자원을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분양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분양한 자가 동 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고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
 - － 농업유전자원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중과실이 있는 농업유전자원 분양자
 - － 동 법안에서 규정한 분양절차 등을 위반한 농업유전자원 분양자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토록 개선

제24조(명예산림보호지도원)

-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에 관하여 홍보·지도 등의 활동을 한다.
- ③ 위촉권자는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위촉된 자가 산림안에서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제1항의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위촉요건으로 “위촉권자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소 추상적·포괄적이고, 자격기준 및 임기가 모호하여 무분별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음
- 제3항의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위촉 취소사유로 “산림안에서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는 다소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 다만,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신청방법, 위촉대상자, 임무 및 혜택 등에 대하여는 산림청 훈령인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산림청 내부(남부지방산림청)에서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위촉자격 심사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 지도원 신청자가 산림보호 목적보다 혜택(산나물·약초·송이 등 부산물 채취 및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수목원등의 무료입장)만을 추구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 규제방안 등이 미흡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무분별한 위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기준, 임기 및 취소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산림청 훈령인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 제13조(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위촉) 및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운영개선방안」에서 규정한 위촉기준을 본 규칙에 반영

가. 제·개정 법령안 등에 대한 평가 개요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은「공유수면매립법」,「항만법」,「수산업법」,「선박법」등 62개의 법률과, 하위 시행령 64개 및 시행규칙 97개 등 총 223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006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의뢰·접수한 건수는 33건으로 주요 제·개정 내용은

- 해양정책 분야 : 독도지속가능위원회의 참여범위와 기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선박안전기준 및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개정
- 해운항만 분야 : 남북해운교류의 협력·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해상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등을 담은 「한국해운조합법」 개정,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명예퇴직노조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금 지급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제정
- 수산어업 분야 :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사육수면 육상양식어업의 임의신고제를 의무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내수면어업법」개정,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사업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전략과제 권고에 따른「수산업법」개정

- 해상안전 분야 : 해상안전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총톤수에 관계없이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선박안전법 시행규칙」개정, 기존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선박 구난제도를「수난구호법」으로 이관하면서 기존의 구난자격제도를 폐지하고 선박 구난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수난구호법」개정이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별한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17개 법령에 대해 원안동의를 하였으며, 부패유발요인 있다고 판단되는 4개 법령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차후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공유수면 매립·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령평가 체제로 전환하여, 법·시행령·시행규칙 단위를 전부 평가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32건의 개선안을 통보하였다.

제13조(행정처분)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및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항만재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항만재개발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과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및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제재수준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에도 항목별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종류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업시행자의 로비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 내포
- 제3호의 ‘사정의 변경’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요건판단에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그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 존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각호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거나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의 변경’ 이라는 처분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예시 〉

- 제13조(행정처분) 제1항 (후단에 단서추가)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또는 항만재개발계획심의회에서 개발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항만재개발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13조(행정처분) 제2항(신설) 제1항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처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규모의 건축물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림·육림·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부패통제장치

(2)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 및 횟수를 규정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규정과 원상회복 판단기준이 없어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명령 후 현지 확인을 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등 부실한 원상회복이 되거나 부패개연성이 있음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무허가로 개발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만 그 행위의 중지 및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반건축물, 토지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가 없는 법의 터전이 있어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취지가 퇴색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불법으로 개발된 건축물 및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규정 마련

〈 예시 〉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및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예시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 회복을 명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2회에 한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수단 마련
 - 원상회복명령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하고,
 - 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금액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최초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제3장 현행법령 평가현황

- 제1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평가
- 제2절 공유수면 매립 · 관리 관련 법령 평가
- 제3절 도로 점용 · 이용 허가 관련 법령 평가

제1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평가

1 개 요

게임은 오락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법 사행성게임이 전국적으로 유통·이용·제공됨에 따라 도박중독 피해와 등급심사, 지도단속, 상품권 지정 등 관련 사례가 총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사례의 수집·분석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 의한 경품의 지급 폐지, 각종 협회·단체 등에 대한 업무 위탁·지정의 구체성·투명성 제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문화관광부에 권고, 2007.6.30까지(단 법령개정사항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2007.12.31까지) 개선토록 하였다.(2006. 10.19)

가. 과제선정 배경

- 성인 PC방 및 사행성 성인오락실의 불법 영업행위 성행
 - 불법 카지노바, PC방 등을 포함한 성인오락실은 전국적으로 약 2만개이며, 거래되는 돈의 규모는 연간 약 30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성인게임물 부당 심의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합법적 근거 제공

- 지도·단속 공무원의 업체 유착 비리
 - 경찰의 사전 단속정보 유출, 눈감아 주기 등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인·지정 특혜의혹
 - 인증업체 선정 및 무더기 취소, 부당업체 재지정 등

나. 게임산업 현황

- 「2006년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05년도 현재 국내 게임 시장 전체 규모는 8조 6,798억 원
 - 그 중 5개 플랫폼(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 PC게임, 아케이드게임)에 의한 매출 규모는 2조 8,551억 원(32.9%)
 - ‘PC 방’과 ‘아케이드게임장’ 및 ‘비디오게임장’에 의한 전체 소비시장규모는 5조 8,247억 원(67.1%)을 구성하고 있음
- 국내 게임시장의 분야별 비중은 연도별로 살펴보면, 점차 비중이 감소하던 ‘아케이드게임’과 ‘아케이드게임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PC방의 비중이 2004년 점유율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05년 국내 게임시장 전체규모

구 분	매출규모(억원)	점유비율(%)
온라인게임	14,397	16.6%
모바일게임	1,939	2.2%
비디오게임	2,183	2.5%
PC게임	377	0.4%
아케이드게임1)	9,655	11.1%
PC방	19,923	23.0%
아케이드게임장2)	37,966	43.7%
비디오게임장	358	0.4%
합계	86,798	100.0%

1) 스크린경마게임 생산매출 제외, 청소년게임, 성인게임 생산 매출 포함

2) 스크린경마장 매출 제외, 청소년게임장, 성인게임장 매출 포함



국내 게임시장 현황표

(단위 : 억원)

구 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 게임	PC 게임	아케이드 게임	PC방	아케이드 게임장	비디오 게임방	합계
2004년	규모	10,186	1,617	1,866	534	2,247	16,772	9,351	583	43,156
2005년	규모	14,397	1,939	2,183	377	9,655	19,923	37,966	358	86,798
	성장률	41.3%	19.9%	17.0%	-29.4%	329.7%	18.8%	306.0%	-38.6%	101.1%

가. 게임 관련 규정 제·개정시 각종 로비

- 경품 지급, 사행성 기준, 경품용 상품권제도 도입 등 관련 각종 로비

나. 부적절한 등급심의 위원회 구성

- 게임관련 사업자를 위원으로 위촉시 통제장치 부재, 게임업체와 동업 등 유착, 심의통과 및 기간단축 등 편의제공 및 금품수수
-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예심위원 부패 등
- 심사위원장의 전권행사 및 관련 소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남용
 - 심사위원장의 예심위원 위촉 및 몇몇 위원에 주도적으로 허가 결정

다. 등급심의 위원회 부실 운영

- 회의록·채점표 조작 및 심사 서류 바뀌치기
- 게임물에 대한 전문적 심의능력이 없는 위원의 형식적 심사

라. 모호한 심의기준

- 모법에 사행행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심의기준은 수시로 달라지고 사후관리 기준도 모호

※ 시행령의 별표3의 사행성 기준 및 위원회 등급심의규정에서 정의

- 시행령 및 위원회 등급심의 규정의 사행성 기준 모호

‘필살’, ‘아마토’, ‘정글걸’ 등 5종의 게임물은 부산의 한 제작업체가 동일한 게임물을 OEM으로 3개 업체에 각각 만들어 준 것이며 업체에 따라 앞 글자만 바꾸어서 원제작업자가 직접 영등위에 심의 신청한 것이었음. 그러나, 영등위는 이동일한 게임물에 대해 각각 다른 심의기준으로 수차례의 보완결정을 거치는 바람에 최종 등급분류 결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차이가 나게 되었음. 이름만 약간 다른 동일한 내용의 게임물에 대해 다른 심의 보완결정을 하고 심의기간 또한 각각 다르게 난다는 것은 일정하고 구체적인 심의기준 없이 그때그때 마다 다르게 심의를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음(나경원 국회의원)

- 불법 개·변조 및 승률조작 게임기에 대해서 조차도 심의기준 위배여부 판단 곤란

마. 심의과정상 급행료 지급, 접촉을 통한 금품, 향응접대

바. 게임기 불법 개·변조 및 프로그램 승률 조작

- 사행성 성인게임기 제조사는 심의용/판매용 별도의 오락기 제작 또는 성인오락기의 불법 개·변조를 통해 최대 경품한도액의 200배를 초과하도록 사행성 조장

사. 제조자·게임제공업, 불법환전 단속 관련 뇌물수수 등

- 신고·등록 및 지도·단속과 관련한 뇌물 수수

아. 불법 제조자, 불법 환전상 등 처벌 미흡

- 1일 약 1천만원의 막대한 수입 및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인 약 300백만원 ~ 500백만원의 행정처분

자. 상품권 발행 및 환전등 관련 부패

- 불법 딱지 상품권 발행 · 유통
 - 인증 · 지정제의 도입 이후에도 불법사행성 게임장에서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고, 현금 교환의 수단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급보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인증제, 지정제와 관련한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시 각종 불법로비
 - 2005년 9월기준 9개사의 총 누적 발행매수는 한달 반 동안 3억4000만장에 달했으며 매출규모는 1조7000억원이며 상품권장당 순이익 40원으로 볼때 9개 발행사 순이익은 136억원이다. 한달 반동안 업체당 추정 순이익은 15억원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소문나며 인증제시 무더기 탈락업체가 지정제시 모두 재선정되는 등 심의부실 의혹
- 불법환전 행위
- 상품권 위조 및 재사용을 통한 탈세
 - 환전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소득세도 탈세

문광부가 지정하는 경품용 상품권은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상품권 발행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총판, 오락실, 환전소 오락실로 돌고 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 일련번호 순으로 배출돼야 할 상품권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다.(박형준 국회의원)



가. 평가결과

총 합 평 가 의 건

1) 평가결과 : 개선의견(15건)

- 사행성 등급결정, 사행성 기준 및 방법 폐지 등 총15건의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 권고

2) 부패유발요인

- 게임법상 게임물에 사특법등 규제 및 처벌대상인 '사행성 유키기구 등' 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사전·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부패 확산
- 경품의 종류와 가액등 문화관광부 고시로 정하는 등 재량 과다

3)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중점 검토항목	평가결과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	-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	-
	1-3. 특혜발생 가능성	1개항목	개선의견 1건 (법률1)
2. 재량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	-
	2-2. 재량범위의 적정성	4개항목	개선의견 4건 (법률4)
	2-3.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3개항목	개선의견 3건 (법률2, 기타1)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	-
	3-2. 예측가능성	-	-
	3-3. 부패통제장치	7개항목	개선의견 7건 (법률1, 기타6)

※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은 문화관광부 제·개정 법령안 평가에서 별도 집계

나. 조치기한

개 선 사 항	조치기한
【 법 률 안 】	
1. 사행성 결정 및 사행성 기준·방법 폐지	‘07. 6월
2. 경품 지급관련 규정 폐지	"
3. 협동연구 선정기준 및 방법, 결과를 권한 명확화	"
4. 표준화 지정기관 인력, 시설기준 결과를 권한 명확화	"
5. E 스포츠 관련 협회등 단체의 성격, 규모 등 명확화	"
6. 등급위원회 구성·운영의 주요내용을 규정하여 독립성, 객관성 확보	"
7. 권한 위임의 구체성 확보	"
8.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07. 12월
기 타	
1. 사후관리(지도·단속) 체계화	‘07. 12월
2. ‘게등위’ 내부인사 검증 및 취업제한	"
3. ‘게등위’ 직원 외부접촉 차단 및 보호장치 마련	"
4. 업체 자율심사제도 도입	"
5. 행정처분의 적시성 확보	‘07. 6월
6. 게임물등급위원회 규정, 심사기준, 각종 세부규정 개정	"
7. 청렴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기 이행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1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6. "게임제공업"이라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12세이용가(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③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경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초과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부패통제장치

(2) 현 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1조에서 '게임법의 제정 목적'이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국민경제의 발전, 문화적 삶의 질 향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 게임법 제2조 제1호 '게임물의 정의'에서「형법」및「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특법)」상의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인 '투전기' 및 '사행성 유기기구 등'(이하 '투전기 등')을 게임물'에서 제외시키지 않음으로써,

– 결국,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사행성게임물의 기준 및 방법을 충족하는 '투전기 등'은 게임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 및 이용제공시 사특법 등의 처벌 및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바다이야기등' 사행성게임이 전국에서 성행

※ 등급분류 :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성인용) 게임으로 등급결정

– 사특법상 '사행기구 제조업'은 경찰청장 '사전허가' 및 '관리'의 대상으로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게임법상 '게임제조업'은 지방자치단체 단순 '신고'사항으로서 사행성게임기의 기하급수적 증가 초래



국내 게임시장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 게임	PC 게임	아케이드 게임	PC 방	아케이드 게임장	비디오 게임장	합계
2005년	규모	14,397	1,939	2,183	377	9,655	19,923	37,966	358	86,798
	성장률	41.3%	19.9%	17.0%	-29.4%	329.7%	18.8%	306.0%	-38.6%	101.1%

(3) 문 제 점

● 법 일반적 측면

- 형법 및 사특법에서 '도박' 및 '사행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률'로 규정하였으므로 처벌 조각사유 또한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 게임법 제21조 제4항에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을 위한 '사행성 기준과 방법'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량이 과다'하고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
 - 게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은 객관적 산출근거 및 타당성 검토 없는 정량적 기준(1회게임 시간, 1시간 투입금액, 1시간 경품한도액) 및 게임의 방법(자동수행기능 등)으로만 규정한 것은 '합리성' 결여

● 부패실태적 측면

- 경마, 경륜·경정, 복권, 카지노 등 정형화된 도박행위는 특별법에 의하여 관공·레저의 진흥 및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위해 수익금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공적인 운영으로 도박중독 등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나

- 베팅과 배당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류는 이와는 상반되는 각종 탈세, 조직폭력배 자금증식, 도박중독, 개인파산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 상품권 인증·지정 등과 관련한 정·관계 불법로비, 경찰 등 단속 공무원의 사전 단속정보 누출, 봐주기 등 업체유착, 영등위 위원의 등급심사관련 뇌물수수 등 총체적 부정부패를 초래하는 등 합법화 및 양성화에는 한계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사행성 등급결정 기준 및 방법'으로 '바다이야기'등 '사실상 투전기 등'이 사후 통제장치 없이 유통·이용에 제공됨에 따라 서민가정의 파탄, 정·관계 및 민간의 총체적 부패발생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며
- '경품이 지급되는 게임물은 형법, 사특법 등의 규제 및 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통제정책에 따라 관리 할 필요가 있으므로
- 제1호에 '다' 목를 신설하여 '게임물'과 '사행성유키기구'의 개념차이를 명확히 하고, 기타 '사행성게임물 등급분류', '사행성 기준'과 관련된 법령의 조항은 모두 개선의견에 부합하도록 수정 또는 삭제할 필요
- 승패, 점수, 순위 등 게임물의 이용결과에 따른 배당 기능이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법 제22조의 '등급분류 거부' 할 필요

〈 예 시 〉

1. 제2조 제1호(신설)

다. 「형법」,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2. 제2조 제6호 '마'목(삭제) 3. 제21조 제3항(삭제)



평가대상 조문 2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구체성·객관성, 부패통제장치

(2) 현황 및 문제점

- 협동·연구개발 대상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선정기준, 선정 방법·절차, 그 결과물에 대한 언급없이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재량이 과다하고, 투명성 부족

(3) 검토결과 : 권고의견

- 지원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선정기준, 선정 심사 방법과 절차,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방법, 그 결과물에 대한 권한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필요
- ※ 협동·연구개발기관은 불임(위임·위탁업무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의)을 참조하여 범위를 지정할 필요



제8조 (표준화 추진)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구체성 · 객관성, 부패통제장치

(2) 현황 및 문제점

- 표준화 지정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선정기준, 선정 방법 · 절차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재량이 과다하고, 투명성 부족

(3) 검토결과 : 권고의견

- 표준화 지정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선정기준, 선정 심사방법과 절차,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방법, 그 결과물에 대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필요

※ 표준화 지정기관은 불임(위임 · 위탁업무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의)을 참조하여 범위를 지정할 필요



- 제15조 (이스포츠클럽의 활성화)**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및 여가활용을 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하는 경기 및 부대활동(이하 "이스포츠클럽(전자스포츠클럽)"라 한다)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클럽(전자스포츠클럽)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클럽(전자스포츠클럽)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및 기록관리
 2. 이스포츠클럽(전자스포츠클럽) 국제협력 및 교류
 3. 이스포츠클럽(전자스포츠클럽)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이스포츠클럽(전자스포츠클럽)산업 활성화 및 이스포츠클럽(전자스포츠클럽) 선수 권익향상
 5. 그 밖에 이스포츠클럽(전자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클럽(전자스포츠클럽)에 관한 사업을 하는 협회 또는 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구체성·객관성, 부패통제장치

(2) 현황 및 문제점

- e-스포츠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성격, 규모, 실적 등 평가에 대한 규정 미비로 특혜발생 가능성,

(3) 검토결과 : 권고의견

- 협회 또는 단체의 성격, 규모, 사업실적 등 자격과 지원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할 필요

※ e-스포츠관련 기관·단체는 불임(위임·위탁업무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의)을 참조하여 범위를 지정할 필요



- 제16조 (게임물등급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등급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③ 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¹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 등급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구체성·객관성, 부패통제장치

(2) 현 황

- 게임물등급위원회(구 영등위 게임물 소위원회)는 게임법의 제정과 더불어 게임산업기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설립

(3) 문제점

- 【평가대상 조문1】의 문제점에서와 같이 등급위원회는 사행성게임물 결정을 통해 일정 기준과 방법을 충족하는 '사행성유기기구등'을 '청소년불가게임'으로 등급 분류하여 사회적 문제점 야기
- 제6항에서 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원회 규정'으로 위임함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
-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 보완을 위해 도입된 관련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위원참여에 따른 위원의 각종 부패로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투명성, 심사의 공정성 의문
- 게임물 심의 통과, 심의기간 단축 등 각종 청탁 및 외부 위협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미흡 및 사전·사후 인사검증 소홀

(4) 검토결과 : 권고의견

- 제2항 3호의 등급위원회의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관한 사항'은 【평가대상 조문1】에 대한 권고의견과 같이 '삭제'할 필요
- 위원회 구성·운영 및 등급분류 심의기준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필요
 - 등급위원회의 게임등급 결정이 국민생활, 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 및 책임감을 고려,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포괄적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할 필요
- 위원의 자격, 등급분류 신청 방법, 출장심의, 심의기간 연장 등

•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 명시

- 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을 법령에 명시

• 청탁, 외압 등으로 부터 위원, 전문위원 등을 보호할 장치 마련

- 위원의 임기, 대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할 필요



평가대상 조문 6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등급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게임물의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④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2) 현황 및 문제점

- 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전체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의 권한과 더불어 사행성 게임물의 결정권을 갖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2항과 관련하여 등급위원회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
- 제3항 및 제5항은【평가대상 조문1】의 문제점 및 검토결과와 동일한 사유로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결정'이 아닌 '등급분류를 거부'할 사항이므로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할 필요

〈 예 시 〉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② 등급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③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 한 경우에는 등급분류거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거부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절차·방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절차,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함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곳을 구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것
5.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 할 것
7.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2) 현 황

- 제28조 제3호에서 경품지급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

(3) 문 제 점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은 형법 및 사특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나,

- 제3호 단서조항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게임을 통한 경품의 지급은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며, 사특법등 형사처벌의 조각사유를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사항도 아니므로 제28조 제3호는 삭제할 필요



평가대상 조문 8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구체성, 객관성

(2) 현 황

- 제1항의 '이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제2항의 '권한', '협회 또는 단체'와 관련하여 권한의 종류가 확정되지 않고 협회 또는 단체의 성격, 규모 등이 규정되지 않음

(3) 문 제 점

-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위임사무의 처리절차·방법 등에 대한 규정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량의 과다 소지
- 협회 및 단체의 개념 모호로 자의적 위임에 따른 특혜발생 가능성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위탁 권한의 종류·범위 및 위탁업무 수행 절차·방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임함이 타당
- 제2항의 "협회 또는 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기관"으로 구체화하는 등 업무위탁과 관련한 특혜 발생 가능성을 줄일 필요

〈 예 시 〉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00조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00조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등록된 협회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관 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평가대상 조문 9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현황 및 문제점

- 아케이드게임장 및 pc방 등 전국에 약 5만개로 검·경 등 관계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

- 사행성게임에 대한 각종 사행성 규제 완화와 느슨한 단속과 처벌로 조직폭력배, 불법자금 등이 성인게임장등에 유입되었으나 이에 대한 규제 및 단속강화로 성인게임물이 지하로 숨어들거나 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게임으로 음성화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신고포상금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요 제보 및 정황증거 제시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고·확인에 대한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1

제4조 (창업 및 제작지원의 범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게임관련 창업자의 임대사용비
2. 게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 및 임대
-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발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게임상품
2. 게임상품으로서 국제규모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게임상품의 개발
4. 그 밖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상품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구체성·객관성

(2) 현 황

-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신설

(3) 문 제 점

- 국고지원시 지원대상, 범위가 명확치 않아 특정업체 지원 등 재량 및 특혜 발생 가능성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2항 제2호의 '국제규모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한 전시회 등의 규모 또는 명칭을 '별표'에 예시할 필요
- 제2항 4호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상품'과 관련한 '부가가치의 측정 방법'과 '판단 기준'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평가대상 조문 2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으로서 게임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밖에 게임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당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구체성 · 객관성

(2) 현황 및 문제점

- 특혜에 해당하는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인 전문강사 등 인력과 시설, 기자재 등에 대한 기준 미비
- 인턴사원 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방법에 대한 규정 부재로 투명성 부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인력 및 시설기준, 출결 등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할 필요
- 인턴사원 채용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 및 비율을 명확히 하고,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법을 정할 필요



평가대상 조문 3

제9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2.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3. 화폐 등 재물의 투입 및 경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이 체화된 물건을 인식하는 장치
4. 게임의 진행 · 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장치
5.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 평가항목 : 재량 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현 황

- 표준화 추진을 통한 게임기의 안정성 추구 및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 신설

(3) 문 제 점

- 표준화 대상이 광범위하여 재량이 발생할 가능성 및 용어의 이해가능성도 낮으므로 구체화 필요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등 표준화는 게임기기의 성능, 안정성, 개 · 변조방지 등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이나 자칫 게임기 전체를 표준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화 필요
- 기타 개변조 방지장치 및 게임기 운영기록장치(black box)에 대한 내용도 표준화에 포함될 필요
- 게임법의【평가대상조문 1】의 검토결과에 따라 제9조 제3호의 '경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이 체화된 물건' 삭제 필요

〈 예 시 〉

제9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아케이드 게임기 및 네트워크 장치의 외관

3. 화폐 등 재물의 투입을 인식하는 장치

※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휴대용 모바일 게임기 등의 외관에 대한 표준화는 불필요 또는 과도하므로 아케이드용으로 한정할 필요



제11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3. 게임 과몰입의 예방·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게임 과몰입 예방·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게임이용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경비 지원
 11. 기타 게임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2항의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구체성·객관성

(2) 현 황

- 게임문화 기반조성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및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문 제 점

- 게임문화 기반조성 위탁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성격, 규모, 수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량 과다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2항의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기관"으로 구체화하는 등 업무위탁과 관련한 특혜 발생 가능성을 줄일 필요

〈 예 시 〉

제11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

11. 기타 게임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등록된 게임물 관련 전문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2항의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임, 위탁하는 경우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제16조(등급분류신청)** ① 도서에 부수된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위임을 받아 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하는 경우에 동조 제2항 각호의 등급이외에도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5세이용가(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2조 제6호 또는 제8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등급분류 신청 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단, 게임물의 기술심의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게임물 운영 S/W의 사행성 기준 준수 적합성
 2. 게임이용요금 투입장치의 위·변조 식별 적합성
 3.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동 적합성
 4. 게임물 운영 S/W의 개·변조 방지 적합성
 5. 게임물의 안전성
- ④ 등급분류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구체성·객관성, 재량범위 적정성

(2) 현 황

- 사행성게임물 등에 대한 부실심의를 계기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컴퓨터 프로그램, 하드웨어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3) 문제점

- 게임물 관련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으나 기술심의로 인한 등급심사 기간의 장기화로 기술심의를 회피 또는 기간단축을 위한 각종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 기술심의 절차방법, 처리기한 등 주요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음
 - 기술심의 대상이 모호하고 그 범위 및 심의사항이 과다하여 담당자 재량의 가능성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3항의 5호의 게임물의 안정성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 기술심의 기준·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처리기한, 이의신청 등을 명시할 필요
-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사행성기준 준수 적합성'은 게임법【평가대상 조문1】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사행성'으로 수정

〈 예 시 〉

제16조 제3항

1. 게임물 운영 s/w의 사행성



제27조(표시 의무) ① 법제33조제1항에 의한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는 별표3에 의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부착하도록 하고,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의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지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게임물의 특성상 제2항의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구체성 · 객관성

(2) 현황 및 문제점

-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는 아케이트 게임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있는 바, 업체 지정과 관련된 특혜발생 가능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의 지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자격과 지정절차를 규정할 필요

※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 지정업무 수행기관은 불임(위임 · 위탁업무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정의)을 참조하여 범위를 지정할 필요



평가대상 조문 7

제30조 (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평가항목 : 구체성 · 객관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2) 현황 및 문제점

- 단속공무원 등 업소 무단방문을 통한 접촉 및 뇌물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전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확정 개념의 나열로 재량의 가능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관계 공무원의 업소 무단방문,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고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 · 이용 또는 증거인멸 등 사유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



평가대상 조문 8

제31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3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경품의 건전한 유통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경품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구체성, 객관성

(2) 현황 및 문제점

- 자치단체장이 협회 및 단체에 업무를 위임시 권한의 종류, 처리절차, 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량의 가능성
- 경품의 유통 및 관리업무는 현재 '게임산업개발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지정과 관련한 정·관계 및 업체의 불법 로비, 청탁, 외압 등으로 심사 및 관리의 부실 발생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치단체장이 협회 및 단체에 업무를 위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권한의 종류, 처리절차·방법 및 협회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할 필요
- 게임법【평가대상 조문1】의 개선의견과 같이 경품의 지급은 폐지

〈 예 시 〉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1

제3조(우수게임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게임 상품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게임 상품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우수게임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구체성 · 객관성

(2) 현황 및 문제점

- 우수게임상품 심사와 관련한 관계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구체성 부족으로 공정성, 객관성 부족 및 특혜발생 가능성

(3) 개선의견

- 관계전문가의 전문분야, 자격, 경력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



평가대상 조문 2

제5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①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범 게임제공 영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소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교육실적

6. 그 밖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 영업소에 대하여 당해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2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교육면제,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 영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2)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기준이 상이하고 기준변경이 용이하므로 재량이 과다하고 모범업소 선정과 관련한 특혜발생 가능성

(3) 개선의견

- 문화관광부 장관은 모범업소 기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평가기준, 지정절차·방법을 마련하여 위임할 필요
- 지정기준에 미달시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함은 준수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도 부족하므로 시정요구 '1개월 내' 시정 불응시 그 지정을 취소할 필요

< 예 시 >

제5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①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범 게임제공 영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모범 게임제공 영업소의 평가기준, 지정절차·방법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조문 3

제7조(등급분류기준) ①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
 - 다.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 나.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 나. 기타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 ② 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5세 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2.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④ 게임물상의 문제해결 또는 보완·개선 등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급분류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수정으로 인해 등급의 변경(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성게임물로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요할 정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해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 ⑥ 제4항 내지 제5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내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구체성, 객관성

(2) 현 황

-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기준으로 종전 영등위 심의기준의 일부를 요약하여 규정함

(3) 문 제 점

- 제4항의 등급변경 및 제5항의 직권등급변경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재량이 과다하고 구체성도 부족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등급의 변경사유'는 '등급변경을 요하는 정도로 변경된 경우'등 순환구조의 모호한 규정으로 재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단기준 제시 또는 사례의 예시·열거를 통한 구체화 필요
- 재등급 분류와 관련한 기준 등의 명확화 필요
 - '직권 재등급분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르게 제공할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재등급 분류기준'을 마련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
- 등급변경, 직권조사의 기준, 절차, 방법등 주요 내용은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
- 제7조 제5항의 단서 조항 중 괄호안의 내용은 게임법【평가대상 조문 1】의 검토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삭제할 필요

4) 기타 개선의견

가. 사후관리(지도·단속) 체계화

- 등급위원회 단속지원반은 소수의 인원 및 민간단체 성격으로 광범위한 조사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등급심사기관의 소속의 단속반이 등급분류의 적정성 등을 공정히 조사하기는 곤란하며,
- 게임물 관련 협회의 법집행에 대한 자율적 통제기능은 바람직하나 사실상 조사 '주체'인 동시에 그 '객체'인 점을 감안하면 견제·균형 차원에서도 불합리
- 단속 공무원 업체 유착 및 과학적 단속 시스템 부재
 - ▶ 정통부의 사례를 참조하여 "공직유관단체"에 단속업무를 위임하여 아케이드 및 온라인 등을 총체적,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 법적 근거명시, 자료제출요구권, 고발권 부여 등 단속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등 명시
 - 온라인, 오프라인 게임에 대한 단속권한을 유관단체(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에 부여
 - ※ 정통부는 스팸메일에 대한 단속권한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제48조의2, 3, 제52조)에 의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부여하여 총괄토록 함
 - ▶ 지도·단속의 체계화
 -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주기적인 합동 단속 방안 마련
 - 단속공무원의 실명제, 책임제 등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단속정보의 사전 유출, 단속공무원의 업소 유착 방지 등 위한 단속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2인 1조, 단속 사전보고, 결과보고 등) 마련하고 준수 여부 점검 필요
 - 계측장비 개발·도입 및 표준화를 통한 과학적·시스템 단속방안 마련 필요

나. 게임물등급위원회 내부인사 검증 및 취업제한

-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인사검증 및 취업실태 등 관리의 철저
 - 위촉전 이력서 서면검토 및 실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의 제한 및 회피제 등 적극 활용
 - 게임개발업체, 제조사, 게임장 등 겸업, 동업, 주식취득 등 제한 필요
 - 업체유착 등 방지를 위하여 관련업체 퇴직 후 1년 이상자 위촉 및 퇴직 후 일정기간 관련업체 취업 제한 필요
- 전문위원, 자문위원 제척·기피·회피제 도입

다. 게임물 등급위원회 직원 외부접촉 차단 및 보호

-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은 내·외부, 직·간접적 불법로비, 협박에 노출되므로 심사자 인적사항 사전유출 통제 및 민원인과 접촉차단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 각계의 불법 로비, 외압, 협박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 담당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복무규정을 강화
- 상급자, 동료 등 내부청탁 등과 관련하여 자체 행동강령 제정·운영 및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감사실은 불법로비 등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파악 사정기관에 통보 및 사후관리
- 청탁, 협박 등에 대한 대처요령 등 매뉴얼을 마련, 교육 실시

라. 업체자율심사제도 도입

- 게임물심의위원회의 업무 과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체자율심의 제도의 조기 시행·정착이 필요하며,
 - 업체의 자율심의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메뉴얼화하고
 - 자율심을 통한 능률성과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한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 시행할 필요
 - 업체자율심사 평가결과 충실히 작성된 건에 대해서는 간이심사절차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마. 행정처분 적시성 및 형평성 확보

- 검·경 등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통보기한 및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기한 등 기관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담당자 재량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방지할 필요
- 게임산업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형법, 사행행위규제에 관한특별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의 어떤 조항에 위배 또는 경합되는지 사례별로 정리하여 단속 및 행정처분시 활용하고 양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메뉴얼 등 제작·지원 필요

바. 게임물 등급위원회 규정, 심사기준, 각종 세부규정 개정

- 게임물 등급위원회 규정 및 심사기준은 본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 각종 세부규정 중 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의 주요사항이 반영된 경우에는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할 필요

사. 청렴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조기 이행

- '06. 5월 국가청렴위원회가 문화관광부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중 현재 추진사항은 년도 중 이행완료 및 인력·예산의 수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계획 수립 등 조기 이행 추진

참 고

제도개선 권고 사항 추진상황

1. 소위원회 자격요건 구체화(소위원회 폐지-이행)
2. 소위원 임기 연장(소위원회 폐지-이행)
3. 예심위원 독립성 확보(전문위원으로 격상 임기연장-이행)
4. 심의식 기명식 비밀투표제(10월 법개정과 동시 이행 예정)
5. 심의절차 등 매뉴얼화 및 공개(추진중)
6. 회의록 공개(이행완료-홈페이지)
7. 등급심의 전과정에 대한 'OPEN시스템' 도입(추진중 예산수반 필요)
8. 등급심의 지연사유 공개(이행 : 홈페이지)
9. 구체적 '출장심의기준' 마련(추진중)
10. 사행성 판단기준의 엄격한 적용(추진중)

【붙임】위임, 위탁업무관련 기관 및 단체 정의(사례)

-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등을 참고하여 범위를 지정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 비영리기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등을 참고하여 범위를 지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제4조(등록) 등을 참고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 단체로 범위를 지정

제2절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현행 법령 평가

1

개요

해양산업은 장래 식량과 자원 등의 보고(寶庫)로서 국가성장을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임에도 국민적 관심부족으로 일제시대 때 작성된 지적자료에 대한 보완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육지와 바다의 현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일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공유수면의 현황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서해안 개발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불법매립 행위, 매립지 부당 취득,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 등 위법행위가 빈발하는 한편 관할 관청이 이를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은 물론 관련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도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에 관한 전반적인 부패실태의 수집·분석, 시민단체 등 관계자,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등과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8개 법령”에 대해 “공유수면매립 면허자에 대한 특혜 제거” 등을 포함한 32개의 세부개선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2006. 1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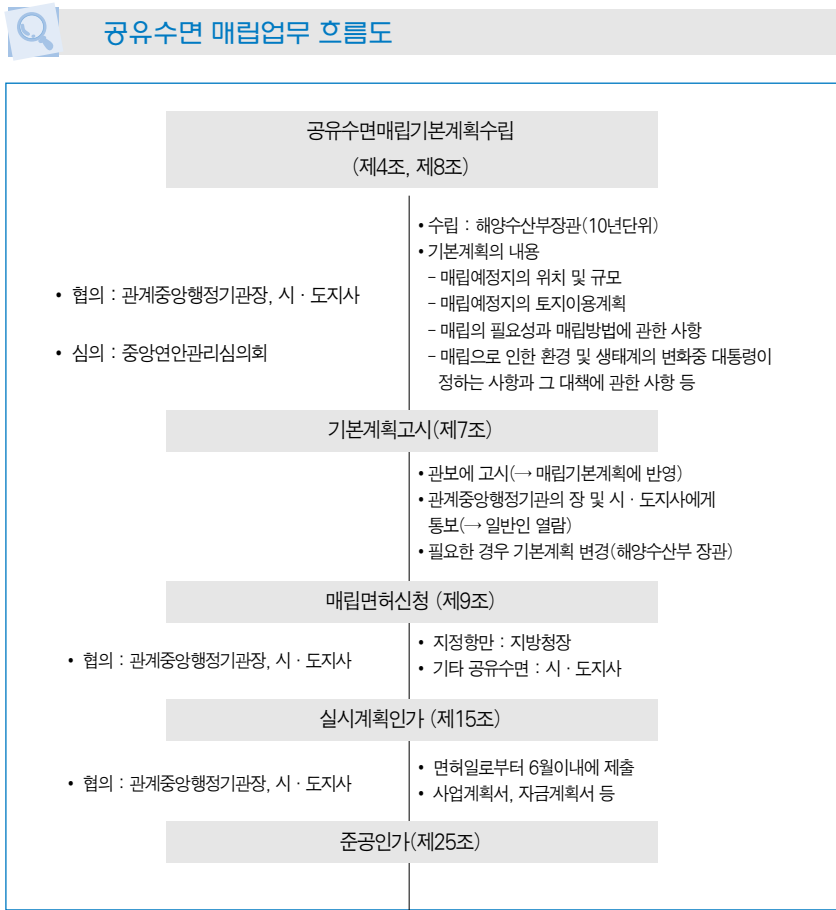
가. 과제선정 배경

-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재량행위

- 매립지 총사업비 산정 및 매립지 재평가시 매립면허자에 대한 특혜과다
 - ※ 매립지 준공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매립비용에 포함되지도 않은 부분(도급가격과 예정가격의 차이)을 인정하여 국가귀속분이 감소
- 각종 허가 및 승인시 재량이 많아 부패유발요인 상존
- 공유수면 매립을 둘러싼 부조리 빈발
 - 서해안 개발에 따라 땅값이 급등하자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
 - ※ ○○군청은 지적공부에서 말소가 되어야 할 포락지의 불법매립을 묵인하였고, 사후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자 수용·보상·토지교환이 불가함에도 군수 결재 및 군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고 있음(실태조사 '06.9.)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피해영향조사서, 불법매립 묵인 및 방조, 매립지 국가귀속 및 사후관리 소홀 등 공유수면 매립 업무처리 부적정
- 체계적이지 못한 공유수면 관리시스템
 -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관리 및 지도·감독 미흡
 - ※ 해안선 경계, 포락지 등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 없어 육지가 공유수면으로, 또는 공유수면이 육지로 등록되는 등 지적도 내용이 실제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음(실태조사, 2006.7.)
 -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점·사용료 산정 및 면제 부적정, 허가시 관계기관 협의절차 생략, 원상회복 실효성 미흡 등 불신과 의혹 제기

나. 공유수면 매립·관리의 현주소

(1) 공유수면 매립업무 현황



- '05년 갯벌 면적은 2,550.2㎢로 '87년 3,203.5㎢에 비교해 20.4%가 사라짐

※ 우리나라의 공유수면(약 447천 km^2)은 국토면적(99.6천 km^2)의 약 4.5배이고,
해안선은 서울-부산간 거리의 약 31배인 12천 km 임

- '80년 이후 매립면허 건수는 347건, 면적은 1,410 km^2 (4억2천78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54만여 평)의 168배



공유수면 매립현황('80 ~ ' 05)

(단위 : 건, 천 m^2)

구 분	면 허		준 공		시공중		실 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347	1,410,138	189	138,339	152	1,063,476	6	757
국가	76	15,453	38	7,024	36	7,943	2	168
지자체	115	234,765	63	15,625	50	218,726	2	60
공공단체	61	1,051,277	27	93,751	34	750,939	0	0
민간인	93	108,614	60	21,917	31	85,860	2	529
교육기관	2	29	1	22	1	8	0	0

※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통계연보,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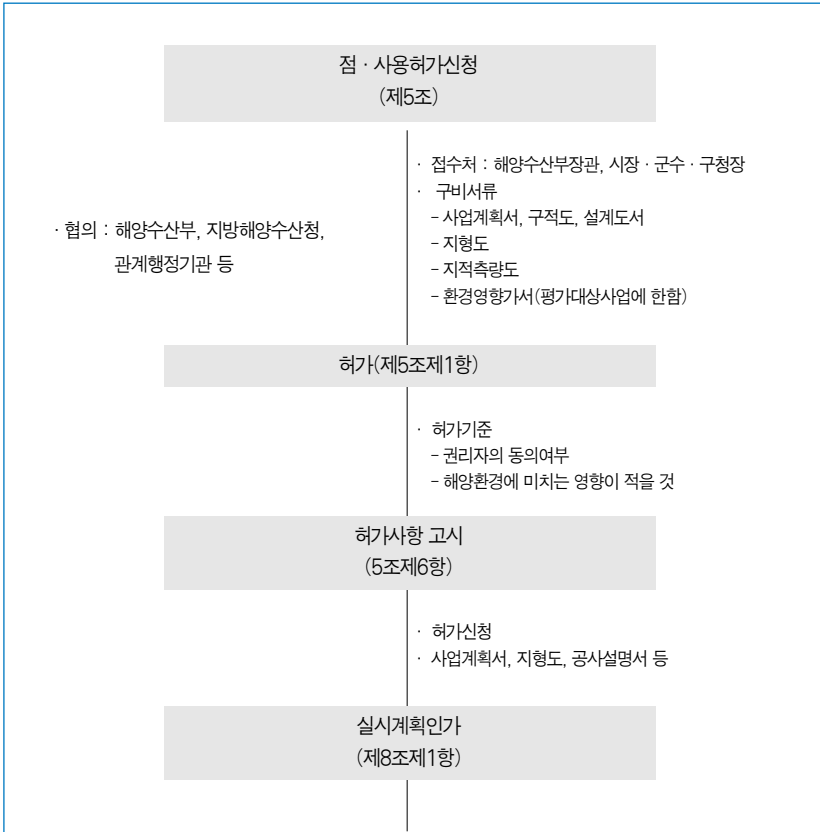
- 대부분의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에 장기간 소요
 - 매립이 완료된 건수는 9.8%에 불과하며, 189건, 138 km^2 (4,185만평)임
- 사업시행자별로 보면 지자체와 공공단체가 50.7% 차지

※ 불법매립 현황에 대하여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음

(2) 공유수면 점·사용 업무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업무 흐름도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 최근 3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평균 건수는 6,924건, 면적은 54.9km², 점·사용료는 282억원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03~'05 평균)

(단위 : 건, km²,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점 · 사용료
총계	6,924	54.9	28,198
해양수산부	755(10.9%)	36,923(67.3%)	21,753(77.1%)
지방자치단체	6,169(89.1%)	17,929(32.7%)	6,444(22.9%)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89.1%를 차지하는 반면, 면적 및 점·사용료는 해양수산부가 각각 67.3%와 77.1%를 차지함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수는 해양수산부에서는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이 273건으로 가장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청이 3,315건으로 가장 많음
- 공유수면 지도·단속실적('03~'05)
 - 공유수면 매립관련 지도·단속은 5건, 점·사용관련 지도·단속은 309건임

(2) 관련법령 및 업무수행기관

- 관련법령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 업무수행기관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12개 지방해양수산청 : 28개 무역항, 150개 국가어항
 - 11개 시도 및 78개 시군구 : 기타 지역



2 문제점 및 부패실태

가. 공유수면 관리 분야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적정
 - 허가신청 면적과 목적이 동일함에도 2차례 부동의 후 동의

※ ○○지방해양수산청은 민원인이 토석채취 운반용 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협의를 대하여 허가신청 면적과 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부동의하고 3차에서는 동의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를 하였고, 현지확인 출장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군에 요구하지 않았음(감사원 감사자료, 2005)

-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해양수산부 감사자료, 2005, 2003)

－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연장 허가

※ ○○지방해양수산청은 바다모래 채취업체가 상습적으로 점·사용 허가구역 이외의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여 모래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3회에 걸쳐 원상회복 지시를
하였으나 일부만 원상회복 조치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현장조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원상회복 미확인, 고발 미조치)하고
허가해줌(감사원 감사자료, 2002)

※ ○○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점·사용 피허가자가 불법매립하여 공장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고서도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년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해줌(감사원 감사자료, 2002)

－ 해양수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1차 협의시
관계행정기관의 반대로 반려하였던 동일 신청 건을 해수부 본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임의로 점·사용허가를 하자 본부에서 관련 법령위반 의견을
통보하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철회 및 점·사용료를 반환(감사원 감사자료,
2005)

－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방치에 따른 국가재정수입 감소

※ ○○지방해양수산청은 6,104㎡의 공유수면이 2002년 자연매립에 의해 토지가
되었는데도 국유토지로 등록·등기없이 △△기업(주)에게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함으로써 국유재산법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할 경우와 비교하여
3,989만원 상당의 국가재정수입 감소 초래(감사원 감사자료, 2004)

•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및 사용료 산정 부적정

–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면적 산정 부적정 빈발

- ※ ○○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점·사용면적 산정시 연속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분리 산정하여 점·사용료 과소 부과(감사원 감사자료, 2003)
- ※ ○○지방해양수산청은 부선계류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 산정시 계류부표의 중심으로부터 부선의 끝단까지를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나, 부선 단면적만을 산정하여 점·사용료 과소 부과(감사원 감사자료, 2003)

–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부적정

- ※ ○○지방해양수산청은 어촌계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 시군으로부터 어촌계설립인가를 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결정(해양수산부 감사자료, 2005)
- ※ ○○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장 확인 없이 해산물 일시보관을 위한 수협의 사업이 영리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점·사용료 부과(감사원 감사자료, 2005)
- ※ ○○지방해양수산청은 6개 어촌계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어촌계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점·사용료를 면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 절차 없이 감면 결정(감사원 감사자료, 2005)
- ※ ○○지방해양수산청은 민간투자사업은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로서 인정되지만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본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사용료 3458만원을 임의 반환(감사원 감사자료, 2005)

•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에 대한 묵인 및 방치

- ※ ○○군 ○○면장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용과 다르게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을 불법매립하고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하직원의 보고를 받고도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기보다는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만 하고, 공사시행자에게 전화로만 불법건축을 하지 말라고만 하였고, 군청에는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방치(감사원 감사자료, 2002)
- ※ ○○지방해양수산청은 민원인이 토석채취 운반용 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협의를 대하여 허가신청 면적과 목적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부동의하고 3차에서는 동의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를 하였고, 현지확인 출장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가 이미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감사원 감사자료, 2005)
- ※ 여름 해수욕철을 맞아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여 횃집 주차장 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횃집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기승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허가조건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방치

- ※ ○○남도 △△군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후 피허가자가 허가구역 밖 공유수면 9,951㎡를 불법매립하고 불법으로 건축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감사원 감사자료, 2002)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 위반행위 여부 확인 점검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고가에 불법전대

- ※ ○○광역시 △구청은 여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어촌계 : 사용료 전액 감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불법전대 한 사실이 있었고, 당초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점·사용허가기간동안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사용료 1,657만원을 징수하지 못함(감사원 감사자료, 2002)

-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원상회복의무 면제
 -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 미실시

※ ○○시청은 '05. 8. (주)△△건설이 항구 건설공사용 채석장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득한 물량장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주민들이 존치를 원한다는 이유)로 판단하여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승인하고 국가귀속조치 등 총 3건 협의의무 불이행(실태조사, 2006.7.)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미흡
 - 불법매립 및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한 처벌 미흡
 -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인·허가한 사항에 대한 규제장치 미흡

나. 공유수면 매립 분야

- 서해안 등 전국 연안 공유수면 불법매립 기승
 - 서해안 개발,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발표로 땅값이 급등하자 공유수면 불법매립 빈발

※ 서해안 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의 여파로 땅값이 치솟자 공유수면 불법매립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실제 충남도는 불법매립행위 3건 적발되었는데 특히 ○○남도 ○○군 ○○면 모래언덕까지 불법 매립(경향신문, 2005.6.15.)

※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박모(55.구축)씨는 화성시 무인도 안고령섬 임야를 전원주택 용지로 분양하기 위해 육지에서 섬에 이르는 740m 길이의 공유수면 갯벌을 무단 매립해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개설(수원지검, 2004.11.)

※ 임모(47)씨는 간조 때 물이 빠지며 진입도로가 드러나는 곳으로 유명한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백사장을 불법 성토해 식당, 주차장 용지로 사용(수원지검, 2004.11.)

- ※ 동해안(울산~기장~부산), 남해안(진해~마산, 통영), 서해안(대천, 안면도, 강화도) 일대가 불법 매립 및 점용 심각(부동산뉴스, 2004.8.17.)
- ※ 경북 포항시의 해양레저특구개발계획에 따라 대보면과 구룡포읍이, 차장대교 건설계획에 따라 흥해읍과 동해면의 땅값 폭등(세계일보, 2005.6.16.)
- ※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의 서산A·B지구 간척지 부남호 주변에 웰빙타운 건설계획의 발표에 따라 투기열풍(세계일보, 2005.6.16.)

• 관련 공무원의 불법매립행위 방지

- 지적공부에서 말소해야할 포락지를 불법으로 분할등기 후 불법매립
- 주민들의 불법매립행위 진정을 받고서도 방지
- 보상이 불가능한 포락지에 대하여 보상, 토지교환을 추진

※ 등록말소가 되어야할 포락지를 ○○군청 공무원이 조카명의를 빌려 매수계약 후(400평, 평당 30만원 총 12천만 원에 매입) 분할등기 신청·지적공사의 경계복원 측량 후 340평을 불법매립

상기 포락지를 매수한 신○○이 불법매립시 ○○군청 ○○천관리 사무소(매수자의 삼촌인 신○○이 소장으로 근무) 앞 도로를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5일 동안 통과 하였고 지역주민이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매립자와 실질적 소유자인 삼촌이 합세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주민에게 폭력 2회 행사를 하는 등 매립행위를 묵인·방치 사후 ○○지방수산청에서 확인과 고발('00.6)조치에 따라 벌금 300 만원을 부과받고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3차례에 걸쳐 원상 회복조치를 내렸으나, ○○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02.12)에 포함되어 원상회복 실효성이 없어 ○○군청에 불법매립지에 건축허가 및 보상을 불허하도록 통보

신△△은 ○○군청 퇴직 후 '04.3. 추가 불법매립을 하다가 작업중지를 지시받은 적이 있으며, ○○군청은 '00년 도로공사가 제기한 행담도 소재 포락지의 지적공부말소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이행청구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여 포락지를 지적공부에서 말소하여야함을 인지하고서도 동 불법매립지의 지적공부

말소조치를 취하지 않음

신△△는 소유권을 조카로부터 이전 받은 후('05.6.30) ○○군청에서 보상을 추진하자 지가상승을 염두, 이를 거부하고 토지교환을 요구(매립지 공시지가 14억여 원, 군유지 공시지가 약 12억원)하여 군청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및 군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수용하자 다시 세금문제 때문에 거부한 후 ○○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라 매립공사 완료 후 친수공간의 영업시설임대를 요구하고 있음(실태조사, 2006.9.)

⇒ 토지교환시 약 12억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뻔함

- 공유수면 매립적합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영향조사서, 시추조사 및 지층분석서 부실 작성 및 불성실한 검토로 부당하게 면허를 발급
 - 영향평가의 본질적인 문제점인 미래효과의 예측·분석의 적정성, 매립 이후 공유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의 사후검증시스템 불비
 - 매립사업 시행자의 이해관계에 의한 부실영향평가를 묵인 또는 방조 우려

※ ○○광역시 ○○신도시 6·8공구와 5·7공구 준설토 매립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시추조사 및 지층분석 결과가 동일한 구역인데도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 조사자체의 신빙성에 의문(내일신문, 2006.4.13)

- 매립지 국가귀속 업무처리 부적정
 - 바닷가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인가하여 피면허자에게 바닷가 귀속

※ ○○남도는 ○○군 소재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매립지에 포함된 바닷가는 국유화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청서에 바닷가가 없는 것으로 제출한 서류를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인가 처리하여 바닷가 46,973㎡(감정평가액 기준 약 41억여 원)가 피면허자에게 귀속(감사원 감사자료, 2002)

－ 국가에게 귀속되어야 할 바닷가를 매립공사 대행개발업체가 취득

※ ○○남도는 ○○ 제1지방공단을 민간회사와 대행개발계약을 맺어 매립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시계획 인가시 매립지안에 있는 바닷가 21,773㎡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아 사업이 완공될 경우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바닷가를 대행업체가 취득(감사원 감사자료, 2002)

※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시 바닷가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이므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조건 등을 붙여 매립공사 준공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도는 ○○매립지 안에 있는 바닷가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음(감사원 감사자료, 2002)

－ 소유권 이전등기 미실시 및 해태

※ ○○지방해양수산청은 1977년 3필지 10,175㎡를 취득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감사원 감사자료, 2004)

－ 매립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국가에 귀속될 토지가 감소

※ ○○남도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시 매립 토사물량을 당초 실시 계획 인가시 선정된 토취장보다 거리가 먼 지역에서 채취·운반한 것처럼 운반 거리를 늘려 실제 투입된 225억여 원보다 151억여 원 많은 376억여 원이 들어간 것으로 준공인가 처리(감사원 감사자료, 2002)

-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당 시행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수립한 조치계획과 다르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예산 낭비

※ ○○광역시 도시개발본부는 ○○지구 매립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시행할 공사 등에서 발생될 잔토예상량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 감사원 감사에서 매립토량을 478만여㎡(해당공사비 11,165백만여 원)을 줄일 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22,687백만여 원을 줄일 수 있는 자체 조치계획을 감사원에 통보하고서도 매립공사비를 20,400백만여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하여 매립(감사원 감사자료, 2003)

- 준공인가 부적정

- 매립관련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준공인가

※ ○○지방해양수산청은 조선소 부지 조성 목적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하면서 피면허자로 하여금 ○○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여 ○○광역시에 귀속하도록 하였지만 준공인가 신청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인가(감사원 감사자료, 2002)

- 초과매립지가 있음에도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준공인가

※ ○○전력(현 한국○발전)은 ○○시에 발전소 부지조성과정 중 불법으로 초과매립(25,081㎡, 7,587평)하였음에도 '71년 건설부에서 준공인가처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95년 인근 지역을 지적측량 중 미등록 토지를 발견하여 변상금(9억2천만원) 부과 후 원상회복 면제처분하고 국가에 귀속('06.8) 처리(청렴위 실태조사, 2006.8.)

종합 평가 의견

1) 부패유발요인

- 관련규정 미비 및 재량규정의 불명확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발생
- 공유수면에 대한 현황관리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 곤란

2) 평가결과 : 개선권고(개선의견 30건)

- 공유수면 매립 · 관리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 정비를 통한 청렴도 제고
- 특혜유발요인,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등을 정비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부패통제장치 강화를 통하여 공유수면 정책의 신뢰성 · 예측가능성 제고

3)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중점 검토항목	평가결과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1개항목	개선의견 1건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1개항목	개선의견 1건
	1-3. 특혜발생 가능성	2개항목	개선의견 2건
2. 재량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	개선의견 3건
	2-2. 재량범위의 적정성	5개항목	-
	2-3.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	개선의견 5건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	-
	3-2. 예측가능성	1개항목	개선의견 1건
	3-3. 부패통제장치	17개항목	개선의견 17건
조치기한	2007. 12. 31까지		

1) 공유수면 관리



평가대상 조문 1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바다 · 바닷가
 - 나. 하천 · 호수 ·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2.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4. "간석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시행령 제4조 (포락지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등을 감안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제2조의2 (점 ·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포락지) ①영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 ·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포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당해 조성예정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
2.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②영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포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한 토지조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도로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묘지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절한 보호·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2) 부패유발요인

- 포락지의 정의 불분명
 - 현행 규정상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수면 밑으로 잠긴"에서 만조수위선인지 간조수위선인지 불분명
- 포락지 등 공유수면 관리 총체적 부실

지적법 제2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①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이한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말소한다.

③ 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회복등록할 수 있다.

시행령 제17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이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포락지 불법 분할등기 묵인 및 지적공부 말소 미이행

· 소유권 상실의 기준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 사실의 통지가 아닌 포락당시를 기준으로 함

· 지적공부에서 말소해야할 포락지를 불법으로 분할등기 후 불법매립

※ 지적측량을 수행하면서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도 소관청에 관계자료를 통보하지 않고 있음(실태조사, '06.9.)

－ 불법매립 방지

· 주민들의 불법매립행위 진정을 받고서도 방지

－ 보상이 불가능한 포락지에 대하여 보상, 토지교환을 추진

※ 포락지는 자연공물로서 수용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없으며, 국가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포락지를 공공사업지구로 편입, 매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보상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관련 판례

[1999.11.25. 선고 헌법재판소 98헌마456 포락토지불보상등위헌확인]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상 자연해물지를 재산권으로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입법자가 해면의 공공성, 해면에 대한 경제적 이용가능성, 바다와 육지의 기술적 구분가능성 등 여러 가지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정신이나 사유재산제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포락 토지는 자연해물지로서 현행법상 재산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해상(海床)으로서 해수와 일체를 이루어 바다를 구성하여 자연의 상태 그대로 일반공用に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수용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공공사업지구로 편입, 매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옛 소유자들에 불과한 청구인들의 배타적 지배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매립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여 국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락토지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보상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등 헌법규정이나 헌법해석상 도출할 수 없으며 달리 그러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

[대법원 1992. 4.10. 선고 91다31562 토지소유권확인 등]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인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말소 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0. 2.26. 선고 79다2094 토지인도]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화 함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되어도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공유수면 현황 관리 미흡

- 관할관청에서 관내 공유수면, 특히 포락지 등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는 등 기초적인 실태자료 관리 미흡
- 전국에 걸쳐 육지, 포락지, 바닷가에 대한 정확한 경계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유수면 관리에 총체적 부실

• 공유수면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회복 실효성 미흡

- 지자체장 선거 등 지역사회 특성상 국가 전체적인 공유수면 관리보다는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도·단속에 대한 각종 압력 등을 이유로 단속 및 처벌에 한계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한 후 불법 임대 및 전대

- ※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받는 어촌계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고 불법 전대한 사실이 있었고, 당초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점·사용 허가기간동안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점·사용료 1,657만원을 징수하지 못함(감사원 감사자료, 2002)

• 개인 소유의 토지가 포락될 위험에 처할 경우 자구책 등 대처방안 미비로 불법행위 방조

-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자연 포락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포락될 위험에 처할 경우 대처방안이 없어, 개인이 자신의 소유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까지 불법매립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포락지"에 대한 정의 명확화 : 법 제2조(정의) 개정

※ 예시

- “포락지”라 함은 연안의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해수면이 최고고점(만조수위 기준)에 이르렀을 때의 해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 수로업무법 제5조(수로조사의 기준) 제1항제5호 해안선은 해면이 약최고고조면(약최고고조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
- 공유수면 총조사 실시근거 규정 마련 : 법에 관련규정 신설
- 공유수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실시 근거를 법령에 마련
 - 조사실시기관, 조사대상, 조사항목, 조사연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
 - 특히 포락지, 불법매립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매립지의 매립목적대로 사용여부 등을 일제 조사
 - 위성 또는 항공촬영 등을 공유수면총조사에 활용하여 공유수면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를 적발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06.7.28일 발사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는 1m급 흑백영상과 4m급 컬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07년 초부터 위성영상 상용판매를 시작할 예정임
- 육지, 포락지, 바닷가에 대한 정확한 경계측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도면화 하고, 공유수면정보체계를 구축
 - 건설교통부 (국토기본법 제25조(국토조사), 제23조(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국토지리원), 행정자치부(지적법, 지적공사), 해양수산부(국립 해양조사원, 수로업무법)과 연계·추진하여 해안선 경계를 공동으로 조사·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포락지의 체계적인 관리 : 공유수면업처리규정에 관련 규정 신설
 - 공유수면총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포락지는 지적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에서 말소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통보
 - ※ 예시 :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법매립한 포락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한 적발시 지적공부에서 말소
 - 포락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수용 및 보상 불가에 대한 규정 마련
 - 포락지의 소유권 상실 및 국가 등이 사업지구로 편입·매립하여 사용 하더라도 국가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수용 및 보상 불가에 대한 규정 명확화
- ⇒ 법에 관련규정 신설
- 불법매립행위 방지를 위한 포락지 집중관리
 - 포락지 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공유수면관리대장에 포락지 항목을 추가하여 집중 관리
- ⇒ 시행령 제23조(보고 등) 개정
- 공유수면 불법행위 교차단속 실시
 - 시·군간 교차단속을 통하여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불법 점·사용 등 범법행위 적발, 원상회복의 효율성 강화
- ⇒ 공유수면업무처리지침에 관련 규정 신설
- 공유수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마련 : 법에 관련규정 신설
 -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을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마련
 -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

※ 예시 : ① 공유수면에서 불법행위를 관할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

※ 신고절차 및 서식,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통지 기한, 지급대상 범위, 세부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공동신고 및 동일 건에 대한 다수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준, 신고자 신원 등 정보의 보호,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관련 공무원이 신고시에는 포상금 지급 금지), 포상심사위원회 등

※ '06년 9월 현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규정한 법령은 부패방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 25개 법령임

- 개인 소유의 토지가 포락될 위험에 처할 경우 대처방안 마련
 -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자연 포락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포락될 위험에 처할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
 - 개인 소유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까지 불법으로 매립하는 행위 방지
 - 자연 포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에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 조치
 - 국가,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개발행위에 따라 포락될 경우 그 당사자에게 포락 방지 대책을 요구
- 공유수면 점·허가 후 제3자에게 임대 및 전대 금지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 ⇒ 법 제5조(점·사용허가)에 신설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오류정보를 지적공사에 주기적으로 요구
 - 지적공사는 관할 시군구에 지적측량성과 검사자료 제출시 포락지 등 지적공부의 토지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포락지 등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추진
- ⇒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에 신설



평가대상 조문 2

법 제5조 (점·사용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을 점·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8.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 ③ 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 (협의) ①관리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점·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점·사용허가의 신청자
2. 점·사용허가의 신청지역·규모 및 내용
3. 점·사용허가의 목적 및 기간
4. 기타 점·사용허가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바다 또는 바닷가에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허가의 내용에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회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2. 점·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한 협의신청 등)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각각 “협의” 또는 “승인”

으로, “변경허가”는 각각 “변경협의” 또는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점·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점·사용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점·사용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제4조의2 (협의대상 행정기관) 관리청이 점·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영 제6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른 점·사용행위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신설 2005.9.30>



점·사용행위별 협의대상인 관계 행정기관(제4조의2관련)

협의대상	근거법령	법 제5조1항의 점·사용행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1. 도시계획 관련사항 (도시계획 구역안 또는 인접한 공유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	○	—	○	—	○	—
2. 군사시설 관련사항(「군사시설 보호 호법」 및 「해군기지법」 관련 공유수면)	관할 군부대장	○	○	○	○	○	○	○	○	○
3.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해양환경, 항만·어항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
4.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사항(항로 및 무역항 인접한 공유수면에 한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	○	○	○	○	○	○	○	○	○
5.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와 관련된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	○	○	○	○	○	○	○	○	○
6.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지방환경관리청장	—	○	○	—	—	○	—	—	○
7. 문화재 및 철새보호 관련사항	문화재청장	○	○	○	○	○	○	○	○	○
8. 자연공원(해상국립공원) 관련사항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	○	○	○	○	○	○	○	○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점·사용관련사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10. 어항구역안에서의 점·사용 관련사항	해양수산부장관(국가어항) 시·도지사(지방어항)	○	○	○	○	○	○	○	○	○
11. 시·군 구간 공유수면 점·사용의 경계 및 이매조정과 관련된 사항	시·도지사	○	○	○	○	○	○	○	○	○

※ 비고

1. 관리청은 위 별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어 미리 협의를 하여야 공유수면 점·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각각 확인·협의 하여야 한다.
2. 위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제11호의 규정은 바다·바닷가에서 점·사용행위에 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위 별표에서 정한 바에 불구하고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허가의 유형에 관계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0조 (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해양수산청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이하 "무역항항만구역"이라 한다)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당해 점·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2. 법 제6조 및 이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및 변경 협의·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료의 징수·감면 및 분할 납부 조치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및 공작물등의 국가에의 귀속 조치

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등의 제거명령 및 당해물건등의 제거·처분 조치
8.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9.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 명령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점·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명령,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 명령
1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1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무역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과 부산남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다)과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부패통제장치

(2) 현황

- 관계기관 협의 의무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각호 규정을 포함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각호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도 관계기관(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방환경청장, 관할 군부대장, 문화재청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

(3) 부패유발요인

- 해양수산부와 지방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동일 건에 대하여 이중협의

- 동일한 신청건을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각각 협의

※무역항·국가어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이외의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 단순·반복적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 반복협의를 따른 민원인의 불편 야기에 따른 소송 발생 및 업무폭주로 행정효율성 저하

- 대부분의 점·사용허가기간이 1년 내지 2년이며, 특히 점·사용허가의 목적 및 면적의 변경이 없고, 공유수면에 위해가 없는 단순 기간연장을 위한 변경허가건도 반복적인 협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준수자의 부담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 ○○시청의 경우 '02 ~ '05년 동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 반려에 따른 행정·민사소송이 5건, 행정심판이 5건 발생(실태조사, '06.6.)

- 단순 기간연장 공유수면 점·사용의 경우 권리자(어촌계 등)의 동의서 첨부을 의무화하고 있어 기간연장시마다 권리자 등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신청자와 어촌계의 갈등 심화

• 불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시에도 변경허가

-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변경허가 신청시 허가조건대로 점·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변경허가 승인

• 공유수면 협의 미이행

-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관계행정기관과 사전협의 미실시

○○시청은 '05. 8. (주) 건설이 항구 건설공사용 채석장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득한 물량장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주민들이 존치를 원한다는 이유)로 판단하여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승인하고 국가귀속조치 등 총 3건 협의의무 불이행(실태조사, 2006.7.)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유수면 점·사용 이중협의 개선
 -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체계 개선
 - 해양수산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 구분을 없애고 지방청에서 일괄 처리하되 본부와 협의해야할 중요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청자의 준수부담을 완화
 - 기간연장, 면적축소, 기간단축 및 점·사용 폐지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협의

※ 예시

-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규사 등 광물 채취, 조선소 선거대 설치 등)
 - 원상회복의무 면제
 - 신규 점·사용허가
 - 단순 기간연장을 제외한 변경허가 (대부분의 협의건은 기간연장을 위한 변경허가임)
 - 공유수면매립법 관련사항은 본부와 협의
 - 공유수면 협의절차 결여 및 협의내용 미이행시 제재 규정 마련
- ⇒ 법 제6조(협의 또는 승인), 시행령 제9조(협의 또는 승인), 시행규칙 제4조의2(협의대상 행정기관) 별표 1의2 개정

-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이행시 점·사용허가 일정기간 제한
 - 전대행위, 불법매립 등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일정기간 제한
 - ⇒ 법 제5조(점·사용허가), 영 제7조(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조장·방치하거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인·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제재방안 마련
 - ⇒ 법 에 관련규정 신설

2). 공유수면 매립 분야



평가대상 조문 1

법 제26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응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응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는 국가

영 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④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라 함은 당해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이 경우 순공사비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표준품셈·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당해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5. 기타 비용 : 다음 각목의 비용의 합계액

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시공감리비

7. 이윤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제23조(총사업비의 산정) ① 면허관청은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 영 제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설계금액을 말한다)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 후 그 설계 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등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준공인가 신청전 최종적으로 변경인가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영 제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비의 비목중 노무비의 간접노무비율, 경비율과 영 제20조제4항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활동부문의 일반관리비율은 가장 최근에 조달청에서 발표한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기초로 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 부패통제장치

(2) 부패유발요인

- 순공사비의 산정방식 부적정으로 국가귀속분 매립지 감소

- 정부표준품셈과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으로 순공사비를 산정하여
매립면허자에 대한 특혜발생소지를 내포

· 순공사비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표준품셈·단가
(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로 함

·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정부표준품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할 수 있는 매립지는 총사업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공사비 산정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품셈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차액에 따른 면적만큼 국가귀속분이 감소

· 순공사비는 예정가격결정기준과 품셈에 의해 결정 ⇒ 총사업비의 대부분은
순공사비에 의해 결정 ⇒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할 수 있는 매립지는
총사업비에 의하여 결정

※ 매립지 분배방법 :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나머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매립공사비용을 1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약
14억원에 상당하는 토지가 현재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고 있음

※ 〈 참고 : 실적공사비 〉

· 정의 : 실적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된 각종 공사에 대해 정부와 도급 자간에
체결한 실제 계약금액을 공종별로 분석하여 파악한 표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 추진경위 : 미국 도로국(DOT), 영국에서는 이미 수행한 계약단가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적산방식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품셈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93년부터
표준품셈방식과 병행하여 시장단가 방식을 운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공사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의 투입대수 및 가동시간 등을 일일이 계산하는 표준품셈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입찰 예정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응찰가를 산정해왔음

- 따라서 그동안 품셈을 기초하여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현행제도는 실제로 투입되는 시장가격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예정가가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지고, 신기술이나 공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와 낙찰업체간의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를 산출해야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

• 조사비, 설계비, 시공감리비 및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산정 혼란

- 해양수산부 고시인『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과『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에서 조사비와 설계비 산정방식이 상이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26조의2 (총사업비의 산정)제3항제1호에서 조사비와 설계비는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규정

·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및 총사업비)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조사비와 설계비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규정

- 해양수산부 고시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과『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방식이 상이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26조의2 (총사업비의 산정)제3항제2호에서 공사비를 도급계약액을 기준으로 함
- 『공유수면 매립업무 처리요령』제23조(총사업비의 산정)제1호에서 준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설계금액을 말한다)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 『공유수면 매립업무 처리요령』제23조(총사업비의 산정) 제1호에서 시공감리비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으로 규정
- 매립공사 책임감리자를 매립시행자가 선정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따른 감리 부실 우려
- 매립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국가에 귀속될 토지가 감소

※ ○○남도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시 매립 토사물량을 당초 실시계획 인가시 선정된 토취장보다 거리가 먼 지역에서 채취·운반한 것처럼 운반거리를 늘려 실제 투입된 225억여 원보다 151억여 원 많은 376억여 원이 들어간 것으로 준공인가 처리(감사원 감사자료, 2002)

※ 새만금 방조제 공사과정에서 대기업인 ㄷ건설과 ㅎ건설의 하도급업체는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가짜명세서를 만들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인부들을 장부에 올려 인건비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각각 20억 원과 25억원을 횡령(한겨레, 2006.9.27.)

※ 평택항 동부두 항만공사에서 ㅎ건설 하도급업체가 공사장비 및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41억 원을 횡령(KBS 현장추적, 2006.9.27)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매립공사의 공사비 산정방식에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특혜유발요인을 제거
 -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매립지가 매립면허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
- 순공사비에 과다 반영되었던 품셈, 예정가격 결정기준(설계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이를 시정
- 매립지의 공사비 산정은 다른 공사와 달리 준공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 토·호안공사가 대부분인 매립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가능

※ 건설교통부의 실적공사비제도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품셈에 의한 비용 산정의 불합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도는 이후 적용항목을 토목, 건축, 기계설비에 걸쳐서 340개 항목으로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유도

※ 전체 1857개 공종 가운데 지난해까지 전환이 완료된 505개 공종에 대한 품셈단가 대비 실적공사비 단가는 84%수준으로 현재보다 약 16% 하락한 것으로 분석(기획예산처, '06.1.26.)

-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간 혼선이 되고 있는 조사비, 설계비, 시공감리비 결정기준 통일
 - 조사비, 설계비, 시공감리비는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산정
- 매립사업 감리업체를 관할 관청에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지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

- 감리업체가 매립면허자로부터 독립적인 감리를 수행 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여 감리의 신뢰성 확보

• "매립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 강화"

- 총사업비 산정 적정여부를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총사업비
를 부풀리는 행위 방지

⇒ 시행령 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개정

※ 건설교통부는 '05.12. 중앙부처 최초로 '총사업비 자체심사 시스템'을 마련, 실제
지난 4월 225개 사업에 이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1,11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둠(건설교통부 보도자료, '06.6)



평가대상 조문 2

〈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동시 평가 〉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원상회복)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매립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소멸 후 1년 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2조 (원상회복의 면제요건)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 (이행보증금의 반환등) ①면허관청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거나 법 제3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이행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청구서 및 관계서류를 면허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면허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원상회복 등) ①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이 만료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 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 ② 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20조 (공작물등의 귀속) 관리청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시설물·토석 기타의 물건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공작물 등의 위치·종류·수량·귀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2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3.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대상시설현황 및 면제신청사유
4. 토지를 조성한 부분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규정 제13조의2(원상회복의무 면제협의) 관리청은 법 제12조 및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부패통제장치

(2) 부패유발요인

-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판단기준 부실
 -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 및 횟수를 규정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가능성이 높음
 -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규정과 원상회복 판단기준이 없어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명령 후 현지 확인을 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등 부실한 원상회복이 되거나 부패개연성이 있음
 - 특히, 포락지 등을 불법 매립 후 적발되어 벌금 등의 처분을 받고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고발조치 후 방치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 제한의 실효성 확보 미흡

- ※ ○○도는 서귀포시 소재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콘크리트 포장하여 '03.7. 적발, '03.8. 원상회복명령 이후 고발조치도 없이 현상태로 방치(실태조사, 2006.8.)
- ※ ○○지방해양수산청은 ○○시 소재 ○○농장이 공유수면에 사석 900여톤을 불법매립(838㎡)하여 낚시객들을 위한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다 '05.3. 고발조치 후 '05.5.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실태조사, 2006.9.)
- ※ ○○군청은 '05.7. 김○○이 해안도로옆 국유지 임야의 흙으로 바지락 양식장 진출입로 목적으로 길이 12m, 폭 3m 정도의 평탄작업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고발 및 원상회복을 지시한 후 방치(실태조사, 2006.7.)

· 공유수면 보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근거가 없어 한번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음

- ※ ○○시 소재 (주)△△조선은 '04.2.20. 불법매립 적발된 후 8회 원상회복명령 및 3회 고발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미이행(실태조사, 2006.9.)
- ※ ○○시청은 '03.6. 공유수면에 서○○과 최○○이 불법건축물(식당 부속건물, 주택 등)을 건축하여 '05.6. 고발한 후 방치상태(실태조사, 2006.8.)
- ※ ○○시청은 공유수면에 불법건축물(식당)을 건축한 김○○등 7명에 대하여 '04.5. 고발조치 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실태조사, 2006.8.)
- ※ ○○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에 김○○과 김○○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각 '03.6월 및 '04.7월부터 무허가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적발·고발 조치되어 '05.9월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고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06. 6월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실태조사, 2006.7.)

•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시 관리청의 행정대집행 예산 부족

- ※ 지속적인 원상회복명령과 고발조치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계고만 할뿐 실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관련규정 부재
 - 현행 법령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자,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매립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와 면허구역외의 초과매립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만 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규정을 두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가 없는 등 법의 허점을 있어 공유수면 관리 취지가 퇴색

〔 2004. 5.14. 선고 대법원 2001도2841 도시계획법위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만 같은 법 제7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건축법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이 있는 재량기준을 정비하여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유발요인을 제거
-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규정 마련
 -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 불법매립지 양수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근거 마련
 - 공유수면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자 뿐만 아니라 그 불법매립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규정을 마련

- 선의의 제3자와 악의의 제3자를 구별
- 선의의 제3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면제
- 불법매립행위자 및 이를 알고서도 매수한 악의의 제3자는 원상회복 의무부과

※ 예시 : 토지매매 등을 위한 지적측량시 포락지로 측량되는 경우,
토지·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된 토지·건축물을 매수한 자,
공유수면 법령 위반 토지·건축물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토지·건축물을 매수한 자 등 악의의 제3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 법 제35조(원상회복) 개정

-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경우 표지를 당해 위반 건축물 또는 그 토지안에 설치하고,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

- 표지를 훼손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 법 제35조(원상회복) 개정

•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기간, 횟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예시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2회에 한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실한 원상회복을 방지할 수 있는 원상회복 확인 의무규정 및 원상회복판단기준 마련

⇒ 법 제35조(원상회복) 개정

• 사법기관 고발기준 마련

-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담당자별로 상이한 업무처리 행태를 시정

※ 예시

- 2회에 걸쳐 부과한 원상회복명령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일정 면적 이상의 불법매립인 경우 즉시 고발

⇒ 법 제35조(원상회복) 개정

-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수단 마련

-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하여 공유수면 보호 취지의 실효성 확보

- 원상회복명령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하고,
- 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금액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최초 이행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2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 수차례의 원상회복을 명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을 납부하고 불법 건축물이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사례 방지

⇒ 법 제35조(원상회복) 개정

- 경과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 확보

- 불법 개발 건축물 및 토지 등을 양수한 자의 원상회복 의무규정 등의 법령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시간적 한계, 효력에 관한 조치 등)을 두어 준수자의 혼란 방지 및 법의 실효성 확보
- 급격한 법적 상태의 변경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고 법률 준수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기회를 주고

-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신법규정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신·구법 사이의 관계설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연계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법에 반영



평가대상 조문 3

매립법 제11조 (면허의 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립법 시행규칙 제12조 (매립으로 인한 피해예상구역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에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라 함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매립법 시행규칙 제3조 (면허신청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협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신청구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 (포락지의 조사기관 등) ①규칙 제2조제2항제9호 나목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별표1의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말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락지임을 조사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의 예시를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포락지조사 증명방법의 예시를 감안하여 포락지임을 조사·증명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1의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현 황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제6조제1항 관련)

지정기관	소 재 지	지정번호	비고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 68	제99-1호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제99-2호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제99-3호	
여수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산 96-1	제99-4호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제99-5호	
제주대학교 해양연구소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3288	제99-6호	
한국해양연구소	경기도 안산시 사동 1270	제99-7호	

- 비고 : 1. 상기 기관의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으로서 지정기간은 이 규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기간 연장시에는 이를 별도 고시한다.
2. 상기 기관이외에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추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고시한다.

-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지정의 예시(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고
1. 분 야	해양지질 및 측량분야의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2. 조사인력	가. 해양지질 및 측량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 나. 해양지질 및 측량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	각 1명이상 각 2명이상
3. 장 비	가. 정밀위치 측정기 나. 조석관측기 다. 정밀 수준측정기 라. 유속관측기 마. 해저지질 또는 퇴적물 채취기 바. 시료분석기 사. 음향측심기(echo sounder)	1기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비고 : 1. 제3호의 장비는 포락지의 조사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정확도와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 제2호 조사인력란의 내용 중 나목의 해양지질 및 측량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는 가목의 해양지질 및 측량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대체할 수 있다.

• 포락지조사 증명방법의 예시(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1. 자료조사	조사지역에 대한 역사적 기록, 항공사진, 위성영상
2. 지형조사	가. 과거의 지형과 현재의 지형을 비교하여 해안선 변화를 조사 나. 조사지역 지반이 지진 · 해일 · 폭풍 등에 의해 붕괴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시 또는 과학적 조사 다. 인근지역과 붕괴지역의 토양 · 암반의 동질성 확인조사 라. 필요시 인근지형에 대한 수준측량 실시
3. 해저지질 및 퇴적물조사	가. 조사지역의 수심측량(필요시 해면하에 잠긴 지형임을 판단할 수 있는 수심 및 해저지형 조사) 나. 해저지질 또는 퇴적물을 표본채취하여 지형매물 여부를 확인 · 조사(필요시 해당지역 토석의 층서 또는 부정합면의 조사)
4. 침식 및 퇴적현상 조사	해수의 장기적 유동에 의해 해안의 침식 또는 퇴적하는 현상조사(조사구역 주변의 지형고저 측량, 필요시 수면에 잠긴지역을 수심측정에 의한 지형조사 및 조류 · 해류 · 파랑 등의 조사)
5. 지적측량 조사	가. 지적도에 사용한 좌표계에 의해 정밀위치 측정기로 정확한 위치를 조사하여 지적도의 오류여부를 조사 나. 조사지역의 측량기준점에 의해 새로 측량한 성과와 지적성고를 비교 하여 필요한 면적과 경계를 조사(조사지역 토지의 경계측량을 포함한다)

※ 관련법령 : 「수산업법 및 동 시행령」제62조(손실액의 산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2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 등)

수산업법 제62조 (손실액의 산출)

법 제81조(보상) 및 이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I. ~ III. (생략)

IV. 어업별손실액의 산출기관등

1. 어업별손실액의 산출기관

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행정기관 :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어업별손실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나. 전문기관 :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어업별 손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2. 전문기관에 의한 손실액의 산출 등

가. 행정관청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손실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하되,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액을 부담할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용역조사 및 손실액평가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손실액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신청이 없는 경우등 용역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용역 조사 및 손실액평가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조사나 손실액평가를 의뢰받은 자(이하 "조사평가자"라 한다)는 신빙성 있는 어업경영에 관한 증빙자료나 인근 동종어업의 생산실적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평가하여 손실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다. 조사·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손실액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평가자에게 조사 또는 평가에 관련된 증빙자료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평가자는 요구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조사·평가를 의뢰한 행정관청 또는 수익자는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조사 또는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조사 또는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조사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자의 조사 또는 평가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평가자에게 손실액의 조사 또는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손실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마.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용역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다음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손실액산출을 위한 용역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조사하였을 때
 - (2)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할 때
-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가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조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아.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산출에 관한 조사 또는 평가를 의뢰받은 조사평가자나 조사평가를 의뢰한 수익자는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행정관청, 어선의 출·입항 신고기관,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관련서류의 열람·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자.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평가자 또는 수익자가 행정관청에 서류의 열람·발급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의뢰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 (2) 열람 또는 발급하고자 하는 목적
- (3) 열람 또는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
- (4) 열람·발급이 필요한 서류 또는 공부의 종류 및 수량

차.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된 것외에 용역조사 및 손실액평가의 의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2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 등)

- ①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이유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인적사항(이력서 및 최근 3년간 손실액의 조사실적 등을 포함한다)
 3.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방법
 4. 손실액조사에 사용하는 어선 어구 등 장비의 종류 및 조달방법
 5.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손실액 조사실적(해당자에 한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기관을 손실액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 7 4)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조사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④ 손실액조사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자료 2부를 작성하여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의 근거법령
 2. 손실액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3.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4. 손실액 조사기간
 5. 어업별 손실액 및 그 총 손실액

6.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명칭별 또는 양식방법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근거법령
 7.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조사에 사용한 어선 어구 등 장비의 종류
 8. 어업별 손실액조사에 따른 조사경비 및 수수료 내역
 9. 기타 손실액 조사에 필요하다고 행정관청이 정하는 사항
- ⑤ 행정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액조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면허 발급시 매립목적의 적합성, 규모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첨예한 대립으로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민간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영향조사서 작성대행

(3) 부패유발요인

- 공유수면 매립적합성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부실 작성 및 불성실한 검토로 부당하게 면허를 발급
- 공유수면 매립면허 발급시 매립목적의 적합성, 규모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첨예한 대립으로 관련분야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피해영향조사서 작성대행
- 영향조사의 본질적인 문제점인 미래효과의 예측·분석의 적정성, 매립 이후 공유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의 사후검증시스템 불비
- 개발주체의 용역의뢰로 발주자의 의도가 반영될 우려가 있는 등 매립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의 이해관계에 의한 담합 등으로 매립 및 점·사용 합리화를 하는 등 부실한 영향평가 우려
- 평가서 허위·부실작성에 대한 처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구체적인 허위·부실 판단기준 미비

(4)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 제출전 어업피해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마련
 - 평가서 제출전 매립면허신청자와 평가대행자가 평가서 작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제출하도록 체크리스트 마련 · 보급
 - 평가서를 제출받은 관할청은 조사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신뢰성 확보
 - ※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손실액의 산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2(손실액 조사기관의 지정 등)를 개정하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에서 이를 준용
 -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근거법령인 수산업법에 어업손실액을 산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관계자 제재규정 마련
 -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의 세분화(구체화)
 - 피해영향조사서가 부실 또는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향후 조사기관은 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참여자는 일정기간 피해영향조사 참여 배제
 - ※ 현재 수산에 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제재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조사하였을 때와 ②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할 때 기관 지정 취소 외에는 제재규정이 없음
- ⇒ 수산업법 제81조(보상)를 개정하고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이를 준용

-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

- 공무원이 아닌 자는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

-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손실보상, 피해영향)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됨

- ※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 법령(예시)

- ▷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형법」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규제개혁위원회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도시계획위원회 〉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4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형법」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토지이용규제평가단 〉

- ⇒ 수산업법 제81조(보상)를 개정하고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이를 준용

- 피해영향조사기관 및 관계자의 성실의무 규정 마련

- 피해영향조사기관 업무 수행자의 회피제도 마련

- 본인 또는 친족과 관련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피해영향조사 금지

- 용역수수료와 금품수수 금지규정 마련

· 피해영향조사기관 및 업무수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 수수 금지

-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 등의 체계적인 관리 규정 마련

⇒ 수산업법 제81조(보상),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2(손실액 조사기관의 지정 등)를 개정하고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이를 준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의2. 평가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벌칙)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가액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7조 (성실의무 등) ①감정

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평가대상 조문 4

법 제24조 (매립지의 사용)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까지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매립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제21조의2(매립지의 사용확인) 매립관청은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전에 한시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매립지의 사용목적 및 사유
2.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서
3. 매립지의 사용 후 원상회복 계획서

법 제25조 (준공인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부패통제 장치

(2) 부패유발요인

- 세금포탈 등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준공전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매립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고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조세(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납부하여야 함
 - "한시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가능성이 있어 매립면허자에게 특혜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국고 수입이 줄어들어 부패발생 가능성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전 사용승인요건 구체화·객관화
 - 공유수면 매립에 한정하도록 하는 등 사용목적을 구체화하여 조세포탈 등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 ⇒ 시행령에 관련 규정 신설
- 준공인가전 사용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 준공인가전 매립지는 여전히 공유수면상태이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사용료를 부과
 - ⇒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개정
-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 및 매립지 재평가 후 소유권 등기 등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 철저

- 면허관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 및 매립목적변경 승인 후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규정 마련

※ 「국유재산법시행령」제6조(등기·등록 등)에서 국유재산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3월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

- 면허관청은 매립지 관할 세무서, 등기소 등 관계관청에 매립지 준공인가 등을 통보하여 조세회피가능성을 차단

※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촉탁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물권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촉탁관서를 지정하는 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이를 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행하도록 지정

⇒ 법 제2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3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개정,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에 관련 규정 신설



평가대상 조문 5

법 제2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하 중략)

법 제3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③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는 변경인가일부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부패유발요인

- 잔여매립지 매수청구자의 실수요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실수요자가 아닌 자의 매수청구시 판단기준이 없어 재량의 자의적 행사가능성이 높음
- 매수청구시 "국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불확정 개념을 두어 매수청구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잔여매립지 매수청구시 판단기준 명확화
 - 국가 등에 귀속된 매립지를 매립한 자가 매립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 잔여매립지 및 재평가매립지 매수청구시 거절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법 제2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등), 제3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개정



평가대상 조문 6

법 제29조(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영 제24조(매립목적변경의 인가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변경의 인가신청을 받은 면허관청은 신청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부패유발요인

-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규정"이 불명확하여 재량의 자의적 행사 가능
 -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체 매립지의 몇%인지 불분명하고,
 -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에서 관련법령은 어떤 법령인지 명료하지 않으며,
 - 매립목적 변경이 필요하면 매립지 전 지역 또는 일부만 변경 가능한지 판단기준이 없음
 - 특히, 매립목적 변경이 주변여건의 변화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매립목적 변경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재량규정을 명확화

- "매립지의 일부"는 전체 매립지의 몇%인지 예시
 -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에서 관련법령을 구체적으로 예시
 - 매립목적 변경이 필요하면 매립지 전 지역 또는 일부만 변경 가능한지 판단기준 마련
 -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매립목적의 변경사유를 구체화
- ※ 예시 : 매립목적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됨으로써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



평가대상 조문 7

법 제32조(면허의 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 하거나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제거 또는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 기타 처분을 받은 경우
2. 매립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3.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제26조(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는 매립공사의 조치)

- ① 면허관청은 예정공정과 대비한 실적공정이 100분의 80미만인 매립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공정을 달성하도록 상당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구에 불구하고 전체공정이 100분에 30 미만으로서
 예정공정과 대비한 실적공정이 100분의 30 미만인 매립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공사로 보아
매립면허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2) 부패유발요인

- 매립면허 취소사유에 대한 재량규정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부족
 -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에서 상황변경 및 사정변경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며,
 -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또한 면허·인가의 취소·변경,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제거 또는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은 어느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3) 검토결과 : 개선의견

- "공유수면 사정변경"과 "공익"이란 불확정 개념을 예시를 통하여 재량규정 명확화
 - ※ 예시 : 매립목적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경우 과도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됨으로써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

2006. 3.16. 선고 대법원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하였거나 고려하였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이하 중략)

- 모호하고 과잉금지의 우려가 있는 조항 개정
 -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제재처분을 하는지 명확히 규정
 - 법 제34조제5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와 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의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공사로 보아 매립면허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조항을 명확화 · 구체화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법 · 명령 · 처분위반사항을 명시
 - 기타 필요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명시
- ⇒ 법 제32조(면허의 취소 등) 개정



기타의견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미 규정된 벌칙 규정을 신설
 - 과태료, 벌금,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처벌 강화
-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 및 연안관리 업무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일련의 업무로 법을 각각 제정 · 운용할 실익이 미약함으로 공유수면 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 · 연안관리법을 효율적으로 통합 제정할 필요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기초자치 단체의 예산 및 자치단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행정대집행 기구 필요

- 문제점 : 불법형질변경, 불법시설물 등의 원상회복을 전담하는 예산과 인력 확보 부재, 지자체(특히 농어촌)의 연고문화 특성, 자치단체장의 향후 선거를 대비한 선심행정 등으로 시정명령, 소액 과태료, 법원도 소액 벌금 부과를 반복하고 위반자는 지속적으로 불법영업하고 있음

- 실 태 : 위반자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불법 토지 및 시설물 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

- 개선안 : 국가차원의 특정 공직유관단체를 설립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산재되어있는 원상회복조치를 전담토록 하여 원상회복 실효성 확보(예산은 원인자 부담)

※ 제도개선과제로 추진할 필요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관련법령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위원회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 필요

제3절

도로 점용 · 연결 허가 관련 법령 평가

1

개 요

도로 점용·연결허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분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불명확한 허가기준, 복잡한 허가절차, 점용료 부과·징수의 투명성 결여 등으로 인한 재량권남용 및 부패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측량설계업소 대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토대로, 허가의 기준·절차 명확화,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기준 법제화, 신설도로 공사구간 내 연결허가기준 마련, 점용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2006. 12. 26)

가. 과제선정 배경

- 복잡한 허가절차 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사례 빈발
 -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거부 및 과중한 부담부과로 민원인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
 - ※ 정당한 이유없이 인·허가를 누락처리한 공무원 30명 적발('04년, 감사원)
- 청렴도 측정결과 도로점용 관련 잠재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05년 : 7.7점)
 - 특히 허가기준·절차의 현실성(5.98점)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이익제기의 용이성(4.9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나. 도로 점용 현황

-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으로 구분
 - 도로를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특히, 기존도로에 다른 도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함
 -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도로부지를 사용할 경우 도로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부과·징수

● 관련 법령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 지자체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2005년도 점용연결허가 현황 : 65,988건
 - 고속국도 422건, 일반국도, 1,276건, 지방도 64,190건
- 도로점용료 부과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 2005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 219,614건, 148,222백만원

다. 설문조사 실시현황

●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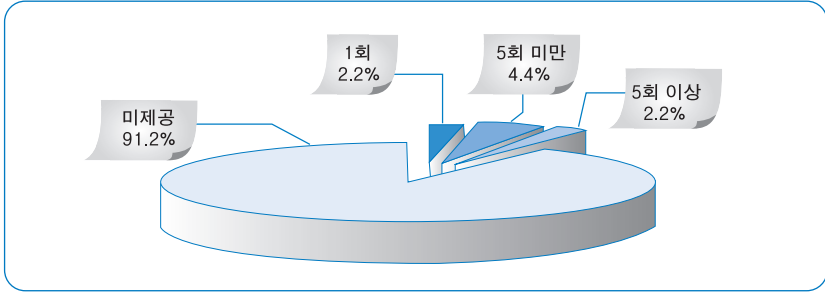
- 조사목적 : 도로점용허가신청 대행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상의 부패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대책 마련시 활용
- 조사대상 : 측량설계업소 대표자
- 조사항목 : 지난 3년간 금품 · 향응 제공경험 등 10개 항목
 - 금품 · 향응 빈도 및 규모는 횟수 · 금액에 따른 구간척도 사용
 - 기준 · 절차의 현실성 등 5개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
- 조사방식 : 우편조사(위원회 직접수행)
- 조사기간 : 2006. 10월 ~ 11월(1개월)
- 총 1,406개 설문지를 배포하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51개를 제외한 1,355개 설문지중 회수된 181개(회수율 13.4%)에 대해 분석

※ 본 조사는 청렴도 측정과 달리 조사대상자를 민원인이 아닌 업무대행자로 한정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지난 3년간의 경험 · 인식을 토대로 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분석

- 도로점용 · 연결허가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제공 실태
 - 총 응답자의 8.8%가 지난 3년간 도로점용 · 연결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1회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답변

- 또한 그동안 5회 이상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자가 2.2%에 이르고 있어 일부 업체의 금품·향응 제공은 관행화된 것으로 판단



- 금품·향응제공 이유

- 금품·향응 제공경험자(12명)를 대상으로 제공이유를 분석한 결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가 12건으로(75%)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총 응답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관련정보수집 등 업무편의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 타
16개	12개 (75%)	2개 (13%)	1개 (6%)	1개 (6%)

- 금품·향응 제공경험자의 금품제공 규모

- 1회당 금품·향응 제공금액은 20~50만원이 총 제공자 16명중 7명(44%)으로 가장 많음

총 응답수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50만원	50만원
16개	4개 (25%)	3개 (19%)	7개 (44%)	2개 (12%)

• 허가기준 및 절차의 현실성(용이성)

- 총 응답자의 46%가 도로점용 · 연결허가의 기준 및 절차가 복잡하고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어 기준 ·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12 (7%)	33 (18%)	52 (29%)	54 (30%)	30 (16%)

•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 총 응답자의 43%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32(18%)	46(25%)	39(22%)	27(15%)	37(20%)

• 이의제기의 용이성

- 총 응답자의 57%가 도로점용 · 연결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어 의견수렴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4 (3%)	18(10%)	55(30%)	64(35%)	4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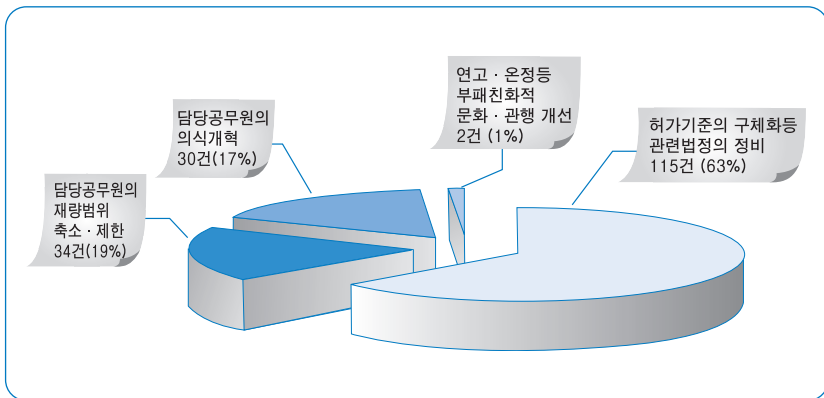
•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 총 응답자의 41%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절차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총 응답수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181	17(10%)	31(17%)	58(32%)	56(31%)	19(10%)

•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선 추진과제

-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허가기준의 구체화 등 관련법령의 정비”라고 답한 사람이 115건(63%)으로 가장 많았음



가. 허가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

-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거부 빈발
 - '05년 점용허가 신청 2,570건 중 591건(23%)이 불허가(건설교통부)
 - ※ 허가신청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3%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반려사유 예시(○○○국도유지)

-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무단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
- 배수처리가 불량하여 물고임 현상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음
- 곡선반경이 작아 교통사고 및 도로유지관리에 지장 초래
- 도로면 배수로의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등 배수불량 우려

- 정당한 사유없는 반려·보완요구로 민원인의 과중한 부담초래
 - '05년 연결허가 신청 1,979건 중 729건(37%)이 보완(건설교통부)
 - ※ 허가신청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7%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등 불만 팽배

◆ 서류보완사유 예시(○○○국도유지)

- 옹벽의 기초는 도로법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전도·활동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지반 이하에 설치하고, 구조검토서 작성 제출
- 가속차로의 법면부분 도로부지도 점용면적에 포함하고 구적도 등 재작성
- 인접 기허가자의 도로부지 공동사용 동의서 제출 요구
-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잔여부지에 녹지조성 요구

나. 측량설계업자 등 대행업소를 연결고리로 하는 부조리 발생

- 도로점용 허가업무의 특성상 도면제출이 필수적이며, 획일적인 허가기준 설정 곤란으로 설계도면 등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를 측량업자 등이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 허가신청 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지난 3년간 허가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율이 8.8%로 높게 나타나는 등 부패가 관행화
 - ※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3년부터 ○○도 ○○시 ○○읍에서 무허가 부동산건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3년 10월 ○○시 ○○읍 이모씨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중(2005.1.18. ○○뉴스)

다. 부당한 부담금부과 및 비현실적인 허가기준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점용허가를 하면서 일부 국토관리청의 경우 점용구간의 도로시설물 훼손비를 피허가자로 하여금 시공사에 납부토록 부당하게 부과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부과하는 등 집행의 일관성 결여
 - 같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부과하는 반면 강원·부산·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미부과
- 지방자치단체의 연결허가조례 등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도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변속차로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 행정관청의 불법적인 허가행위 및 민원발생 야기

※ 주유소 · 진입로 설치목적의 도로점용 · 연결허가를 위하여는 최소 180m의 가 · 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함

라.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기준 불명확

- 점용료산정시 점용대상 부지의 인접토지 공시지가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점용료를 낮추기 위하여 인접하지 않은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인접토지중 토지가격이 싼 일부토지만을 대상으로 점용료 산정
 -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 점용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정산식에 따라 점용료를 재산정하고 있으나
 - 조정산식이 복잡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산정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불신 초래
- ※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10/100 + (증가율-10/100) × 3/10}}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 감독 소홀

- 일부 지방국토관리청은 불법도로점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도로점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05년 건교부 감사 지적)
- ※ ○○시 등 30개 시 · 군에서는 관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 총 2,135개소 중 37.5%인 810개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04년 경기도 감사지적)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점용공사 완료 확인을 받지 않은 허가건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사후 관리·감독 소홀

※ 점용공사 완료 미확인 : ○○지방국토관리청 98건, ○○국도
유지건설사무소 105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106건('05년 건교부
감사지적)

총 합 평 가 의 건

1) 평가결과 : 개선권고

- 도로점용 · 연결허가 관련법령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권고

※ 당초 32건의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5건의 개선의견을 확정

2) 평가대상법령

-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자치단체조례)
-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3)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중점 검토항목	평가결과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7개항목	개선의견 7건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	-
	1-3. 특혜발생 가능성	1개항목	개선의견 1건
2. 재량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명확성	8개항목	개선의견 8건
	2-2. 재량범위의 적정성	-	-
	2-3. 재량기준의구체성 · 객관성	3개항목	개선의견 3건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2개항목	개선의견 2건
	3-2. 예측가능성	1개항목	개선의견 1건
	3-3. 부패통제장치	3개항목	개선의견 3건
조치기한	2007. 6. 30. 까지 (단, 법령개정 사항 및 영역이 수반되는 사항은 '07. 12. 31. 까지)		

1) 도로점용허가 분야



세부평가 1 : 도로점용 · 연결허가 대상 및 절차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 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 · 전선 · 변압탑 · 공중선 · 우체통 · 공중전화 · 무선전화기지국 ·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 하수도관 · 가스관 · 송유관 · 전기통신관 · 송열관 · 에스양카 · 작업구 (맨홀) · 전력구 · 통신구 · 공동구 · 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삭제 <1999.8.6>
 4. 주유소 · 주차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자동차수리소 · 승강대 · 화물적치장 ·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 ·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삭제 <1999.8.6>
 8. 간판 · 표지 · 깃대 · 주차미터기 · 현수막 및 아취
 9. 공사용 판자벽 · 발판 ·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 주차장 · 광장 · 공원 ·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1.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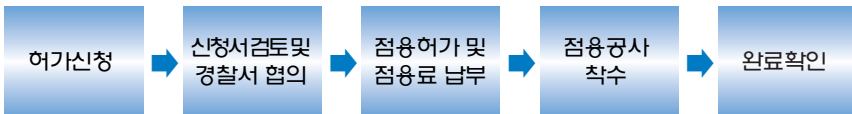
- ②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

〈허가절차〉



- 특히 국도, 지방도, 4차선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다른 도로 (진·출입로 등)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하여 도로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함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와 제54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득한 것으로 봄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 및 제54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3) 부패유발요인

- 도로법에서 점용허가(도로법 제40조)와 연결허가(도로법 제54조의6)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위임하지 않아
 - 민원인이 동일한 허가 건을 가지고 도 건설사업소 및 기초자치단체 허가부서를 각각 별도로 접촉하게 되는 등 허가부서 공무원의 대국민 접촉기회 증대로 인한 부패발생소지 내포
- 충청남도의 경우 지방도에 대한 연결허가는 도 건설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점용허가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아 연결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도 건설사업소로 진달하여 연결허가를 득한 다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
- 전라북도는 민원편익을 위한 혁신의 일환으로 도로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을 각 시군에 위임, 허가기관을 일원화

〈도로연결허가 불철저 사례〉

- ○○시는 2004년부터 2006년.9.까지 도로점용 허가된 1,388건 중 근린 생활시설 · 공장 · 주유소 등에 대한 진 · 출입로 목적의 점용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면서
 - 지방도급 이상도로에 연결하는 35건에 대하여는 ○○남도 건설사업소에 연결허가신청서를 진달하여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다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한 반면
 -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에 연결하는 1,353건에 대하여는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 및 가 · 감속차로의 길이 등에 대한 검토없이 도로점용허가
- ※ 위 시는 점용허가는 건설과, 연결허가업무는 도로과에서 각각 담당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득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조항 신설
- 〈예시〉 도로법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 ⑤ 제2항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세부평가 2 : 도로점용기간 및 연장 절차

도로법시행령 (별표 1) 도로점용기준

2. 점용기간

제24조제5항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서 도로의 점용기간을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10년 또는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함

시설물 종류별 점용기간

점용기간	대상 시설물	비고
10년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 등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통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 등 -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휴게소 등 - 철도·궤도·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등	
3년	-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등 - 공사용 편지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등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 점용기간은 일반시설물과 동일하게 적용
-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받아야 함

(3) 부패유발요인

- 공익목적 및 주택·진·출입로의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점용물의 내용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국민불편 초래 및 행정력 낭비

- 주택의 경우 주민대표 또는 아파트건설업자가 교체·변경되면 점용승계자·잔존자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법점용이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도로관리청에서는 공익목적의 도로점용 및 개인주택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 공장,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는 데도 점용허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점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나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이 없음

- 점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서식, 제출서류, 처리기간 등

※ ○○ 및 ○○지방국토관리청 관내 7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89.12.22.~ '01.2.13.까지 도로점용허가한 주유소진입로 등 1,662건이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최장 6년7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04. 건교부 감사지적)

※ 허가신청 대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허가기준의 구체화 등 관련법령의 정비"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응답자의 63%로 가장 많음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주택 진입로 및 공익목적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기간을 영구로 개선(현행 10년⇒영구)하거나, 기간만료시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허가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개선
- 도로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마련
 - 연장허가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시기 및 처리기간 등



※ 해당없음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명확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도로점용면적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점용허가 신청시 점용면적을 도면에 표시하고 구적기로 점용면적을 산출하여 신청서에 기재하고 있음
 -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대한 기술검토시 점용면적의 적정성 항목을 검토하고 있으나
 - 진·출입로 등 점용하고자 하는 면적과 점용공사를 하기위한 일시점용면적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서로 상이하게 운영

(3) 부패유발요인

- 점용공사를 하기 위해 일시점용하는 비탈면 등을 점용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판단·적용
 - 점용공사를 위해 일시점용이 필요하지만 공사완료 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점용면적을 포함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피허가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산10번지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연결허가 신청(신청자 : 박종철, '05.2.28)에 대하여

- 도로점용허가 신청면적을 산정하면서 가·감속차로 부분 1,752㎡와 조경지(도로와 사업부지 구간의 사이 도로부지) 1,412㎡를 포함하여 총 3,164㎡에 대하여 점용허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29-23번지에 대한
농산물 집하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03.10.28.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영구점용 면적 1,696㎡과
일시점용면적 221㎡을 구분하여 허가

- 도로점용면적 산정시 본선 길어깨 부분 포함여부가 불명확해서 기관
별로 임의적으로 판단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1133번지의
8필지 629㎡(신청인 이윤호)에 대하여 도로점용면적에 본선 길어깨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청한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한 반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1159-1번지의 11필지
2,166㎡(신청자 김두이)에 대하여 본선 길어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신청서가 적정하다고 검토하여 허가

※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창녕군 계성면 관계리 1258-8번지의
1필지상의 단독주택 진·출입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신청(김학룡)에 대하여
도로점용면적 산정시 본선 길어깨 포장부분을 제외하도록 보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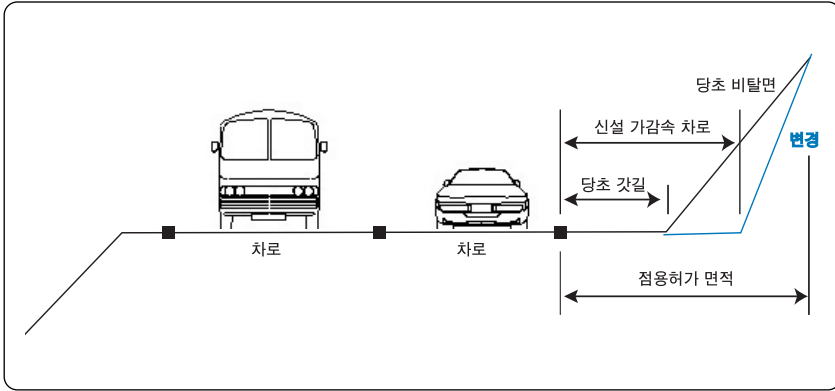
※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35호선 경북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81-2번지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 기 설치된 길어깨(B=3m)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므로 도로 점용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보완요청(2005. 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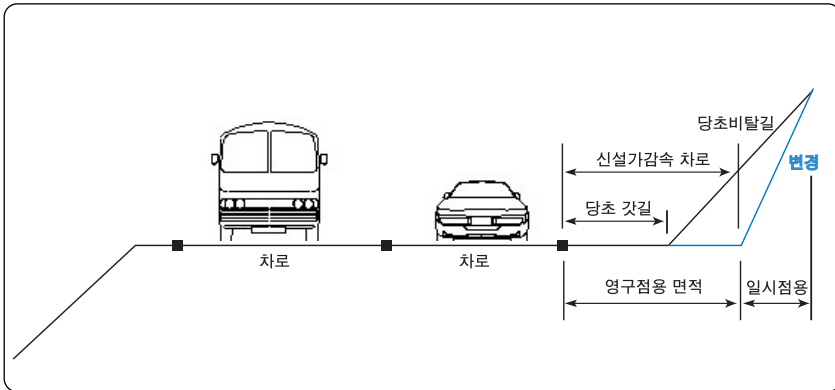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 점용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점용공사기간)으로 점용하는 부지
및 본선 길어깨 부분을 점용면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

현행



개선



세부평가 4 : 기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기준

도로연결허가 공동사용 관련 처리기준(건교부지침, '03.11.28.)

- 기존 도로점용자가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 거부시 신규 신청자가 적정 시설비 분담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
- 공동사용 진출입로의 공사비에 대한 시설별 분담처리요령 방안 마련
 - 연결로를 구성하는 구조물별 물량에 공종별 단가를 적용 공사비 산출
 - 산출한 공사비에 낙찰율 88%(최적낙찰율)을 곱하여 적정 공사비로 활용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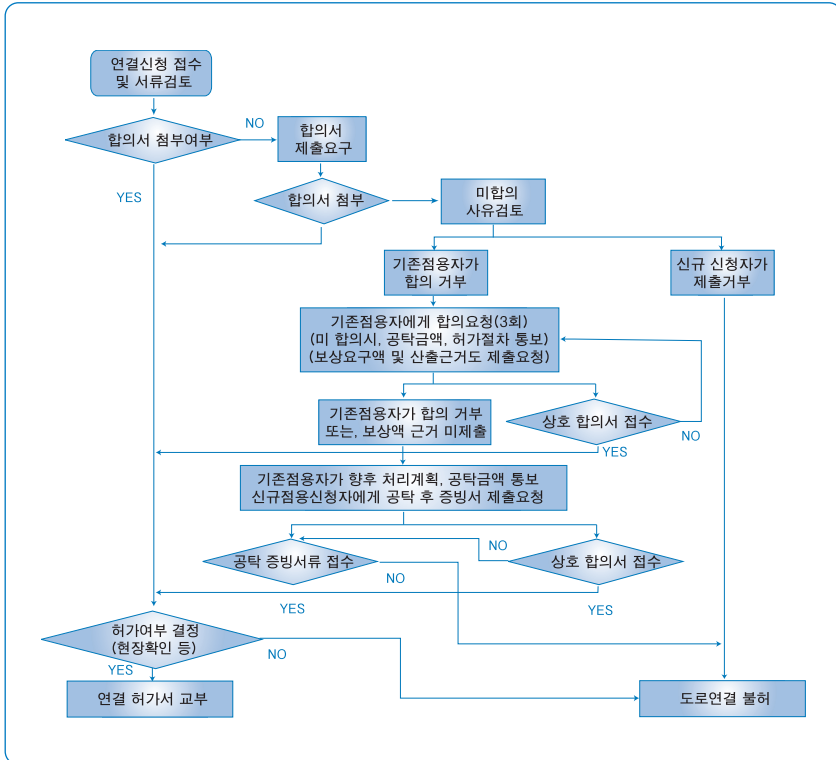
- 각종 사업장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연결허가시 새로운 점용 및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있음

※ 도로부지에 대하여 피허가자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 토지소유자의 사유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후 인근에 새로운 점용 및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대구국도유지, 허가조건)

- 건설교통부는 "진·출입로(변속차로)의 공동사용 관련 처리기준을 마련(03. 11. 28.)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음
 - 기존 도로점용자가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 거부시 신규 신청자가 적정 시설비 부담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도로연결허가
 - 공동사용 진·출입로(변속차로)의 공사비에 대한 시설별 부담처리 요령 마련 등



도로연결허가 공동사용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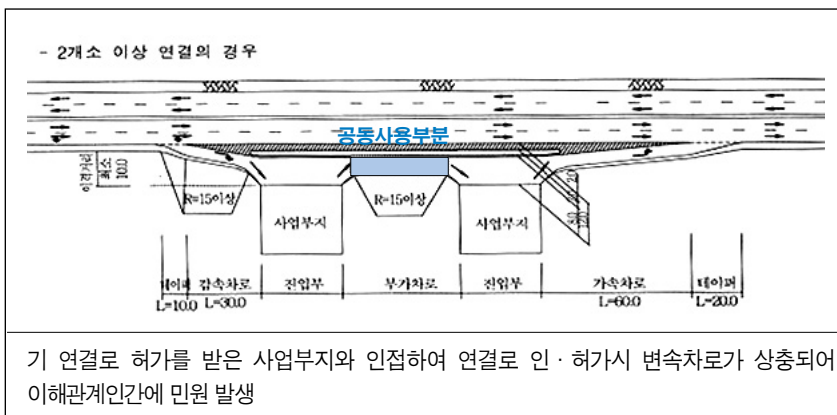
- 도로관리청에서는 신규 도로점용 신청구간이 기존 점용허가 구간과 연결로의 중첩(공동사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기존 도로점용허가자의 공동사용 합의를 제출한 경우에만 허가해 주고 있음

※건교부 질의회신(2006.6.28.)

- 연결로의 변속차로가 중복될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부지일 경우에는 점용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기존 점용허가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이해당사자간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3) 부패유발요인

- 신규 도로점용허가 신청구간이 기존 도로점용구간과 연결로의 중첩(공동사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점용자의 공동사용합의서가 필요하나
 - 기존 도로점용자가 연결로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허가지연 및 경제적 부담 증가
 - ※ 기존 도로점용 허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1,299m²)에 대하여 기허가자에게 수차례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기허가자가 성실한 협의를 거부하여 수개월간 허가가 지체, 결국 200만원과 점용료 분담이라는 조건하에 동의(○○국도유지건설사무소)
 - ※ 기 점용허가자의 공동사용 동의거부로 인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성관이 자신 소유의 여관 영업 및 매매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동의를 거부하자
 - 2004. 11. 19. 부산지방법원에 시설비분담액으로 산정된 금 5,948,000원을 공탁하고 사무소로부터 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음(○○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기 허가받은 점용구간을 점용면적 및 시설물의 변경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기허가 받은 허가자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지에 대한 판단기준 미비
 - 기점용자가 부담한 도로시설 설치비용을 신규 공동 사용자에게 분담시킬 경우 분담금 산출방법 및 분담절차 등이 미비하여 기점용자와 신규 공동사용자간 시설비 분담액을 둘러싼 분쟁 발생
 - ※ ○○지방국토관리청은 "○○○간 도로신설공사" 구간에 ○○○외1인이 '03. 2. 20. 기 허가받은 1,645㎡(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하여
 -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05. 8. 16. 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동일 허가지에 대하여 점용기간이 서로 다름(점용 허가서를 만들기 위하여는 수백만원의 비용 소요)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 공동사용에 대한 허가기준, 점용료 분담방법 등
 - 동일한 점용구간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

-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 의무규정에 대한 근거 마련
 - 현행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점용허가지의 공동사용의무에 관한 규정을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



세부평가 5 : 부패통제시스템

◆ 도로법 제8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11.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12.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 도로법 제86조의2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1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2.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1995.12.6>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부패통제장치

(2) 운영실태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82조)
 -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자
 -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도로법 제86조의2 제1항)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의 징수)에 따르면 도로법 40조의 규정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3) 부패유발요인

-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납부 후에도 허가내용이 계속하여 유효한지 여부가 불명확

※ 국가계약법의 경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지정,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와 허가없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자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벌금부과가 일회에 한하는지 아니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이 불명확

- 불법점용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지방국토관리청은 불법도로점용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도로점용 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음('05년 건교부 감사지적)

◆ 수원시 등 30개 시·군에서는 관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 안내표지 총 2,135개소 중 37.5%인 810개소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04년 경기도 감사지적)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및 대구·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도로점용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 확인을 받지 않은 도로점용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또는 강제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4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03년도 도로점용허가가 종료된 401건 중에 204건은 기간연장, 28건은 원상복구 등 적정 조치를 하였으나, 169건에 대해서는 도로원상회복 지시 등의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건교부 감사지적)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후 점용공사 완료 확인을 받지 않은 허가건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사후 관리·감독 소홀

※점용기간만료 원상복구 미확인 548, 점용공사완료 미확인 309(건교부 감사지적)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불법점용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에 대한 절차 및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2) 도로연결허가 분야



세부평가 6 : 도로연결허가 및 보완·반려 기준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 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 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 가. 「도로법」 상의 도로
 -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 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명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과 공개성, 부패통제장치

(2) 현황 및 운영실태

-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연결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도로법 제22조(도로관리청)

- ①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에서는 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금지요건을 규정
 - 지방도 및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연결허가 금지구간(충청남도 연결허가 규칙 제6조)

- ① 곡선반경이 28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구간
- ②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 ③ 충청남도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 가. 도로법 상의 도로
 -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 ④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 ⑤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⑥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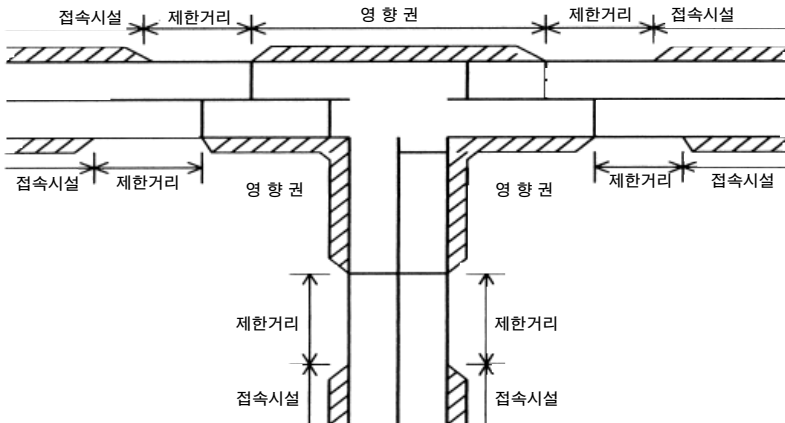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 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서만 연결허가 제한하는 등 연결허가 금지조건을 완화

(3) 부패유발요인

-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 "도시지역",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판단기준이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 판단 · 적용 가능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제36조)

- 건설교통부 연결허가규칙 제6조 제3항에서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서는 연결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차로"에 대한 정의 불명확

– 도로와 "도로 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때에도 연결허가를 금지하는 교차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불비로 재량권 남용 소지 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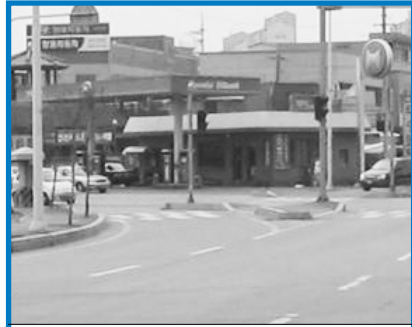
※ 건교부 연결허가 규칙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 ③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지방도 356호선 원흥삼거리
교차로 영향권내 연결로 설치



지방도 356호선 덕아삼거리 주유소
교차로 영향권내 연결로 설치

- 시가지내에 연결허가를 하면서 건설교통부 연결허가규칙에서 정한 변속차로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인접토지의 진입도로를 침범하게 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움

※ 도시내의 4차로 도로에 주유소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위하여는 최소한 180m의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함

- 도로점용 허가업무의 특성상 도면제출이 필수적이며, 획일적인 허가기준 설정 곤란으로 설계도면 등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류를 측량업자 등이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발생
 - 측량설계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지난 3년간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율이 8.8%로 높게 나타남

※ 검찰에 따르면 J씨는 2003년부터 ○○도 ○○시 ○○읍에서 무허가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3년 10월 ○○시 ○○읍 이모씨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중(2005.1.18. ○○뉴스)

- 실태조사결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연결허가를 불허가 하거나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허가 처리한 사례 다수

<도로관리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연결허가 불허가 사례>

※ 설문조사 결과 43%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고 있다고 답변

- 1 신청지는 도로와 인접하여 도로확장계획 및 안전사고우려 및 미관저해
- 2 신청지는 마을진입도로와 국도가 연결된 구간으로서 차량의 엇갈림 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2004. ○○국도유지)
 - 신청인이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도로연결 및 점용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04. 11. 1) 하자,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 3 신청지는 우측으로 굽은 곡선구간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점으로 곡선반경이 작아 진행방향의 차량에 대한 시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교통사고 및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함(2005. ○○○국도유지)
 - 곡선반경에 대한 법적기준 및 신청지의 곡선반경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추측에 의한 판단으로 불허가 처리
- 4 신청지는 마을도로 및 본선(국도)도로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부지와 접한 도로중 한 개소만 이용하여야 하며, 국도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마을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제출된 계획으로는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2006, ○○국도유지)

※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따른 규칙운용 관련업무 지시(건설교통부, '05.5.31.)

- 국도변의 도로점용(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도로점용(연결)허가신청시설이 국도 본선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폐도 등 다른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할 수 있는 경우
- 동 사유만으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위배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본선으로의 직접연결을 불허하는 사례가 있으나, 동 규칙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국도에 직접연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위와 같은 사례의 도로 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동 규칙에서 정해진 변속차로 확보 불가능구간, 연결허가 금지구간 등의 규정에 위배될 경우에만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불허해야 할 것임

- 5 신청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용천~설악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구간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점용허가 여부는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검토가 가능(2005, 00국도유지)
- 6 신청지는 본선차로와 분리하여 농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비포장부체도로로서 주유소 설치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 부적합함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2005, 00국도유지)
- 7 신청도면대로 설치할 경우 법면 부등침하 및 균열발생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법면유실 우려가 높으며, 집중호우 및 강풍 등으로 인하여 이동통신중계기 전도시 도로로 유입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불허(2005, 00국도유지)
- 8 허가신청 토지가 장산교차로에 근접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 및 교통흐름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교차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진·출입에 필요한 최소 폭으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함(2005, 00지방국토관리청)

<보완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연결허가 불허가 사례>

- ※ 설문조사 결과 56%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

- ❶ 도로부지를 농경지로 이용하게 될 경우 신청지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측구가 유실되거나 토사의 퇴적으로 동 측구의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등 배수불량의 우려가 있어 도로점용허가가 곤란함(2005, ○○○국도유지)
- ❷ 제출된 계획과 같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무단으로 차량이 진 · 출입할 것으로 예상됨(2005. ○○○국도유지)
- 차량진입 금지시설 설치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허가
- ❸ 신청도면대로 설치할 경우 법면 부등침하 및 균열발생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법면유실 우려가 높음
- ❹ 점용목적에 적합한 가 · 감속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제출된 진 · 출입 계획은 단순 가각정리형태로서 기준에 부적합하여 일건 서류를 반려(2005, ○○○국도유지)
- ❺ 가 · 감속차로 설치가 절토법면의 일부 사면을 절취하여 사업부지 연결도로(L=180m정도)가 설치됨에 다른 사면의 불안정 등 도로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❻ 사유지보호를 위한 배수처리계획은 사업부지내 배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함이 타당하고, 신청사항(홍관600mm, 25m매설)과 같이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도로측구에서 나온 우수 등의 배수처리가 불량하여 물고임 현상 및 도로결빙이 발생할 수 있음
- 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43호선 광주시 오폭읍 문형2교 교량 밑 하부에 창고 진 · 출입로 설치목적의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신청서와 같이 진 · 출입로가 설치될 경우 향후 교량시설의 점검 및 유지 ·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차량 진 · 출입으로 인하여 교각의 훼손(파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허가서류 반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도45호선「덕산~예산 도로 확 · 포장공사」구간의 삼다리교 하부에 체육관련시설(족구장 및 테니스장) 조성 목적의 점용허가 신청(예산읍장)에 대하여 '05. 2. 28.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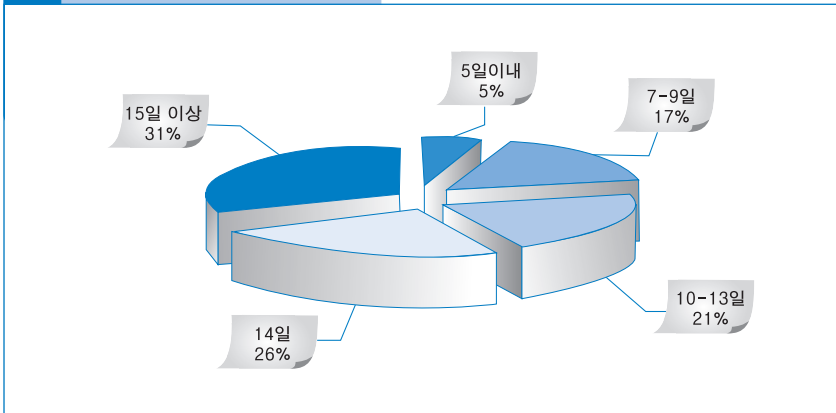
- 점용허가 가능지역이나 신청서의 일부가 미비할 경우 보완절차규정 미비
 - 보완요청시 기관별로 보완기간이 최소 5일에서부터 15일이상인 것 까지 천차만별이며, 보완요청서식도 서로 상이함



보완요청기간 분석: 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 2005~2006년

보완기간	5일 이내	7-9일	10-13일	14일	15일 이상	합계
건수	14	50	60	75	89	288

보완요청기간 분석



- 도로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서식을 각 기관이 임의대로 작성하여 운영하거나, 일부 기관의 경우 검토서식 자체가 없음

구분	익정부국도유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연결위치 적정여부(제6조) 및 현지어건상의 허가제한 요소	연결위치 적정여부(제6조) 및 현지어건상의 허가제한 요소	연결위치 적정여부 및 현지어건상 제한요소(금지구간 등)
2	국도에 직접연결하지 않고, 구국도, 지방도, 농로등을 통하여 진·출입로 가능여부	국도에 직접연결하지 않고, 기타 다른도로를 통하여 진출입로 가능여부	국도에 직접연결하지 않고 구국도, 지방도, 농로, 등을 통하여 진출입 가능여부
3	연결로등의 포장 적정여부(제7조)	연결로등의 포장 적정여부(제7조)	연결로등의 포장 적정여부(제7조)
4	가·감속차로(변속차로)설치 기준 충족여부 등(제8조)	변속차로(가·감속차로)설치 기준 9제8조) 적합여부	가·감속차로(변속차로)설치 기준 충족여부 등(제8조)
5	배수시설의 유수소통여부(제9조)	배수시설적합여부(제9조)	배수시설의 유수소통여부(제9조)
6	분리대 설치계획 적정여부 (제10조)	분리대 설치계획 적정여부 (제10조)	분리대 설치계획 적정여부 (제10조)
7	연결로등의 길어깨 설치기준 충족여부(제11조)	연결로등의 길어깨 설치기준 적합여부(제11조)	연결로 등의 길어깨 설치기준 충족여부(제11조)
8	부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제12조)	부대시설 설치계획 적정여부(제12조)	부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제12조)
9	도로점용면적 적정여부	연결여가 가능시기	도로점용면적의 적정여부
10	도로점용면적에서 본선노경장 부분의 제외여부	도로점용면적 적정여부(본선 노경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도로점용면적에서 본선노경 포장부분의 제외 여부
11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적정여부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적정여부	연결공사의 안전관리 대책 적정여부
12	점용구간에 기매설된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현황 및 협의 여부	점용신청 구간에 기매설된 지장물 현황 및 협의 여부	연결여가시 교통소통에 미칠영향
13	점용구간에 기점용 받은 부지중복여부 및 협의여부	점용구간에 기점용 받은 부지중복여부 및 협의여부	점용구간에 기매설된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현황 및 사전협의여부
14	점용신청지의 도로공사 진척현황 및 향후일정	점용신청구간에 대한 허가시 민원발생소지 여부	점용구간에 기점용받은 부지 중복여부 협의여부
15	기타점용여가와 관련하여 우리사무소에서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건축신청부지가 신청인의 소유여부 및 사용승낙여부
16			점용부지의 우리청 도로공사 진척현황, 향후일정
17			기타 이견 처리시 행정조치 사항

•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보완요구 사례 빈발

- ❶ 사업부지를 도로높이와 비교하여 1.0m낮추어 시공하여야 함(2006. 3. 16.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❷ 도로부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점용은 불가하므로 재계획하여야 함(2005. 12. 7.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❸ 본 신청지 감속차로부는 커브 내측으로서 운전자들의 시거불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2005. 3. 50. ○○국도유지)
- ❹ 4차선 본선도로에서 차량을 직접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서 및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진입금지 안내표지판 및 진입금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계획하여야 함(2006. 3. 9. ○○국도유지)
- ❺ 구국도 진입부부터 허가 신청지까지는 약 300m로 구국도 이용자의 불편 해소대책 계획서 보완(2005. 7. 27. ○○국도유지)
- ❻ 기존 V형 측구 보강계획은 통과 차량하중에 견딜 수 있는 측구 보강계획으로 재작성하여 제출(2005. 1. 31. ○○지방국토관리청)
- ❼ 신청사업부지는 마을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본선(국도) 도로에서도 진·출입할 경우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도로중 한 개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마을도로 관리기관 협의서 제출 등)(2006.3.23. ○○국도유지)

• 법령근거하지 않은 부담부여 등 보완요구 사례

- ❶ L형옹벽은 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검토·확인서(자격증 첨부) 제출(2006. 3. 10. ○○국도유지)
 - 옹벽의 높이·형식 등을 감안하지 않고 기술사의 검토·확인을 받도록 보완 요구함으로써 피허가자에게 부담 부여
 - ※ 구조기술사의 검토·확인을 받기 위하여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

- ❷ 가속차로 외측의 측도를 제외한 도로잔여부지는 녹지조성(경계턱 높이 30cm이상, 녹지 중앙부분은 언덕형상으로 높이 2.0m이상) 및 도로부지와 사유지 경계지점에 휀스 설치계획 검토(2005.7.15. ○○국도유지)
 - 위 사항 이행을 위하여는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피허가자에게 부담 부여
- ❸ 비탈면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 절취사면의 토질상태(토사) 또는 암반에 따라 결정되며 사면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비탈면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의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함(2005. 6. 24. ○○국도유지)
- ❹ 사업부지 전면 전체의 도로부지를 점용허가 신청하거나 또는 진·출입로 이외의 사업부지 전면에는 콘크리트 분리대 설치(2006. 3. 2. ○○국도유지)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예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도로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6조 제3항 교차로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 ※ 연결허가규칙 제6조 제3항
 -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 연결허가신청에 대한 기술검토서식, 보완요청 서식 및 절차 등을 지침 또는 매뉴얼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보완요청서식 예시

신청내용	관계규정(근거규정)	보완요구사항	비고



보완서 제출서식 예시

보완요구사항	보완내용	미보완 사유

- 건설교통부에서 옹벽·배수공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 측량설계사무소 등 업무대행자 실명제 도입 등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 점용허가 신청시 측량·설계 등 업무대행자 및 대행수수료 기재 의무화 등



세부평가 7 : 지방자치단체 도로연결조례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 ②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조례)

○ 제5조(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충청남도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3. 충청남도 도로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이내의 구간 및 별표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 가. 도로법상의 도로
-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8조(변속차로)
-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30)	90(65)	15(10)	30(20)
2. 휴게소 · 주유소 등	—	45(30)	90(65)	15(10)	30(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20)	60(40)	10(10)	20(20)
4. 사도 · 농로 · 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15)	40(30)	10(10)	20(20)
	10대이하	20(15)	40(30)	10(10)	20(20)
	11 ~ 30대	30(20)	60(40)	10(10)	20(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31대이상	45(30)	90(65)	15(10)	30(20)
	30대이하	30(20)	60(40)	10(10)	20(20)
6. 주차장 · 건설기계주차장 · 운수 시설 · 의료시설 · 운동시설 · 관람 시설 ·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이하	30(20)	60(40)	10(10)	20(20)
	31대이상	45(30)	90(65)	15(10)	30(20)
7. 공장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이하	20(15)	40(30)	10(10)	20(20)
	21 ~ 50대	30(20)	60(40)	10(10)	20(20)
	51대이상	45(30)	90(65)	15(10)	30(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10가구이하)	30(20)	60(40)	10(10)	20(20)
	(101가구이상)	45(30)	90(65)	15(10)	30(20)
9. 농 · 어촌 소규모시설(소규모 주택 · 소규모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임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도로법 제54조의6(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연결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 기타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연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등 제도 운영의 일관성 결여



도로연결허가 조례 제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정 여부	×	○	×	×	○	×	○	○	○	○



도로연결허가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구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의정부	파주시	시흥시	양주군
제정 여부	○	×	×	×	×	×	×	○	○	×

※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4(자동차전용도로에의 통로 등의 연결)

- ① 법 제54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및 지방도

2. 4차선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 국도의 경우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5]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 및 용도, 주차대수 등에 따라 변속차로의 최소 설치길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도 및 시·군·구도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속차로의 길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자체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다수임

(3) 부패유발요인

-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결허가조례 등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일반국도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변속차로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 행정관청의 불법적인 허가행위 및 민원발생 야기

※ ○○시는 ○○읍 ○○리 226-9번지의 3필지 50㎡에 대한 주유소 진·출입로 목적의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상기 점용구간은 ○○시 시도10호선(왕복4차로)에 출입로를 설치하는 점용허가로서 「도로법」 제54조의6 및 「○○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연결허가 금지구간(교차로영향권 60m이내구간)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점용허가를 내어 주었고
-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한 도로연결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허가 처리
- 또한 위 주유소의 출입로는 「○○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별표5)에 따라 가속차선을 최소 65m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데도 단순히 가각만을 정리하여 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점용허가를 내어줌



시도74호선 화전동 화전중앙교회
변속차로 없이 연결로 설치



지방도 359호선 월마트 ~ 파주시계
변속차로 없이 연결로 설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결허가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의 길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상이할 경우 형평성 논란 및 국민불신 초래
 - 고양시는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등 연결허가 조례가 현실성이 없어 민원을 야기하자 변속차로의 길이를 대폭 줄이는 것으로 연결허가 조례를 개정(2006. 6.)



휴게소, 주유소 진·출입로의 경우

시 설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고양시 기준	15	30	10	20
건교부 기준	45(30)	90(65)	15(10)	30(20)

- 시설의 종류 및 사용용도, 주차대수 등에 따라 변속차로의 최소 설치길이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이 있을 경우 다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작용

-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해설 및 지침에 따르면 감속차로는 감속 교통량이 많고 적은 것보다는 감속 교통량의 속도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해설 및 지침(건설교통부 발행)

〈가감속차로 길이의 산정〉

- 감속차로는 감속 교통량이 많고 적은 것보다는 감속 교통량의 속도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감속차로를 설치함으로써 본선 상에서의 감속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설계속도가 낮은 도로로부터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의 평면교차로에서는 상대속도를 적게 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므로 낮은 속도로부터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가속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속차로를 설치한다.
-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길이는 다음〈표〉와 같다.



<표> 가감속차로의 길이

설계속도(km/h)			80km/h	70km/h	60km/h	50km/h	40km/h	30km/h	비고
가 속 차 로	길 이 (m)	지방지역 ($a=1.5\text{m/sec}$)	160	130	90	60	40	20	
		도시지역 ($a=2.5\text{m/sec}$)	100	80	60	40	30	-	
감 속 차 로	길 이 (m)	지방지역 ($a=2.0\text{m/sec}$)	120	90	70	50	30	20	
		도시지역 ($a=3.0\text{m/sec}$)	80	60	40	30	20	10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도로연결허가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 설치길이를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을 구분, 도로의 설계속도 등을 감안하여 단순화

예 시

구 분	가속차로 길이(m)	감속차로 길이(m)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80~100km/hr)	160	120
국도 및 지방부 도로(50~60km/hr)	60~90	50~70
시가지 도로(40km/hr)	30	20
주택 및 농어촌 소규모 시설 진입로 도시지역으로 건물 연접한 지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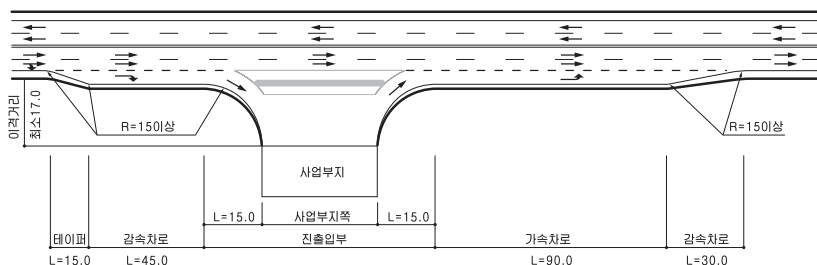
※ 건설교통부 발행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해설 및 지침” 참조



세부평가 8 : 연결로의 설치방법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건설교통부령인「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별표2 연결로의 설치방법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있음

(3) 부패유발요인

- 연결로 등 설치방법을 별표 도면에서 진·출입로를 사업부지 끝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어 일부 도로관리청에서 이를 확대 해석·적용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신청서 보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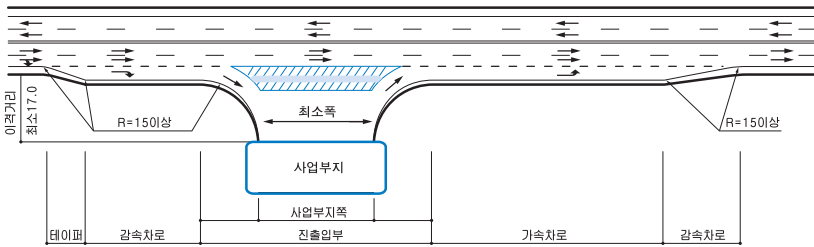
- 가·감속차로는 사업부지 끝에서 설치하여야 하고 진출입부 5m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지 전면부분은 화단 및 배수시설 설치('05. 00지방 국토관리청)
- 사업부지로 진·출입하는 도로의 최소폭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차로 등 연결허가 금지구간 최소거리가 부족할시 진출입로 폭을 1차선으로 줄이는 등 편법적인 허가 가능
- 건설교통부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2] 도면에서 사업부지를 차로에서 17m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부지는 도로부지와 인접해 있고 도로점용부지의 폭이 최소 이격거리인 17m가 나오지 않을 경우 사업부지 중앙에까지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현실성 결여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규칙" [별표2] 연결로 등의 설치방법 도면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

- 사업부지 끝에서 진·출입하도록 된 것을 사업부지 중간 지점에서 진·출입하는 것으로 표기
- 진·출입로의 최소폭에 대한 기준 및 최소 이격거리를 현실에 맞추어 개선

예 시



3) 신설중인 도로구간의 연결허가



세부평가 9 :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연결허가

※ 신설도로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기존도로의 점용허가와 동일하게 처리

(1)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신설도로공사 구간의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대한 별도의 처리규정은 없으며, 도로법을 적용하여 준공된 도로와 동일하게 허가하고 있음
 - 일반국도의 경우 준공된 도로의 점용허가는 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시공중인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



시공중인 도로공사구간의 연결허가 현황(2005년, 국도)

기 관	신청건수	취하건수	반려건수	허가건수
서울청	34	3	—	26
부산청	12	1	2	9
원주청	25	3	4	16
익산청	53	8	14	33
대전청	49	—	9	41
제주청	24	—	—	24
총 계	197	15	29	149

(3) 부패유발요인

- 시공중인 도로에 대한 별도의 점용허가기준이 없어 기존도로의 점용허가와 동일하게 도로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 공사시작 초기에 점용허가를 내어줄 경우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향후 노선변경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민원발생
 - ※ 부동산 투기꾼들이 신설도로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고가로 매도하는 사례 빈발
-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 남용으로 인한 부패발생소지 내포
 -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는 전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사항이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허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결여
- 공사비의 중복투자 등 자원낭비 및 국민불편 초래
 - 신설 또는 확장공사 중에 있는 구간의 점용허가신청은 대부분 준공시점 또는 준공직후 점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이 경우 도로공사에 포함되어 시공 완료한 비탈면보호공(네트잔디 등), 배수시설물 등이 점용허가로 인하여 준공도 하기 전에 매몰되거나 철거되어 국가예산 및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 또한 준공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도로점용을 위하여 준공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도로유지 관리 및 교통소통에 지장 초래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신설도로공사 구간내 도로점용·연결허가 처리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개선 방안〉

◆ 현황

- 도로는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공물로서 도로사용개시(도로법 제28조) 이후 도로로 인정됨에 따라 2001년부터 신설도로공사 구간내에는 도로사용 개시(준공)이후부터 허가하고 있음
- 공사시행중에 점용허가할 경우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 및 무분별한 진·출입으로 공사시행에 지장초래

◆ 개선방안

- 민원인들에 대한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사비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신설 구간 중 토공완료 등 노선이 확장된 구간은 허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기준(사전예고제 등)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대하여 배수로, 비탈면보호공, 포장공 등 마감공사 시행전 일정공정에 도달(토공완료시점)했을 때부터 준공시까지 도로점용허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
 - ※ 점용허가 신청시기 지정방법 및 인터넷 등에 게재방법·게재내용 등에 대하여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
 - 도로공사 준공후 일정기간(1~2년)내 도로점용허가시 일정액의 시설물 훼손부담금 부과하여 도로점용 억제
 - ※ 도로연결허가는 사실상 도로의 포장면 훼손을 수반하는 공사이므로 도로굴착공사와 같이 현행 법령하에서도 준공후 3년동안 연결허가를 금지할 수도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세부평가 10 :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공사비 정산

〈관련법령〉 : 없음

(1)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

(2) 현황 및 운영실태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로공사 담당 감리단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기술검토결과에 따라 점용 · 연결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도로점용 · 연결허가 후 감리단에서 점용구간의 공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정산처리하고 있음

(3) 부패유발요인

- 시공중인 공사구간에 대한 점용 · 연결허가에 따라 추후 시공이 불필요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등 정산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관련규정 미비
 - 시공중인 공사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시 점용구간의 시공완료 물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시공물이 매몰 또는 철거되더라도 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준공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도로점용허가구간에 포함되는 미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하여 추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실태조사결과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에 따른 미시공 공사비 2,246백만원에 대하여 2006. 9월 현재까지 정산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해당 기관에서 설계변경 감액조치 예정)



점용구간 공사비 정산현황

(금액 : 백만원)

기 관	도로점용구간 공사비		정산완료 금액	미조치 금액
	미시공 금액	금액		
총계	1,873	1,099	726	2,246
서울청	158.6	478.6	151.9	485.3
부산청	342.2	86.3	8.3	420.2
대전청	822.2	412	491	743.21
익산청	244.45	40	29.6	254.85
원주청	305.3	82	45	342.3

※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을 2002. 6. 3. 허가함에 따라, 동 공사의 도로점용허가구간에 설계되어 있던 토공 및 배수공 등의 공사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 '02. 12. 11. 설계변경시 총 감액대상 107백만원 중 토공공사비 73백만원만 감액조치하고 배수공 공사비 34백만원 상당은 감액조치하지 않음('04년 건교부감사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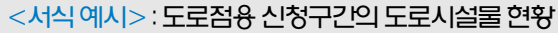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시설공사비 검토 의무화 규정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시 현재의 시공현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마련(검토서식 등)
 - 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 신청서류 검토시 시공완료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조서와 같은 시공완료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미시공 물량에 대하여는 미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한 후 추후 설계변경시 감액 하겠다는 문서를 작성 계약담당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토록 규정 마련

- ※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을 2002. 6. 3. 허가함에 따라, 동 공사의 도로점용허가구간에 설계되어 있던 토공 및 배수공 등의 공사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 ‘02. 12. 11. 설계변경시 총 감액대상 107백만원 중 토공공사비 73백만원 만 감액조치하고 배수공 공사비 34백만원 상당은 감액조치하지 않음(‘04년 건교부감사지적)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시설공사비 검토 의무화 규정 마련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시 현재의 시공현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마련(검토서식 등)
 - 도로관리청은 점용허가 신청서류 검토시 시공완료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조서와 같은 시공완료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미시공 물량에 대하여는 미시공 물량조서를 작성한 후 추후 설계변경시 감액하겠다는 문서를 작성 계약담당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토록 규정 마련



I. 도로점용 신청현황				
신청자		주소		
신청위치				
신청일시		점용면적		점용목적
II. 도로점용 구간의 도로시설물 현황				
노선명 (공사명)				
공정	공사완료물량		미시공물량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붙임 : 1. 세부 수량산출조서 1부
2. 시공완료 물량 사진 1부.

○ 상기 도로점용 구간의 미시공 물량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 즉시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도로점용허가 취소시에는 원인자부담으로
시공토록 조치

2006. . .

검토자 : 인



도로법 제64조(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도로법 제65조(부대공사비용)

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도로점용)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67조(손계자부담금)

- ① 관리청은 도로를 손계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기준의 구체성 · 객관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원인자부담금) 및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부대공사비용),

-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 (손괴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도로공사구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시 점용구간의 도로시설물이 준공도 하기전에 점용허가로 인하여 멸실되는 경우 일부기관에서는 시설물설치공사비(절토법면보호공, L형측구, 가드레일 등)를 피허가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 시설물설치공사비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질의결과
 -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공사의 추진현황, 도로부속물의 축조 필요성 및 축조시기, 연결허가의 대체시설물 설치내용, 연결허가의 불가피성 및 연결허가 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회신(도관 58710-238, 2000.4.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침결정, 2003.7.18.〉

- 도로건설공사중인 구간에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시 도로진 · 출입로 개설로 인해 시공된 도로부속물의 원형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 이에 해당되는 부분의 공사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시공회사에 공사비(해당부분의 계약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사항을 처리하고 상기 시설물을 설계도서에서 제외토록 방침결정
- 신청인이 시공사에 납부할 도로시설물 훼손공사비 납입증명서 및 동 공사비 납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토록 조치
- 만약 도로점용허가 신청인이 도로부속물 훼손에 따른 공사비를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경우 준공전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준공후 도로점용 허가 신청토록 조치

(3) 부패유발요인

-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관리청이 임의대로 부담금액을 결정할 우려

※ 현행 도로법은 도로점용(굴착)자에게 점용기간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원상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비 외에 다른 부담금에 대한 요구조항은 전혀 없는데도 서울시 종로구 등 76개 자치단체는 복구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간 발생하는 하자보수의 재원을 확보해 둔다는 명목으로 「도로 손괴자 부담금 조례」를 제정·시행

- 지자체들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5월 사이에 법적 권한 없이 신설한 부담금 1,125억원을 민간업체로부터 징수했다(2005.5.16, 한국경제신문)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점용허가를 하면서 일부 국토관리청의 경우 점용구간의 도로시설물 훼손비를 피허가자로 하여금 시공사에 납부토록 부과하고 있으나

- 같은 건교부 산하 일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부과하는 등 일관성 결여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별 사례〉

- 부담 기관 : 서울청('03. 7. 방침결정), 대전청
- 미부담 기관 : 부산청, 익산청, 원주청, 제주청

◆ 시공중 도로점용허가시 원형열실 공사비 부담기준(익산청, '03.11.27.)

- 점용허가 신청일 현재 기성검사된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
- 점용허가 신청일 현재 기성검사되지 않은 부분은 신청자 부담
- 미시공된 부분 및 신청자 부담부분 설계도서에서 제외
- 민·형사상 이의제기 불가 공증각서 징구
- 공증각서 제출 거부시 공사준공 이후 허가신청토록 반려

〈시설물 훼손비 부과사례〉

- ※ ○○지방국토관리청은 ○○ 군 ○읍 ○리 372-1외 21필지내 주유소 및 소매점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5,880㎡)에 대하여
 - 위 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면서 점용허가 관련 “○○남부우회도로 공사”의 철거시설에 대한 공사비(74,470,000원)를 피허가자로 하여금 시공회사에 부담하도록 협의서를 징구한 후 점용허가(‘05.7.6)하였으나
 - 피허가자인 김기한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05.12.3.)하여 신청인이 설치하는 대체시설비용 48,424,000원을 차감한 순수 훼손비용 26,046,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 ※ 국도47호선 도로구역내 주유소부지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연결허가시
 - 기 시공된 성토비탈면의 Net잔디 및 L형측구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훼손 공사비(49,142,000원) 납입증명서(시공사 제출) 및 동 공사비 납부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제출 요구(○○지방국토관리청)
- ※ 국도47호선 도로 구역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 연결 허가시
 - 동 신청지는 콘크리트 포장까지 완료되어 현재 임시 개통한 구간으로 도로점용시 도로부속시설이 일부 원형 훼손되기에 도로시설물 훼손비(93,800,000원)을 시공회사에 납부하시고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지방국토관리청)
- 또한 일단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미부과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 및 형평성이 결여되었음
 - ※ ○○지방국토관리청은 “○○우회도로공사” 구간내 휴게소 및 주유소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전용 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2005.11.21.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 도로점용구간내 기 시공된 도로시설물(법면보호공, L형측구 등)에 대한 훼손비 129,168천원을 피허가자로 하여금 부담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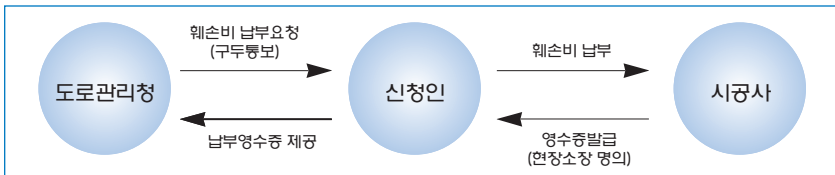
- 준공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시설물 훼손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으며, 위 도로의 준공일이 2005. 12. 27. 이므로 한 달 후에 점용허가를 할 경우 도로시설물 훼손비를 부담시키지 않아도 됨

- 시설물훼손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서 공식적인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금액을 시공사에 납부하라고 하는 등 부담금 부과방법, 부과절차, 부과금액 산정 등에 대한 원칙 부재

※ ○○지방국토관리청은 ○○ ○○군 ○○면 ○○리 278번지 일원에 주유소 및 근린생활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2,632㎡)에 대하여는 도로점용구간에 본선기층포장 및 L형측구 등이 시공완료 되었음에도 시설물 훼손비를 미부담 시키는 등 제도운영에 일관성이 없음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도로점용에 따른 시설물 훼손비 납부절차



※ 도로법시행령 제34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 ① 관리청이 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 그에 따라 시설물훼손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회수대책이 없고, 오히려 성실하게 납부한 자만 피해를 입는 결과 초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총 부과금액 352,286천원 중 220,794천원 미납,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총 부과금액 278,072천원 중 94,920천원이 미납('06. 10월)

(4) 평가결과

- 도로법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에 대한 판단기준을 하위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 부담금의 전부를 부담시키는 사유와 일부를 부담시키는 사유를 구분
 - ※ 도로법 제67조에 의한 손해자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음
- 시설물훼손비 등 부담금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시설물훼손비 등) 부과 금지
 - 시설물훼손비를 계속하여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 마련 및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4)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분야



세부평가 12 : 점용료 징수방법

도로법 제43조(점용료의 징수)

- ①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점용료의 부과·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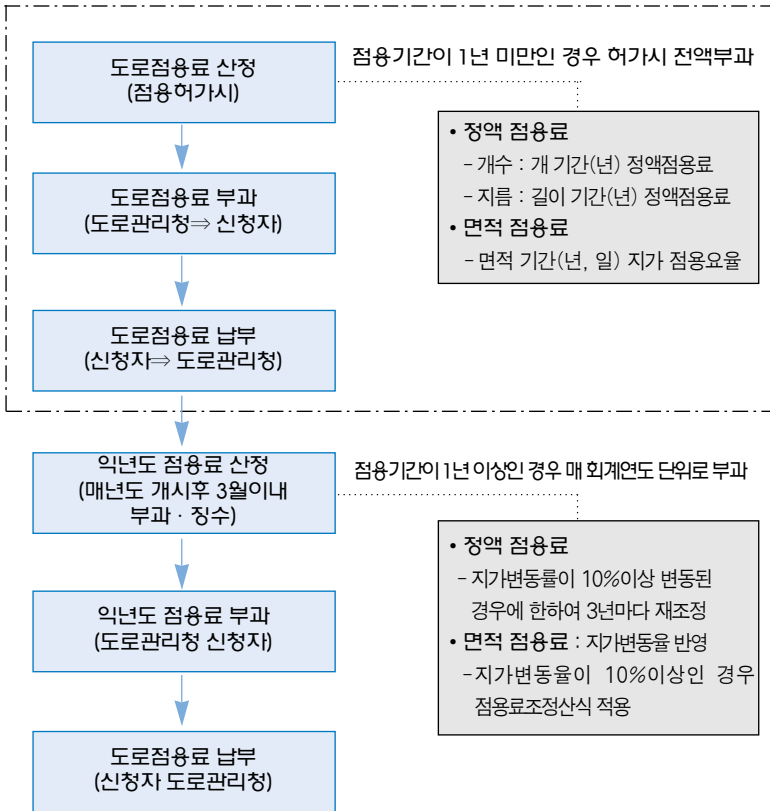
- ① 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도로점용료 부과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점용료 부과·징수 절차



(3) 부패유발요인

- 매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 낭비
 - 도로점용기간은 최대 3~10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점용료는 매년마다(1년단위) 부과하도록 도로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매년 22만여건의 점용료 부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대규모 체납금액 발생

※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매년도 인접토지(3~5필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한 다음 전년도
점용료 보다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조정율에 의하여 재산정 및
부과하게 되는 등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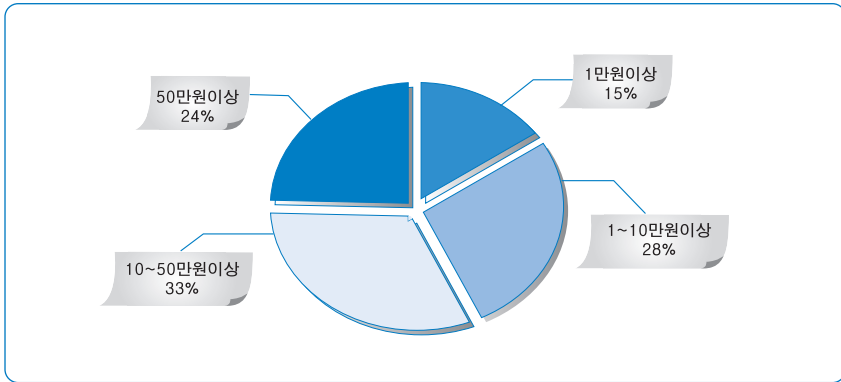
- 소액 점용료의 경우 매년도 부과·징수에 따른 국민불편 초래
 - 입간판, 전신주 등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
가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1년단위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피해가자들의 불만
 - ※ 1만원 미만의 점용료를 점용기간 10년동안 계산하여도 1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피해가자의 경우 일시에 납입하고 싶어도 관계규정상 불가, 특히
입간판 등은 점용기간이 3년으로 점용료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매년도
부과징수



금액별 점용료 분석 : ○○국도유지건설사무소(2005년 부과현황)

총부과액		금액별 부과현황(천원)							
건수	금액	1만원 미만		1~10만원 미만		1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06	658,390	225 (15%)	886	422 (28%)	16,435	491 (33%)	126,534	368 (24%)	514,535

※ ○○대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경우 2005년 도로점용료 총부과 건수 1,506건
중 10만원 미만 소액점용료부과건수는 647건으로 전체부과건수의 43%임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점용료 부과 · 징수방법(일시납입제도 도입 등) 개선
 - 피허가자자로 하여금 도로점용기간의 점용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선
 - 일시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점용료 상승분 미반영
 - 고액점용료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현재처럼 1년 단위로 분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두고, 이 경우 매년도 공시지가 증가분에 대한 점용료 재산정

예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점용료의 부과 · 징수)

- ① 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 ·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부과는 점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 · 징수

개선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선안
점용기간 1년미만	- 도로점용허가시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모두 부과	"현행과 같음"
점용기간 1년이상	- 허가시 당해연도 점용료 부과 - 익년도 부터는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 이내에 1년치 점용료를 산정후 조정요율을 적용하여 점용료 부과	- 허가시 점용기간 전체에 대한 점용료를 동시에 부과 *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1년 단위로 분할납부 가능(공시 지가 상승에 따른 점용료 재산정)

※ 자동차세의 경우 매분기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1년치 세납액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 10%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 ③ 세납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6(자동차소재지 및 신고납부)

- ② 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 과세표준액 ·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기재하여
시장 · 군수에게 동조동향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의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 ·
군수가 전화 등으로 납부의무자의 일시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산정기준)**

- ①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시행령 (별표 2) 점용료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4.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비고〉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 1,900원).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4(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도로법시행령 [별표3]점용료 조정산식(시행령 제26조의4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0/100+(증가율-10/100)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3/100+(증가율-20/100)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6/100+(증가율-50/100) 6/1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19/100+(증가율-100/100) 3/1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2/100+(증가율-200/100) 1/1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5/100+(증가율-500/100) 5/1000}]

(1)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 접근성과 공개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도로는 대부분 토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점용료 산정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토록 규정
 - 도로점용지의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출

※ 점용면적에 의한 도로점용료 산정방법

- 점용면적(㎡) 점용기간(년) {토지가격 적용요율(%)}



'05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기 관	점용료 부과내역		납부내역		미납내역	
	건수	부과금액	건수	납부금액	건수	미납금액
고속국도	1,157	753	1,152	603	5	149
일반국도	29,593	14,814	20,408	10,579	9,185	4,235
지방도	188,864	132,655	162,312	121,049	26,552	11,606
총 계	219,614	148,222	183,872	132,232	35,742	15,990

-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점용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당해 년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에 부과된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시에는 도로법시행령[별표3] 점용료조정산식에 의거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3) 부패유발요인

-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될 경우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는 점용허가를 받은 날에 따라 점용료 산정금액이 각기 틀리게 되므로 법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
 - ※ 예를 들어 1월1일에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분의 점용료를 납부하지만, 11월1일에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분의 점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는 2개월분이 됨
 - 또한 조정산식이 복잡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산출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불신 초래

※ 전년도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10/100 + (증가율-10/100) 3/10)}

- 점용료 부과통지를 할 때 산출된 점용료만을 통지하고 산출근거 (점용료산정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율 등)는 통지하지 않음으로 본인의 점용료가 제대로 산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도로법 제26조의4 점용료조정에 있어서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규정
〈예시1〉 도로법 제26조의4(점용료의 조정)
 -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점용료 부과 통지시 점용료 산출대상 지번, 공시지가, 조정요율 등 산출근거를 함께 통지토록 개선



세부평가 14 :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관련법령〉 없음

(1)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명확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공동 사용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방법 및 절차 등이 없어 각 도로 관리청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 부패유발요인

- 공동점용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분담기준) 미비로 인한 점용자간 분쟁 발생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공동사용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 처리토록 하고 신규 점용부분에 대하여만 점용료 부과
 - ※ ○○○(○○○○군○○읍○○리 165번지)이 LPG 충전소 진·출입로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신청지(2,280㎡) 중 기존 점용자 ○○○의 도로점용지와 일부분(332㎡)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신규 점용면적에 대하여만 점용료 부과하고 중복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허가일 '05. 9. 2.)
- 대전국토관리청은 공동 사용부분(1/2적용)과 신규 점용부분을 나누어 산출한 후 점용료 부과
 - ※ ○○○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연결을 위한 도로점용 신청지(○○북도○○군○○읍○○리800-1번지의 2필지, 547㎡) 중 기존 점용자 ○○○의 도로점용지와 일부분(230㎡)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허가일 '06. 6. 7.)
 - 신규 점용부분(313㎡)과 공동 점용부분($115\text{㎡} = 230\text{㎡}/2$)을 나누어 산출 후 점용료 부과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공동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 도로점용지의 공동사용에 대한 점용료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징수)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④ 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 ① 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면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도로법 제44조는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및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면제와
 - 재해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점용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에서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감면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부패유발요인

- 도로법 제44조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액 감면대상시설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례 등 근거없이 재정확충을 위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민원발생 야기
 - 점용료 감면여부가 도로관리청의 재량사항이므로 민원인은 도로점용료를 면제받고자 로비를 하는 등 부패발생소지 내포
- ※ 천안시에서는 시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법 제44조의 감면대상인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2006년도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17건)

◆ 도로법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 주택출입 통행로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영농목적의 토지 출입시에는 점용료가 부과되므로 1차산업 종사자의 부담 가중

※ ○○시는 영농 목적 토지에 진입하는 통행로 등에도 도로점용료가 부과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에 도로점용료 감면제도 개선 건의 (○○일보 '05. 8. 3.)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도로점용료 감면여부를 기속행위로 규정

예시)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한다.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 ①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징수)

- ① 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

(1)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2) 현황 및 운영실태

-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하도록 규정
- 재해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점용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3) 부패유발요인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에서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감면절차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건설교통부에서 감면절차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 신설도로 구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 도로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점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계속하여 부과·징수하는 폐해 발생
 - 이에 따라 피점용자는 도로점용허가만 받아 놓고 점용공사를 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 도로공사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점용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본 도로공사 준공에 차질
 - 또한 신설도로 구간의 점용허가를 득한 경우 점용공사를 하기 위한 일시점용면적에 대하여도 영구점용면적에 포함하여 점용허가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다만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공사의 경우 매설공사기간 동안에는 일시점용료를 부과하고, 매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관로를 대상으로 영구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음(건설교통부 유권해석, 도관58710-149)

- 주택 진·출입목적의 비영리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진·출입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일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영구점용료를 부과하는 영리목적의 도로점용과 일관성 결여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도관 58710-829, '99.9.11.)

- 진·출입로 설치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시점용료를 부과

(4) 평가결과 : 개선의견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제3항 제3호에 따른 재해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절차(건설교통부령) 마련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

-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법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료 부과 및 감면규정 개선
 - 신설도로 구간의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도로공사 준공시까지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 마련

제4장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 제1절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외부 시각

1. 부패영향평가와 향후 과제 · 안현실(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 김남근(참여연대 집행부위원장, 변호사)
3.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가청렴위원회의 역할 · 박거용(한국대학연구소 소장)
4. 외부에서 본 부패영향평가 · 최영동(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5. 게임산업법령 및 교육분야 부패영향 평가에 대한 외부시각
· 송인수(좋은 교사운동 대표)

• 제2절 2007년도 부패영향평가 추진방향

가. 부패영향평가 활동 참여로 달라진 인식

지금까지 세 번의 부패영향평가 자문의뢰를 받았다. 검토대상 법령은 한번에 2~3건 정도였다.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자마자 바로 검토의뢰가 들어온 것은 다소 의외였다.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은 일이었다. 사실 그 때만 해도 부패영향평가라는 것이 절실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고보다는 국가청렴위원회를 만들다 보니 새로운 일거리로 생겨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필자가 담당했던 분야는 대부분 산업분야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그리고 최근에는 2006년 상반기 제·개정된 산업자원부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적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이었다. 대부분 그 성격이 육성, 촉진, 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들이다.

여기서 잠깐 산업정책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다. 산업정책의 경우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자율과 창의를 내세우면서 그 전의 업종별 법령들이 대대적으로 정비, 통합되었다. 이는 산업정책이 인허가

등 규제에서 기술 인력 등 기능중심으로 재편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 통상마찰 등 국제경쟁 환경 등이 그 주된 요인이었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산업부문 법령들은 대부분 기능위주의 육성, 촉진, 지원이 전면으로 등장했다.

때문에 인허가 등 규제위주 환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패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을 처음에는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규제가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 과거와 같은 부패와는 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컸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부패가능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법령들을 살펴보니 의외로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여기서 잠깐 부패영향평가제도 자체를 얘기하고 넘어가자.

부패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령에 내재된 부패발생 소지를 분석하고 이를 제거·개선하는 제도로 정의돼 있다. 그리고 평가기준은 크게 3대 요인, 9개 항목에 걸쳐있다.

첫째는 수요측면(민원인, 준수의 용이성)인데 여기서는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수준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등을 따진다. 둘째는 공급측면(행정기관, 재량의 적정성)으로 재량규정의 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재량기준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셋째는 절차측면(행정절차의 투명성)으로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장치 등을 조사한다.

그런데 산업진흥과 촉진이란 이름아래 묶을 수 있는 법령들은 부패영향평가 3대 요인 기준으로 따져볼 때 대개 수요측면(민원인, 준수의

용이성)보다 공급측면(행정기관, 재량의 적정성)과 절차측면 (행정절차, 절차의 투명성)에서 허점이 많았다.

실제로 이는 청렴위의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 하고 있다. 금년 4월부터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7월까지 54개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7월까지 54개 법령에서 1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적출·개선 권고를 한 것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보면 부패유발요인은 주로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7건의 분포에서 부적정한 재량이 87건(59%),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32건(22%), 과중한 준수부담 28건(19%)이었다. 여기서 부적정한 재량은 행정기관의 판단 기준을 불명확,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부여한 경우 들이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된 법령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통계를 보면 청렴 위에 평가요청·접수된 것은 전체 313개 제·개정 법령안들이었다.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교육·문화 분야가 54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산업·개발(61), 과학·정보(56개), 국방·보훈(41개) 분야의 법령도 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평가결과 개선의견이 많이 도출된 분야는 산업·개발 분야가 15개, 과학·정보(14개), 교육·문화(8개) 등의 순이었다. 이 모두 육성, 지원, 촉진과 관련한 법령안들이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 보면 이렇다. 아무리 육성, 지원, 촉진이라고 해도 부적정한 재량, 행정절차의 불투명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은 구체적인 부패 유발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정부 예산이 부적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다면 결과 측면에서는 부패와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누적되다 보면 궁극적으로 구조적인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부패영향평가는 육성, 지원, 촉진이란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법령안들에 대해서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하나는 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이고 적정한 판단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런 법령들이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효과이다.

한마디로 부패영향평가에 직접 참여한 소감을 요약하라고 하면 당초 이 제도에 대해 가졌던 회의적 시각은 상당부분 희석돼 버렸고 대신 그 자리에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나. 부패영향평가와 국가청렴도 향상

부패영향평가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제도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국가청렴도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지만 요즘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가 유행이니 이를 중심으로 풀어가 보자.

국가경쟁력이 주목받다 보니 다양한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기관들도 대거 늘어났다. 국내에 잘 알려진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이 있다. 이들 기관들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니 일반 국민들도

모르는 이가 이제 거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헤리티지재단, CATO, Price Waterhouse Cooper(PWC), 국제투명성 기구(TI),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A.T. Kearney, Euro Money, Freedom House, Forbes, MacKinsey, World Bank, Moody's, S&P 등이다.

이들 기관들마다 중시하는 고유한 부분들이 있다. 예컨대 IMD, WEF 등은 경제적 변수는 물론 사회구조, 제도, 정책 등을 망라해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다. 헤리티지 CATO등은 경제적 자유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TI 같은 곳은 제도나 정책의 불투명성이나 부패를 따진다. 이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도 기관마다 다 다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분석 주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변수 분석, 김홍열)에 의하면 이들 기관들의 평가항목을 다 합치면 1,300개 정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변수들이 있다. 예를 들면 GDP, 무역, 투자, 환율, 재정, 세제, 금융, 기업 그리고 하나는 정부의 효율성 · 부패 · 규제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이 부분이다.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관여를 하더라도 분명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실패를 명분으로 정부가 나섰다가 정부실패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각종 평가기관들은 바로 정책의 예측가능성, 절차의 투명성을 본다. 기업들이 행정 관료들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는 실은 여기에

달린 문제다.

만약 정부정책이 합리적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이루어지거나 불투명하면 부패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부패가 존재하면 자원배분은 왜곡되기 마련이다.

IMD, WEF은 물론이고 헤리티지, CATO, 국제투명성기구(TI) 모두가 이 부분을 평가하는 이유다.

인·허가 같은 직접적인 규제에서만 부패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정부의 육성, 지원, 촉진 등의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경제주체의 행태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규제와 하등 다를 게 없다. 이것이 잘못 집행되면 규제의 부정적 영향과 마찬가지로 자원배분의 왜곡, 사회적 비용의 유발을 초래한다.

우리나라는 부패는 어느 정도일까? 얼마 전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2006년 갤럽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1개국 중 43위였다. 던진 질문은 “당신 나라의 정부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가?” “당신 나라의 기업부문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가?” 라는 2개였다.

이 보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는 어떨까? 얼마 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1점을 기록, 조사대상 163개국 가운데 42위를 차지했다.

한편 역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6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에 의하면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효과적’이라고 답한 한국 응답자는 14%로 세계 평균 22%보다 8% 포인트나 낮았다.

한마디로 부패 척결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는 것, 그리고 반부패에 대한 접근법이 이제 달라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청렴도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는 것은 명백해졌다. 그리고 그 변수의 핵심 지표는 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반부패는 사후적인 것에서 사전적인 것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다시 부패영향평가로 돌아와 보자. 부패영향평가를 재차 정의하자면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령에 내재된 부패발생 소지를 분석하고 이를 제거·개선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부패사건을 적발·처벌하는 그간의 반부패 활동과 차원이 다른 사전적 부패방지 시스템이다. 그리고 주된 평가요인은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이다.

사전적 접근을 시도하는 그 취지와 평가요인을 보면 부패영향평가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정말 필요한 제도다. 앞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명한 이유다.

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도가 정착되려면 그 명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생적 동기로도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평가요청 접수된 법령안을 검토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몇 개 분야를 주도적으로 선별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사전적 대응의 의미도 꼭 새로이 제·개정되는 법령안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기존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새로 개정하도록 만드는 일이야 말로 보다 적극적인 사전적 대응에 속한다.

국가 청렴위원회가 최근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한 것이 그 좋은 사례다. 이 분야는 반복적으로 부패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의 하나였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유수면매립 면허 자에 대한 특혜 제거”를 포함한 30개의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런 일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여유를 갖고 사각지대를 하나씩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중앙 행정부처다. 각 부처들이 최근 규제영향평가 등으로 아무래도 눈길이 쏠리는 법, 시행령 등에서는 문제가 될 법한 것들을 피해가는 경향이다. 가급적 외부통제가 소홀한 쪽으로 정작 중요한 재량권들은 숨긴다는 얘기다.

국가청렴위원회가 행정기관의 행정규칙에 눈을 돌린 것은 그런 점에서 잘하는 일이다. 누군가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있다.

다음으로 지방이다. 솔직히 부패가 만연하고 구조적으로 정착하다 시피한 것은 지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국가청렴위도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개발, 자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유인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깨끗한 지자체, 법령상 가장 부패 유발 소지가 적은 지자체를 뽑자는 얘기다. 즉, 국제투명성기구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지자체별 부패인식지수, 뇌물공여지수 등을 매기고 이를 토대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연구해 이 지수와 연계시키면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마지막 사각지대는 국회다. 최근 기업들은 로비의 축을 정부에서 기업으로 옮기고 있다. 의원입법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2006년 세계부패바로미터(GSB)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국민은 부패 인식도 조사에서 정당에 4.3, 의회에 4.2점을 각각 매겼다. 1점은 부패가 없는 매우 청렴한 상태를 말하고, 5점은 극도의 부패 상태를 말한다.

행정부의 경우는 규제개혁심의 등 나름대로 견제장치가 있다. 그러나 의원입법은 이것조차 제대로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비가 정당이나 의회에 집중되는 이유다. 새로운 부패유발 소지가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문제를 고민해 볼 때가 왔다.

김남근(참여연대 집행부위원장, 변호사)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과 관련 부패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작용되고 그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만 한다)상의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도록 개선 권고한 부분과 관련

청렴위에서 위 게임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 에서는 게임법 제2조제1호에 다.목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신설하도록 하였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사특법’)은 게임의 결과 당첨금이 지급되는 게임을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게임물을 내장한 기계나 장치를 사행성 유기기구로 규정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사행행위를 하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파친코, 파치슬롯 등의 카지노에 설치된 기구들이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게임의 결과로 당첨금이 나오면 형사처벌 대상이 사행행위, 사행성 유기기구인데, 게임의 결과로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 나오고 옆의 환전소에 가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한번의 수고(?)만 거치면 형사책임이 면책되고 오히려 진흥·육성해야 할 게임산업이 된다는 것은 일반의 법상식에 비추어도 매우 괴이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파친코 등 사행성게임은 사행행위(도박)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인·허가와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사행성게임 정책은 오락으로 보고 일정한 범위의 룰(4-9-2룰)을 지키며 이를 육성·양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에 1만 3천개의 “사행성게임장”(전국 편의점 숫자 1만개 보다 많음)이 확산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보듯이 파친코나 바다이야기(인어이야기, 황금성 등) 등의 “릴게임”은 모두 일정한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금이 나오는 사행성 유기기구이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전자식 게임기는 개·변조와 승률조작이 쉬워 도저히 이를 오락으로 보고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의 파친코 등 사행성게임에 대한 정책은 이를 도박으로 보고 철저한 통제정책을 쓰는 것이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업 종료시간이 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영업점 앞에서 시민들이 출입하는지를 감시하고, 파친코 기계를 심의기관이 봉인하고 각 기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중고기계의 매매도 금지하며 게임장 내에서의 기계의 이동도 금지하며 게임기의 배치가 출입구에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되는 게임장의 수도 경찰행정력이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고 게임기의 수도 우리 바다이야기처럼 수십만대가 한꺼번에 유통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심지어, 게임기마다 환급율과 당첨율이 표시되어 있어 게임을 재미로 오래하고 싶은 고객은 환급율은 높으나 당첨율이 낮은 게임기를 선택하여 게임을 하고 도박으로 하고 싶은 고객은 환급율은 낮으나 당첨율이 높은 기계를 선택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베틱과 배당을 하는 사행성게임 자체를 도박으로 하지 않고 “4-9-2룰”을 지키면 이를 오락으로 보고 허용하는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 1만 3천여개가 넘는 많은 사행성게임장을 허용하게 되었고, 바다이야기만 하더라도 10만여대가 넘는 기계가 시중에 유통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처럼 행정기관이 기계 한대 한대를 엄격히 통제·관리하는 관리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결국, 불법 개·변조와 개·변조된 게임기 영업을 막지 못하여 도박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정부는 정책을 전환하여 일본처럼 사행성게임을 도박으로 보고 베틱과 배당을 기본시스템으로 하는 게임은 모두 도박으로 보고 경찰행정력이 관리하는「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복리나 관광진흥 등 특수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경찰행정력으로 통제·관리가 가능한 정도만 허용할지 - 아마도 한개 경찰서 관내에 한 개이상 허용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주택가나 도심에서의 허용은 어려울 것이고 전국에서 100 ~ 200개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면, 지금처럼 사행성게임 자체는 허용하면서 “4-1-2룰”과 같은 도박과 오락의 경계선을 설정하여 그러한 룰의 범위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 사용할 지에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지금 정부·여당 안 처럼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렇게 많은 게임장과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게임장과 게임기를 통제할 수 있는지 행정력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점검반 몇 십 명으로 전국 1만 3천여 개의 게임장과 수십 만 대의 게임기를 관리·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영등포경찰서는 관내에만 155개의 사행성게임장이 있는데, 일본의 한 개의 경찰서가 한 두 개의 사행성게임장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여 보면 사실상 통제·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베팅과 배당을 기본시스템으로 하는 사행성게임을 광범위 하게 허용하다 보니 이러한 사행성게임이 아케이드 게임시장이 90% 이상을 장악하여(전체 게임장 1만 5천여 개 중 사행성게임장이 1만 3천여 개) 오히려 정부가「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육성해야 할 학습 진흥과 오락과 재미로 여가를 진흥해야 할 산업, 세계적인 경쟁 산업으로 키워야 할 산업은 수익성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재들의 경우에도 서울대공대 등 명문대를 나온 인재들이 경쟁력 있는 게임개발에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게임 개발에 매달려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력낭비도 심각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품권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아울러 상품권 뿐만 아니라 메달, 구슬, 칩 등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기는 모두 사행성게임으로 지정하여 게임기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행정력의 30%를 사행성게임장 단속에 투입하여 어느 정도 사행성게임장이 운영을 차단하고 있지만 경찰행정력의 30%를 한 종류의 사건단속에만 투여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다시 사행성게임장이 확산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게임법에서 상품권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개선 권고안은 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다.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권고 부분과 관련

위 개선권고에서는 게임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등급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이와 함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등급분류 심의기준, 방법, 절차 등과 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등의 해촉 기준, 위원의 임기·대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하였음

“게임법” 제21조, 제22조 등에 의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결정, 등급분류거부결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행하는 행정기관이고 등급위원은 행정처분을 행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이다.

「헌법」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공무원의 선임·신분보장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이나 등급위원의 선임이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위원의 구성, 제척·기피, 위원의 임기, 선임기준, 결격 사유, 대우·겸직금지, 직무상독립 등과 관련된 규정 및 이에 관한 규정의 변경권한을 법률이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에 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것은 위「헌법」 제96조, 7조, 25조 등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게임법” 제16조와 같이 법률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의 위헌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 91결정』은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할 때에는 적어도「행정규제기본법」제4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위와 같이 등급분류결정, 등급분류거부결정과 같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고 등급 위원은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서 이러한 행정기관의 구성이나 공무원의 선임기준이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결코 경미한 사항이라 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기술적일 수는 있어도 행정기관의 구성이나 담당공무원의 선임 기준·신분보장 등의 내용이 전문적·기술적 내용일 수는 없다 할 것

이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도 “게임법” 제16조제6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자격기준(「노동위원회법」제8조), 신분보장(동법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제21조), 위원의 추천 및 선출(동법 시행령 제4, 5, 6조), 위원의 대우(동법 시행령 제8조) 등의 내용을 법률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다.

등급위원회 스스로 구성원이 될 자의 선임기준을 정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대우나 결격여부 등을 정하는 경우 선임을 둘러싼 비리나 시비가 발생한 개연성이 크고 행정의 투명성의 측면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

또한, “게임법”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위원의 위촉방법과 절차를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막상 그 선임기준은 위원회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추천을 하면 등급위원회가 위원회가 내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이 되어 선임절차에 관한 법령체계의 측면에서 모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게임법” 제16조제4항은 등급위원의 구성·운영·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을 하고 위원의 구성, 제척·기피, 위원의 임기, 선임기준, 결격사유, 대우·겸직 금지, 직무상독립 등의 내용은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개선권고는 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다.

* 게임산업관련 업무를 협회·단체 등에 위임·위탁시 처리기준의
구체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권고 부분과 관련

위 개선권고에서는 게임법 제42조제1항에서 막연히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라고 한 부분을 “이 법 제 0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로 구체화하고 제2항에서 막연히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이라 한 부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등록된 협회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이라고 구체화 하고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였음

법 제42조제2항에서 막연히 “협회”, “단체”라고 한 부분이 막연하여 포괄위임금지 위반에 저촉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어 게임물 제공업자 또는 게임물 제조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나 단체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해관계자 협회나 단체에 상품권 지정권 등 행정권한을 위임할 경우의 필요조건에 대한 근거의 예시도 필요하다 보여진다. 문광부의 게임산업개발원에 뚜렷한 근거 없이 상품권 지정권이라는 행정권한을 위임한 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개선권고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게임법 시행령” 제10조에서도 교육위탁과 관련하여 수탁 기관·단체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교육기관 선정시 고려할 사항 및 교육 참석 조작 등 부패위험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권고가 없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게임법 시행령” 제10조는 게임물 제공업자나 그 종업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컴퓨터산업협회 등 업주들의 협회 기관에 맡기려다 보니 법령에서 그 위탁교육기관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택시운전기사나 화물자동차운전기사 등에 대하여 교통교육개발원 등 공교육기관에서 담당을 하듯이 공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게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급재분류 관련 조항에 관한 개선권고부분 관련

위 개선권고에서는 게임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서는 재등급분류의 기준으로 “등급변경을 요하는 정도로 변경된 경우”라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위원회의 직권 재등급분류의 기준으로 “등급분류를 받는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할 경우”라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예시, 열거 등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등급변경, 직권조사의 기준, 절차, 방법 등 주요내용은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재등급분류나 직권 재등급분류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제작업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등급변경을 요하는 정도로 변경된 경우”, 등급분류를 받는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할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등급분류위원회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어 재등급분류의 행정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와 같은 개선권고는 적절한 것이라 보여 진다.

* 신고포상제 및 업체자율심사제 도입과 관련

위 개선권고에서는 게임제공업소가 전국에 5만개나 되어 검·경 등 관계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요제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고·확인에 관한 절차를 법률에 신설하고 연간 3,000여건의 신청에 대한 업무과다 해소책으로 업계의 자율심의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매뉴얼화 할 것을 권고하였음

사행성게임장의 불법영업을 막기 위하여는 먼저,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게임기가 시중에 유통될 때 현재는 게임기 제작자가 게임기에 봉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제작자의 제작단계나 제작에서 게임기 유통업자에게 넘어갈 때 게임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개·변조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기 제작 장소에 직접 나가 프로그램의 개·변조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봉인을 붙이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사행성게임장마다 게임장 내에서의 각 게임기의 위치를 특정하도록 하고 게임기의 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게임기 마다 당첨율(게임에서 승리하여 배당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 환수율(게임을 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율)을 기재하여 공시하게 한다. 당첨율이 높으면 당연히 환수율은 낮게 되고 이용하는 고객은 도박성이 높은 게임기를 이용하려면 당첨율이 높은 게임기를 이용하게 되고 재미를 위하여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환수율이 높은 게임기를 이용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 놓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단속반은

주기적으로 사행성게임장을 방문하여 봉인이 떼어져 있는지 여부, 게임기의 위치변경, 당첨율과 환수율의 게재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봉인을 뜯어 프로그램이나 승패율의 개·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새로운 봉인을 하게 한다. 또한, 사행성게임장의 영업은 오후 12시로 제한하고 영업종료시간에는 단속팀에서 사행성게임장에 나가 영업종료시간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단속해야 한다.

이상은 일본의 파친코 게임장의 예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역시 전제는 위와 같은 통제가 가능한 정도로 사행성게임장의 숫자가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철저한 통제·관리시스템을 주된 정책으로 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위 개선권고에서는 전문성 확보와 심사부담 경감을 이유로 신고 포상금제도나 업계자율심사제를 주된 관리시스템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는 다소 부적절한 개선권고라 할 것이다.

나. 법령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제도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타파하고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법령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 등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법령의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인 기준 등은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허용하게 되고 재량권 남용의 가능성을 높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위험요소를 법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인 기준 등을 찾아내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선권고 하도록 하는 것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유의미하다 보여 진다.

이러한 법령의 사전개선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을 줄여나간다면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 행정기관, 민원인, 행정절차 등 3가지 측면에서 부패유발요인이 있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행정기관 등에 개선권고를 하는 현 부패영향평가 시스템에 개선·보완할 사항에 관한 의견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담당 행정기관의 반박의견을 제출받아 다시 자문위원들이 행정기관의 반박의견에 대한 재반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비판을 통한 좀 더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의견 제출이 가능하였으면 한다.

박거웅(한국대학연구소장,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사립학교법」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및 사학재단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제정된 사항들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야당 및 사학재단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를 주된 이유로 개정된「사립학교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취지에 대한 왜곡이고, 자율성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 제고에 있다. 즉,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질러진 부정·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자는 것으로, 이번「사립학교법」개정은 「사립학교법」제1조에 명시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 도모’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이전의「사립학교법」은 사학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을 구현함에 있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미비점은 사학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왔다. 문제가 많았던 이 법은

첫째, 법인이사회 구성에 있어 대학운영자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여 폐쇄적·독단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참여가 가능했다. 또한 이사 및 감사는 중임할 수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5년 주기로 일정기간 동안만 교체 되었다가 다시 이사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할 수 있었다.

둘째, 이사회의 독점적 권한을 대학 구성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부재했다. 법인이사회는 예·결산 편성권, 총장 및 교원 임면권,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등 대학운영의 주요사항에 있어 최종결정권을 지닌 반면, 이러한 결정과정에 대학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는 임의기구일 뿐만 아니라 그 구성과 운영 또한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으며, 예·결산자문위원회 또한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학운영의 투명성 및 공개성을 견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했다. 대학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이 법인이사회에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활동에 대한 공개규정이 전무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제정·운영된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칙’이 있었으나 하위규정으로써 법적 강제력이 미약하고 공개에 대한 규정 또한 없었다. 개정 이전의「사립학교법」은 예·결산 공개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예·결산 공개는 고등교육법에 명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교육부장관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대학이 극소수에 불과했다.

「사립학교법」의 이러한 한계는 재단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법인이사회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부정·비리를 저지를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사학에서 벌어지는 부정·비리의 상당부분은 재단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2000년 이수인 전 의원이 발간한「사학재단 부정부패 개혁백서」에 따르면, 당시 분규 사립대학의 부정부패의 유형을 재단의 학교 공금횡령 및 회계부정, 교수임용 및 재임용부정, 입시 및 편입학 부정, 재단의 전횡과 부당한 학사행정 간섭, 총장선임을 둘러싼 학내분규로 구분한 결과, 법인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학교공금횡령 및 회계부정, 재단의 전횡과 부당한 학사행정 간섭이 조사대상 대학 65개교 가운데 34개교(52.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학법인의 부정·비리는 대학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친·인척이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 의해 비리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7개 사립대학 가운데 3개 대학은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대학들이다. 이외에 구재단의 부정·비리로 인해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광운대, 대구대, 세종대, 한성대, 한중대(前 동해대) 등은 모두 학교운영에 참여한 이사장의 친·인척이 부정·비리를 저지르거나 학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여 학교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경우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학의 부정·비리는 대학구성원이 대학운영에 참여 하여 사학운영의 투명성·공개성이 보장되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감사원 혹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지적된 대학 부정·비리 사례를 보면, 재정분야의 경우, 공사비 과다지급, 개인명의로의 재산매입을 위한 공금횡령, 물품구매 혹은 공사관련 허위 지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 횡령 및 유용, 교육 및 연구 직접교육비 목적외 사용,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등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또 인사관리의 경우,

불공정 임용, 허위채용에 따른 급여 부당지급, 교원채용실태 교육부 허위보고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부정·비리는 대학의 재정 및 자산운영실태, 교·직원 채용 및 관리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대해 대학구성원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굳이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대학 내에서 자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나. 개정 사립학교법의 한계

개정「사립학교법」은 앞서 언급한「사립학교법」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 개정된「사립학교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방형 이사제’ 도입(「사립학교법」제14조), 법인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동법 제18조의2),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의무화(동법 제20조), 이사장 및 이사 친·인척 참여비율 축소 및 감사 중 1인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위원회 추천(동법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동법 제22조), 이사장의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겸직 금지(동법 제23조), 학교법인 이사장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의 장 임면금지(동법 제54조의3), 대학평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동법 제26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예산자문(동법 제29조), 예·결산 공개 명문화(동법 제31조),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동법 제25조)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사립학교법」이 법인이사회의 투명한 운영과 대학 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사학의 부정·비리 근절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부정·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법인임원 및 총장선임 사항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사장 및 이사·친·인척 선임제한 조항을 대학 내 주요보직자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족벌체제를 형성하여 부정·비리를 자행한 대학사례를 살펴보면, 이사장의 친·인척이 법인 임원뿐만 아니라 대학 내 주요 보직자로 근무하면서 부정·비리에 적극 가담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인 이사장과 학장의 아들이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를 횡령하여 검찰에 고발된 경북전문대, 학교의 장, 주요 보직, 회계담당 책임자, 교직원 등에 무려 20여명이 넘는 이사장 친·인척과 지인이 포진하여 조직적으로 400억원 가량의 교비를 횡령, 임시이사가 파견된 한중대가 그 대표적 사례다. 대학 내 근무자까지 동원된 부정·비리는 교비회계의 유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비리가 은폐될 가능성 또한 높다.

둘째, 「사립학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평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초·중등교육기관의 학교운영 위원회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참여위원비율과 각 위원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 「사립학교법」은 대학평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되, 대학평의위원회의 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참여대상과 범주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 모두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다. 또 대학평의위원회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수협의회, 학생회, 직원회를 법적인 공식기구로 만드는 것도 시급하다.

이는 대학 내에서 대학평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대학평의위원회가

건전한 대학운영 유도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부정·비리 방지와 합리적 재정운동을 유도할 수 있는 예·결산 공개방안이 필요하다. 「사립학교법」개정을 통해 예·결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교육부장령에 명시되어 있던 공개범위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예산서를 제외한 결산서의 경우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되어 있어 재정의 부정·비리 여부를 실제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넷째, 임시이사 선임대학 교비회계 전출 허용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수입의 타 회계 전출 및 대여 금지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 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교비회계에서 전출 및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자칫 부정·비리 발생의 소지를 제공하여 임시이사 파견의 취지를 희석화 시킬 우려 또한 있다.

따라서 이는 법인이 교비회계를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 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법인이 상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국가청렴위원회에 드리는 제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지난 12월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이 50.2%로 절반을 넘겨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지지하지 않는다(38.6%)’ 보다 높았다.

2005년 4월 부패방지위원회(現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의뢰하여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응답자의 33.9%가 교육분야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곳으로 사립학교를 지목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뒷받침 했다.

사학 부정·부패 척결과 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미 국민 여론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권에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개정을 주도했던 집권여당마저 정치적 타협을 핑계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학개혁을 원했던 국민들과 교육현장의 구성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도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취지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이라는 개혁적 성과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오히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사립학교법」을 개혁적·민주적 법안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비추어볼 때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렴위가 시행하고 있는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모든 법령·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제거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사학의 부정·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렴위는 올해 4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 8월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54개 법령에서 1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적출, 개선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6개의 교육부 소관 법령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는「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에 대한 개선권고가 주목된다. 청렴위는「임시이사 후보자 심의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에 대해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추천 심의위원의 추천단체 명시, 심의위원 결격사유 규정, 위촉위원의 해촉사유 명시, 심의사항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심의위원의 직무의 공공적 성격에 따라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적용 등을 개선안으로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임시이사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한 개선권고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사립학교법」개정이 청렴위가 지향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동일한 목적 아래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위가 하위법에 치중,「사립학교법」개정을 뒷받침할 만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렴위의 부패영향평가가 쟁점이 되는 문제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먼저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를 의뢰한 법·제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청렴위가 스스로 조사·분석하여 부정·부패 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제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개선을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렴위의 개선권고 사항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패방지법 시행령」제13조의2제6항에 따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청렴위의 개선권고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렴위 또한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법·제도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있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외에도 사회 각 분야, 각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교육계의 부정·비리 일소에 최선을 다하는 청렴위의 적극적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최영동(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정해진 법과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로나 항만보다도 더 중요한 간접자본이다. 만약 사회를 운영하는 근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도로보다도 더 폐해가 클 것이다.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시장이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움직이는 좋은 규칙과 그 규칙의 준수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패행위가 있다는 것은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의 혈관이 어딘가에서 막혀있고, 원활한 사회경제활동을 정부가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국민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패행위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부패행위자의 엄단도 필요하지만 부패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부패영향평가는 공무원 개인의 도덕이나 양심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보고,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사후에 처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부패행위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이다.

아쉽게도 모든 공무원이 높은 사명감과 도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개인적인 편차가 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 부패행위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보다는 누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발생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고 아마도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일 것이다.

부패방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국가청렴위원회이지만, 유사한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 많이 있다. 해당 부처의 감사실도 그러하고, 감사원도 이러한 일을 하는 곳이고, 국회도 이러한 일들을 한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사정기관도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일을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르며,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이들 기관들이 부패방지에 성공하지 못했다. 어쩌면 옥상옥일지도 모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역사적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법률안의 제·개정이나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의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행위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해당 부처는 해당 법령을 운영하여 상당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반면 청렴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축적할 기회가 없었다. 또 해당부처는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보다 권한이 확보되지 않아 불편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성향이 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가청렴위는 부패의 원인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에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부패영향평가는 아무래도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재량권행사의 기준이 필요함에도 이것이 빠져있거나, 불필요한 특혜를 주는 법령이 있으면 법령

등의 제·개정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청렴위원회가 해당부처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역할을 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해당부처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부처는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다른 기관들이 실패한 과제를 국가청렴위가 맡았으므로 다소 권한의 중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패행위를 예방·축소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렵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사전에 부패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소관 제·개정 법령안 가운데 청렴위에 평가 요청된 561개 법령안중 545개 안을 평가한 결과, 113개 법령안에 대해 358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개선권고 하였다.

이들 중 한 사례인「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법령」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패영향평가의 결과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으로 공유수면 매립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공유수면 훼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실효성 확보”,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처벌 강화” 등의 결과를 유도하였다.

어려운 여건과 넓은 업무범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열심히 일하려는 청렴위의 공직자들의 헌신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국가청렴위의 건승을 기원한다.

송인수(좋은 교사운동 대표)

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비해 현행 게임등급위원회 구성은 국가청렴위 등의 권고안으로 인해 비교적 업계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게임의 공공성과 윤리성, 청소년 보호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등급위원회 운영규정 5조에 "건전 게임문화 또는 게임산업과 관련하여 게임분야와 게임의 영향성에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한 부분은 자칫 업계쪽 인물들이 배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에 종사하는 자가 게임등급위 위원구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시한 부분은 좋은 부패 예방책이라고 보여진다.

게임등급위원들의 경우, 업계측으로부터 게임 전문성에 관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게임심사의 전문성은 게임을 많이 해보거나 제작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영향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한다. 이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게임법상의 경품지급 제도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국가청렴위의 권고사항이 핵심을 잘 잡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에서 여전히 아이템 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이템 중계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온라인 영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제동이 걸린 부분을 주목하여 볼 때, 사행성에 관한 문제점이 아케이드 영역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산업육성이라는 업계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많이 관철된 결과로 보인다.

게임위원회 임명에 있어 여전히 문화관광부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은 상당한 문제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산업육성에 초점을 두어왔고,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업계로부터 많은 로비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한다든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청소년 보호 연령이 18세인지 19세인지 각 법령상 통일이 되지 않았다. 「청소년보호법」은 18세인 반면, 게임법은 19세로 되어있어 사행성과 폭력성, 선정성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게임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사항이 배제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업계 측의 이해관계로부터 국회문화관광부라든지 법사위 등이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청렴위의 권고사안이 모법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각종 규칙에 관한 요구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모법의 한계를 건드리면서 입법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제에 관한 고민이 더욱 요구된다.

각종 위임·위탁업무 처리기준의 구체성·투명성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성격 업무의 적용대상 및 처리절차를 구체화한 것은 공무원 비리를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는 비교적 업무를 구체화시키고,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게임등급위원회가 휘둘리지 않도록 위원 구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든지 보좌관 등에 관한 업계의 로비를 통해 업계에 유리한 법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정치후원금이라든지 업계에서 주관한 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유착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또한, 게임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산업 육성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갖는 한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산업육성에 초점을 두고, 등급을 통해 청소년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타 부처의 견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부처 간 견제 장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로 보이며, 이러한 권한 집중은 결과적으로 로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대안이 없이 주로 법령, 규칙 등을 보완하는데 그쳐 아쉬운 점이 남고 이는 국가청렴위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보인다.

나. 교육분야 부패영향 평가에 대하여

(1)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청렴위원회의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인사·찬조 및 촌지 등의 금전 영역 등에 관해 의미 있는 교육 제안 등 다음의 사안을 교육부에 권고하였으며,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 향응 수수 교원에 대한 근무평정 시 감점 또는 수 평정 제한 등

- 전문직 응시 자격 제한 기준 설정
- 10만원 미만을 수수한 경우도 견책 또는 감봉 처분 권고
-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
- 운동부 소요경비 학교발전기금회계편입
- 승진 전문직 선발 등 평정기준강화
- 교장 중임 심사 강화
- 전보인사 과정 공개 및 정보제공 등

그 외에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박사학위과정 비리 소지 제거 권고안, 교원인사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본래 모금 관련 학부로 과태료 부과까지 들어가려고 했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는 심하다거나 현실적으로 법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 중 그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국가청렴위원회의 교육분야에 대한 시각 및 한계

우리가 보기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교육에 관한 과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다른 과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급식관련 비리 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렴위의 경우, 국가기관으로서 한계가 있고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통해 개선사안을 찾아내고 있는 데, 이로 인해 입법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청렴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해도 교육청 등에서 어느 정도로 실효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매우 의문시 된다.

국가청렴위의 권고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찬조금 및 촌지 등의 개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중앙부처인 교육부에 비해

지자체 성격을 갖는 교육청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권고안이 안일하게 내려졌다는 판단이 든다.

(3) 해결해야 할 과제

교육계 내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패 고리가 적지 않다. 예컨대, 열린우리당 김교홍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내용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에서 2006. 6. 20 - 6. 23(4일간)까지 신설한 6개교(양지초, 도산초, 운리중, 신창중, 지산중, 일신중)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납품된 물품과 계약 사양서와 일치하지 않음
- 사양서 작성시 불필요한 것을 추가하여 제품의 가격을 올림
- 교장실 비품 구입으로 1,000여 만원 집행 등

물품의 고가구입, 업자밀착 등의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달 단체수의계약 또는 단체수의계약을 선호하지만 조달 단체수의계약과 단체수의계약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직접 업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고가 구입, 업자 밀착 등의 의혹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앨범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가격이 비싸며, 공개입찰을 한 학교와 수의계약을 한 학교 간 가격차이가 적지 않게 나고 있다. 이것은 업체와 교장 및 행정실장의 로비 의혹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고, 모의고사 부교재 채택료 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특히, 업체 관련 교장 로비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인 상황이다.

현재 학교에 두드러지는 부정직성 문제는 학생영역과 교사영역,

교장(행정실)로 나뉘어 지고, 교사영역(학교)에서는 크게 문서, 돈, 인사 영역 비리가 있다. 학생들은 시험 부정행위가 두드러지고, 교장(행정실)은 납품 및 공사 비리, 허위문서 작성 등의 영역이 있다. 특히 찬조금의 경우,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각종 국감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사 영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교사영역에서의 부패유발 분야

- ① 공문서 및 기타 제출서류 허위 작성(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 ② 촌지
- ③ 불법찬조금
- ④ 수학여행, 앨범, 교복과 관련한 업체후원 및 찬조금
- ⑤ 모의고사, 부교재, 교과서 채택료
- ⑥ 학교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비리
- ⑦ 인사 청탁



교사영역에서의 부패유발분야별 부패 내역 · 원인표 분석

영역	교육청	학교	교사	내역	시급성	원인	개선될 제도, 구조, 환경
재정	촌지	●	●	●	– 담임 촌지(조·고) – 스승의 날 선물 – 상품권, 현금 등	A – 생계형 촌지 없음 – 도덕적 무감각 – 성적 조작 연결	촌지 기준 정비 성적 비리 척결 엄벌주의(형량 등)
	불법 찬조금	●	●	●	– 모의고사비 각출 – 전기값 학부모 징수 – 자율학습 담당 교사수당, 간식비 등 – 담임교사 월 수당 고등 담임, 해외 여행	A 학부모회와 학교와의 관계 사슬 구조화, 집단화되어 풀기 어려움	불법찬조금 금지법
	채택료	●	●	●	–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 관련 비리 – 학교의 담합으로 노출 쉽지 않음	A 업체와 학교, 혹은 교과외의 관계	내부자 고발
	업체 계약		●		– 앨범, 교복 등 – 수학여행 업체 – 체험학습 업체 – 학교급식업체 – 정기검진 – 상담검사 실시	A 학교측(행정실, 교장) 과 업체의 관계	
	공사비리		●		공사 수의계약	A	교육청과 학교 견제 체제/ 인찰과 실무 이원화
	인사청탁	●	●		– 승진 보답 – 학위 논문 대필	승진, 인사이동 등과 관련	엄벌(감사원 조사) 사익법 개정 고위공직자 감사 승진제도 개혁
	향응	●	●	●	– 학부모들(수학여행 업체) 음식 향응 – 학부모와 식사 및 노래방(교사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함)	B 연초 각종 회의 등	
	선거비리	●			교육감 선거 등		
	근무수당		●	●	보충 등 시간외 근무 수당 변칙 지급	B	
	시상보답 금품	●	●	●			



교사영역에서의 부패유발분야별 부패 양태 · 원인 분석표

영역	양태	교육청	학교	교사	학부모	심각성	원인	개선될 제도, 구조, 환경
문서	공문	공문 허위보고				B	- 요구 공문 양과다 혹은 재촉(교육청, 교육부, 국회 등) - 학교나 개인 교사의 실적 과사용	- 공문 제출 방식의 변화→필수제출용의 경우만 보고함. ※ 해당사항 없음은 보고하지 않기 - 교육청의 태도와 역할 변화(공문 행정식의 통제→행정서비스 체제로)
	성적	(1) 성적 조작 (2) 성적 부풀리기 (3) 누가기록 불철저 (4) 질적 평가신뢰도				A	(1)의 경우, 사립학교 중심 관행 (2,4)의 경우, 내신상대평가로 상당부분 극복, 단, 내신의 질적 평가에는 여전히 문제됨. (3)의 경우는 제외	(1) 사립학교법 개정 (2-4) - 입시경쟁 부담 - 교사의 직업적 윤리 의식이나 자존감 불철저 - 잡무 경감
	행정 자료	(1) 이종 장부 (2) 이종 시간표 (3) 보충수업, 자율 희망서 허위 작성				B	(1,2) 사립학교 중심 관행 (3)의 경우 공립도 해당	-(1,2) 사립학교법 개정 -(3)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제화에 대한 학교의 압력 해소
	출석부	출석부 허위 기재 결석계 허위 작성				C	- 귀찮게 생각함. - 온정주의	
	연구 자료	연구 시범학교 연구대회				B	- 시범학교 연구가 보이기 위한 내용이 많음, 주로 잘되었다는 보고서임 - 논문대행, 논문표절 등이 많음	(1) 시범학교 축소 (2) 승진제도 변화 (3) 엄격한 질관리 (4) 논문대행 및 표절 등도 부적격교원 범주 포함

이러한 문제들의 핵심에 근평을 위주로 한 잘못된 승진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학교의 내부고발자로서 교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교육청은 오히려 학교의 비리 등을 옹호해주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국장, 장학사와 장학관 등은 학교 교장교감으로서 인사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내부고발자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찬조금의 경우,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할 만한 적당한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교내 찬조금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조사하고 행정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민원이 제기되면 사립학교에 관한 감사권을 갖고, 구속력있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는, 감사원의 적극적이니 개입이 요망되는 상황이며, 더 이상 교육청에 맡길 수 없다고 본다.

국가청렴위의 교육분야에 대한 권고사항은 현실적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교육 영역에 대한 부패근절 로드맵을 다시 그리고, 재 점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1

2006년도 활동실적 평가

청렴위는 법령 등에 대한 상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평가지침·매뉴얼 제작, 업무예규 제정, 홍보·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현행법령분석팀 구성 등 평가기반 구축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평가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평가결과와 타당성·현실성을 확보¹⁾ 하였고, 각 기관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제절차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평가과정에 참여·협력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단계에 진입하였다.

반면 자치법규의 규모가 방대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평가실적이 저조²⁾ 하였고, 제·개정 법령 위주의 평가 추진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평가는 다소 미진하였다. 이는 전문인력, 평가DB 등 효율적인 평가추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한데 일부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

2007년도 중점 추진방향

2007년도 부패영향평가업무의 추진은 첫째, 과제선정 및 평가·개선 과정에 국민·관계기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평가시스템을

1)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 Pool 구성(500명), 자문의뢰·활용(156건), 자문회의(12회), 합동평가회의(17회) 등을 통해 전문적인 의견수렴 및 실무적인 합의 절차를 최대한 활용

2) 32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대구·대전 등 3개 기관만 자체평가 실시

확립하고, 둘째, 평가대상 기관·범위 확대, 고유평가기법 개발, 평가체계 개선 등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함과 동시에 법적 기반을 강화하며, 셋째, 기관 및 법령단위별로 청렴도·감사·평가사례 등 평가자료를 DB로 구축·활용하고, 넷째, 기관별 협조 및 권고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관리·점검을 통해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다섯째, 분야별 전문가 충원, 직원 교육훈련 강화, 자문위원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 제·개정 법령에 대한 전문화된 평가 서비스 제공

법령입안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재량, 특혜제공 등 부패위험요소를 철저히 제거·정비함으로써 부패예방기능의 내실화를 위하여,

첫째, 분야별 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연결되는 자문그룹 형성 및 토론회·워크숍 정례적 실시, 평가수요에 맞추어 전문화·특성화된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들의 평가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둘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과정에서 일반국민,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의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평가과정에 자문위원들의 전문적 의견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도모하는 등 평가방법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셋째, 입법진행상황 및 협조·권고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관리·점검을 하는 등 각 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실효성을 확보하고,

넷째,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평가정보를 공유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견조정 및 제도발전방안 등을 도모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 능동적·체계적인 현행법령 평가시스템 마련

법령의 중요도, 기관별 입법일정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평가하면서 부패현안과제에는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첫째, 각 기관이 선정하여 제출한 평가대상 법령과 자체 선정 법령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평가가능범위로 압축, 외부 자문위원 등의 의견, 청렴도 측정결과, 감사원감사결과, 부패수사자료 등 부패관련 자료를 활용, 중장기 평가대상 법령을 선정·확정한 뒤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둘째, 효과적인 현행법령 평가추진에 있어서 대상법령 일괄(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평가 실시, 내실 있는 실태조사 등을 통한 법령집행상의 부패유발요인 적출 및 효율적인 개선과제 발굴, 권고과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상법령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에 주안점을 두며,

셋째,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크게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과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평가과제로 선정,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 자율적인 자치법규 평가체계 구축·지원

자치단체의 고유 실정에 맞는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자치법규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모형 및 표준매뉴얼을 자치단체에 개발·보급하고, 자치단체별 순회교육과 자료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둘째, 청렴도가 낮고 부패사건이 빈발한 자치단체 중에서 신청 및 협의를 통해 시범평가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시범기관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시정하고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유도할 계획이다.

라.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평가제 단계적 도입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있으나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는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사각지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행정규칙의 규모·특성에 적합한 평가모형 및 표준매뉴얼을 각 기관에 개발·보급하고, 아울러 교육, 자료제공, 현장방문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제도운영 노하우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며,

둘째,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DB, 감사지적사항 등의 내용을 참작, 각 기관별 사전 평가대상 행정규칙을 선정하여 제·개정 단계에서 위원회에 평가요청 하도록 협조당부하고, 단계적 사전평가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전평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시정하고,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 평가추진 기반의 지속적인 확대·강화

평가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관리함으로써 유사하고 반복적인 법령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평가를 도모하고, 아울러 현행 부패영향평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통해 시행근거를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기관·법령·사례별로 평가DB를 구축·활용하고,

둘째,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시행근거를 강화하며,

셋째, 자치법규 중 광역적·전문적 사안 등에 대한 평가, 행정규칙의 사전평가 강화 등 평가수요의 증가에 대응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변호사·박사·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상근자문위원,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충원하는 등 평가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 록

1. 보도자료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 평가결과
 -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법령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결과
 - 도로점용 허가관련법령 부패영향 평가결과
-

2. 부패방지법

3. 부패방지 시행령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 ◆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의 건전화
- ◆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 · 운영의 공정성 · 책임성 강화
- ◆ 게임산업관련 각종 위임 · 위탁업무 등에 있어 구체성 · 투명성 제고
- ◆ 게임산업관련 각종 규제성격 업무의 처리절차 및 대상 구체화
- ◆ 업체자율심사 및 신고포상제 도입 등

□국가청렴위원회(KICAC · 위원장 정성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및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06. 10. 19. 문화관광부에 권고하였다.

- 대상법령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시행규칙, 게임물 등급위원회규정 및 심사규정

□지난 5월 청렴위에서 문화관광부에「예술행정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권고를 하면서 "영상물 등급심의"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한 것은

- 부패발생원인이 영상물 등급심의 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불합리성에 있다고 보고

-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제한 등을 통해 공정성 강화와 심의 절차 매뉴얼화 및 공개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제도개선 권고한 것이고

• 금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구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가

- 가 6 23
()

가

- 가
가

4

28

- , 가(,)
가



.

○

- , 가 ,

‘ ‘ ‘

‘

※ 게임물 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사행성 등급결정' 및 문화관광부령의 '사행성 기준 및 방법',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취급기준' 폐지

【개선안】

게임법 제2조(정의)제1호 게임물이라 함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가, 나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형법,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신설)

○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 · 운영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현재 게임법에서 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과다한 재량과 투명성 부족으로 부패 발생 소지

⇒ 위원의 자격 · 임기, 제척 · 기피 · 회피 등 중요사항은 게등위 자체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 등 법령에 규정

【개선안】게임법

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①생략

②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3.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관한 사항(삭제)

4, 5호 생략

6호 등급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법령으로 규정 권고)

⇒ 등급위원회의 게임등급 결정이 국민생활, 사회 · 경제 · 문화에 미치는 영향 및 책임감을 고려, 위원회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포괄적으로 등급위원회 자체 규정에 위임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할 필요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등급분류 심의기준, 방법, 절차 등 주요사항 역시 법령에 규정할 필요

- 등급분류 신청방법, 신청의 보완, 기간, 기술심의, 출장심의, 분과 위구성 · 운영, 심의위원의 자격기준, 심의기간연장 등

⇒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 명시

- 부패행위 전력자, 이해관계자 등을 배제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을 법령에 명시

⇒ 청탁, 외압 등으로 부터 위원, 전문위원 등을 보호할 장치 마련

- 위원의 임기, 대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명시할 필요

○ 각종 위임 · 위탁업무 처리기준의 구체성 · 투명성 강화

- 게임산업관련 업무를 협회 · 단체 등에 위임 · 위탁시 선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미비로 투명성 부족

⇒ 사업분야, 인적 · 물적 수행능력 등 선정기준 및 지정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

【개선안】게임법

제42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〇〇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이 법의 〇〇조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등록된 협회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위탁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신설)

○ 각종 규제성격 업무의 적용대상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기술심의, 직권재분류, 표준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의 대상 및 처리절차의 미비로 재량과다 소지

⇒ 예시·열거, 판단기준 제시 등을 통한 구체화, 명확화 필요

【개선안】게임법 시행규칙

제7조(등급분류기준)①~③생략

④ 게임물상의 문제해결 또는 보완·개선 등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급분류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수정으로 인해 등급의 변경(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성게임물로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요할 정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서에 해당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해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 '등급의 변경사유'는 '등급변경을 요하는 정도로 변경된 경우'등 순환구조의 모호한 규정으로 재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단기준 제시 또는 사례의 예시·열거를 통한 구체화 필요

⇒ 재등급 분류와 관련한 기준 등의 명확화 필요

⇒ '직권 재등급분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르게 제공할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재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

⇒ 등급변경, 직권조사의 기준, 절차, 방법등 주요 내용은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

○ 신고포상제 및 업체자율심사제 도입 등 제도 신설

- 전문성 확보 및 심사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업체자율심사제 도입

- 신고포상제도 신설 및 사후관리(지도·단속) 체계화

※ 아케이드게임장 및 PC방 등 게임제공업소가 전국에 5만 여개로 검·경 등 관계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요제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고·확인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조기차단 필요(법률에 신설)

※ 업체자율심사제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연간 3,000여건의 신청에 대하여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서는 적정하게 등급분류 심의하기는 곤란한 실정을 감안하여

- 업체의 자율심을 위한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매뉴얼화 하고,

- 사업자 협회, 단체가 회원사의 게임물에 대하여 1차적(자체적)으로 심사하여 그 심의한 내용과 결과를 첨부하여 등급분류신청하면 간소한 절차에 의한 심사방안 고려

○ 기타사항으로 사후관리(지도·단속)의 체계화·능률화

- 등급위원회 단속지원반에서 광범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패통제장치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인터넷, 휴대폰의 스팸, 음란물에 대한 사후관리 법령인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령을 참조하여

-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게임물 단속 공직유관단체와
합동단속방안 마련
- 단속공무원 실명제, 책임제, 단속정보 유출방지, 단속시 행동요령
(2인1조, 단속 사전, 사후 보고) 등
- 금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로 사행성 성인 게임산업과
관련한 각종 부패발생을 차단하고 '게등위'의 구성·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게임물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 ◆ 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 ◆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으로 공유수면 매립 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거
-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 ◆ 공유수면 훼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실효성 확보
- ◆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처벌 강화 등

□ **국가청렴위원회(KICAC · 위원장 정성진)**는 "공유수면 매립과 관리에 관한 8개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유수면매립 면허 자에 대한 특혜 제거"를 포함한 30개의 세부개선안을 마련하여 '06. 11. 13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대상법령 : 공유수면 매립법과 공유수면 관리법, 각 시행령, 각 시행규칙, 공유수면 매립업무처리규정 및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규정
(각 해양수산부 고시)

□ 부패영향평가 추진경위 및 배경

- 공유수면에 관한 전반적인 부패실태의 수집·분석, 시민단체 등 관계자,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등과의 면담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개선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쳤음
 - 해양산업은 장래 식량과 자원 등의 보고(寶庫)로서 국가성장을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임에도 국민적 관심부족으로
 - ※ 공유수면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4.5배임

- 일제시대 때 작성된 지적자료에 대한 보완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육지와 바다의 현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일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공유수면의 현황관리가 미흡하고,
- 또한 서해안 개발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불법매립 행위, 매립지 부당 취득,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 등 위법행위가 빈발하는 한편 관할 관청이 이를 방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은 물론 관련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도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부패영향평가 결과 주요 개선권고 내용

- 공유수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권고
 - 공유수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공유수면 관리업무 총체적 부실
 - ※ ○○군 무인등대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협의과정 중에 바다가 육지로 육지가 바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측량 시 발견('06.7. 실태조사)
 - 지적공부에서 말소해야할 포락지를 분할등기 후 불법매립 하거나 보상이 불가능한 포락지에 대하여 보상, 토지교환을 추진
 - ※ 포락지(浦落地)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닷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로 현행법상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매립방치 및 보상 사례 >

- ○○군청 공무원이 등록말소 되어야할 포락지를 조카명의를 빌려 매수계약 후 분할등기 신청하고, 지적공사의 경계복원 측량 후 불법매립하면서 당시 근처(100m내)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사무소 바로 앞 도로를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5일 동안 통과하는 것을 묵인
- 위 불법매립 건에 대하여 ○○지방수산청이 고발하고 또한 3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군청에 불법매립지 건축허가 및 보상을 불허토록 통보하였음에도
- 위 공무원이 '05.6.30 조카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군청에 군유지(공시지가 12억원)와 토지교환을 요구하자 군청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 및 군의회 의결을 거쳐 토지교환을 추진 중에 적발되었음(청렴위 실태조사, '06.9.)

⇒ 공유수면충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공유수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법령에 마련

- 공유수면충조사 실시근거 마련
 - 포락지의 지적공부 말소
 - 포락지 및 불법매립지의 보상 불가
 -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
-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립비용에 상당하는 가액의 매립지가 분배되는 점을 이용하여 매립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권고
 - 실제 소요된 매립비용만큼 매립지를 매립면허 받은 자에게 분배하여야 함에도 현행 규정에 의하면 실제 소요된 공사비보다 매립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국가귀속분 감소초래

※ 매립지 분배방법 :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나머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매립공사비용을 10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약 16억원에 상당하는 매립지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어 특혜 발생

- 장비, 인건비, 토석 운반거리 등을 조작하는 등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에 귀속될 토지 감소초래

⇒ 매립지 공사비 산정기준에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매립지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매립 총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강화"

※ 실적공사비 :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실제 소요된 금액을 공종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 '05년 건설교통부에서는 실적공사비로 전환이 완료된 505개 공종을 발표하였고

- '06년 기획예산처에서는 기존 건설공사의 표준품셈단가 대비 실적공사비 단가는 84%로 나타났다고 발표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 불편을 감소하도록 권고

- 동일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가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이중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야기 및 행정효율성 저하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일괄 처리하되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할 중요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청자의 준수부담을 완화

※ 해양수산부와의 협의사항 :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구사 등 광물 채취, 조선소 선가대 설치 등),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규 점·사용허가, 단순 기간연장을 제외한 변경허가, 공유수면매립 관련사항 등 중요사항

- 점·사용허가의 대부분인 기간연장 및 단축, 면적축소 등의 허가협의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협의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청자의 준수부담을 완화

• 공유수면 훼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권고

- 원상회복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규정과 원상회복 판단기준이 없어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명령 후 현지 확인을 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 공유수면 불법매립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가 없는 등 법의 허점이 있어,

⇒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자 뿐만 아니라 불법매립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실효성 확보 수단(이행강제금) 마련

• 기타

-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에 따른 어업피해영향조사와 포락지 조사기관의 책임강화

-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신설하고,

-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연안관리법을 통합 제정하여 효율적·유기적으로 운용하며,

-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의 특성 및 부족한 예산 등을 감안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행정대집행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
- 금번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부패영향평가로 공유수면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며 특혜 유발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도로점용허가 대행업소 중 지난 3년간 금품·향응 제공경험 8.8% 이에 따라 관련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개선대책 마련

- ◆ 도로점용 허가기준·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량권 남용소지 축소 및 허가과정의 투명성 제고
 - 허가신청서를 보완 또는 반려 할 때 법적근거 규정 제시를 의무화
 - 공사중인 도로 구간내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공사비 정산을 의무화
- ◆ 점용료 부과·징수방법을 개선하고 부당한 부담금 부과를 금지토록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
 -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료 산정근거를 함께 알리도록 개선
 -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시설물훼손비 등 부당한 부담금 부과금지
- ◆ 불법점용 및 허가대행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수단 강화
 - 불법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신청시 허가대행업자 및 대행수수료를 신청서에 기재토록 의무화

□ 국가청렴위원회(KICAC·위원장 정성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총 25개 세부개선안을 마련, 2006. 12. 21.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

□ 도로점용허가 업무는 불명확한 허가기준, 복잡한 허가절차 등으로 민원인의 불만과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

- 설문조사결과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허가대행업소의 금품·향응 제공경험이 8.8%로 나타남

※ 허가대행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 조사방식 : 우편조사(국가청렴위원회 직접수행)
- 조사항목 : 지난 3년간 금품·향응 제공경험 등 10개 항목
 - 금품·향응빈도 및 규모는 횡수·금액에 따른 구간척도 사용
 - 기준·절차의 현실성 등 5개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
- 조사대상 : 총 1,406개 설문지를 배포하여 반송된 51개를 제외한 1,355개 설문지중 회수된 181개에 대하여 분석



〈 조사 결과 〉

- 허가대행업소 중 지난 3년간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경험에 있는 업소가 8.8%에 이름
- 응답자의 57%가 이의제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답변, 의견수렴절차 미흡
- 응답자의 46%가 허가기준 및 절차가 복잡하고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
-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는 "허가기준의 구체화 등 관련법령의 정비"가 63%로 가장 많음

- 이에 따라 청렴위는 금년 6월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법령을 부패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 부패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 부패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주요 개선권고 내용은

- 도로점용허가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여 점용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남용 소지 축소 및 허가과정의 투명성 제고

- 도로연결허가에 대한 절차·서식 등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및 반려시 법령근거 규정 제시 의무화

※ 실태조사결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않거나,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허가하지 않는 사례 다수

- 허가신청대행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43%가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설문조사)

◆ 보완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허가를 하지 않은 사례(○○○국도유지)

-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무단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것으로 예상
- 배수처리가 불량하여 물고임 현상 및 결빙이 발생할 수 있음
- 곡선반경이 작아 교통사고 및 도로유지관리에 지장 초래
- 도로변 배수로의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등 배수불량 우려

•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주택 진입로 및 공익목적의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기간이 자동연장 되도록 개선

※ 공익목적 및 주택 진·출입로의 도로점용에 대한 점용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국민불편 초래 및 행정력 낭비

•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허가 사전예고제 도입 등 기준 마련

※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정의를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어 공사중에 있는 신설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데도 「도로법」에 의한 점용·연결허가를 내어주고, 이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 하고 있는 등 법률적 근거 미약

• 시공중인 도로구간의 점용허가에 따라 불필요해진 시설공사비 절감분을 반드시 정산토록 의무화

〈사 례〉

- ○○지방국토관리청은 “○○~○○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도로점용허가(5건)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공사비 78백만 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공사비를 전액을 시공사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 낭비
⇒ 부당하게 지급된 78백만 원을 환수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방법 개선 및 부당한 부담금 부과를 금지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크게 완화
 - 점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점용료 산정대상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요율 등 점용료 산정근거를 제시토록 개선
 - 신설도로 구간의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도로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 마련
 - ※ 신설도로 구간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본 도로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점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점용료를 계속하여 부과·징수하는 등 민원인에게 과중한 부담 초래
 - 도로점용기간의 점용료를 일시에 납입 할 수 있도록 점용료 일시 납입제도 도입
 - ※ 도로점용기간은 최대 3~10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점용료는 매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매년 점용료 부과·징수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대규모 체납금액 발생
 - 부담금부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 (시설물훼손비 등) 부과 금지

※ 시공중인 도로구간에 점용허가를 하면서 일부 국토관리청의 경우
점용구간의 시설물 훼손비를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시공사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같은 건교부 산하 일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형평성 결여

〈사 례〉

- ○○지방국토관리청은 “○○우회도로공사” 구간내 휴게소 및 주유소진·출입로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2005. 11. 21.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도로점용구간내 기 시공된 도로시설물(법면보호공, L형측구 등)에 대한 훼손비
129백만 원을 피허가자로 하여금 부담(위 도로는 2005. 12. 27. 준공)

* 도로가 준공된 후에는 시설물훼손비를 부과하지 않음

- 불법점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수단
마련

- 불법 점용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측량설계사무소 등 허가대행자 및
대행수수료를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청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발생요인 제거

※ 측량설계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지난 3년간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경험이 있는 업소가 8.8%로 높게 나타남

- 청렴위는 금번 개선권고로 그동안 민원인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도로점용허가 분야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권고안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조속한 취해줄 것을 요청
- 앞으로 청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청렴도가 취약한 현행법령을 발굴, 중장기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제정 2001. 7. 24. 법률 제6494호

개정 2004. 3. 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개정 2005. 7. 21. 법률 제761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 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 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가청렴위원회

제10조 (설치)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 ·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
3. 부패방지 교육 · 홍보계획의 수립 · 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분석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11.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5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0조 (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등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 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호의 조치는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

제25조 (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8조 (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將官級)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 (조사결과와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정신청) ①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및 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⑨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2 2 (1) 가 32 2 3

33 () 29 3

2 가 가 가
() 9 () 12 () 7 ()
3 4

34 ()

32 , 33 35
35 () 가

1
35 2 () 32 35

36 () 가 가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 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국민감사청구

제40조 (감사청구권) ① 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 소장·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2조 (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보칙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 (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8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벌 칙

제49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 < 삭 제 >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51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2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의2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조치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2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부 칙 <2004. 3. 11. 법71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2005. 7. 21. 법7612>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도개선 권고의 재심의를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위원회의 권고부터 적용한다.
- ③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 ④ (포상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 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 ⑤ (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의 소관사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승계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 2001. 11. 29 대통령령 제17420호

개정 2005. 7. 26 대통령령 제18965호(국가청렴위원회 직제)

개정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직자 행동강령(개정 2005.12.30))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제 2 장 국가청렴위원회

제3조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평가) 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작업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 (행동강령의 시행 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의 시행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5조의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처리 등) ①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6조 (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라 함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 등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호주 및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자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사무처 직원의 선발 등) ①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청렴성·도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윤리규정 등) ①위원회는 위원·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패방지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③ 위원회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제13조의2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 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3조의3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4조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 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제16조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위원,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9조 (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 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4조 (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개정 2005.12.30)) ①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25조 (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법 제3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개정 2005.12.30)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 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조사결과와 처리) ①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29조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30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 (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개정 2005.12.30>)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제32조 (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위원회로부터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 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제33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제34조 (신변보호) ①법 제3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④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개정 2005.12.30>

제35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 제40조제2항,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5조의 2 (보상금의 지급사유)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개정 2005.12.30〉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제36조 (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인, 당연직 위원 4인 및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 7.26, 2005.12.30〉

③ 재정경제부·법무부·기획예산처 및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 (보상위원장)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보상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0조 (보상금의 결정) 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30〉

제41조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30〉

제42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개정 2005.12.30〉) ①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 (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5.12.30〉

제44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등〈개정 2005.12.30〉) ①보상금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05.12.30〉

② 제1항의 규정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05.12.30〉

제45조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개정 2005.12.30〉)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5.12.30〉

제46조 (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 5 장 국민감사청구

제47조 (감사청구인)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라 함은 300인을 말한다.

제48조 (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제49조 (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51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서의 취업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서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5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12.30〉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방지위원회

부 칙 <2005. 7. 26 대령18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④ 생략

부 칙 <2005.12.30 대령19238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40조제1항관련) <개정 2005.12.30>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보상금의 지급기준(제40조제1항관련) <개정 2005.12.30>

1. 일반기준

- 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지 급 기 준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 · 강등 · 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전보 · 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500만원
임금의 차별지급, 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개정 2005.12.30>	300만원